

2017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Casebook

#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2017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Casebook

#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 01

제1장

##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 8 제1절 부패영향평가 제도
- 10 제2절 부패영향평가 기준
- 13 제3절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 16 제4절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 18 제5절 '17년도 부패영향평가 주요 추진내용

# 02

제2장

## 제·개정 법령 평가 사례

### 제1절 평가기준별 사례

- 28 1. 준수
  - 28 1) 준수부담의 합리성
  - 38 2) 제재규정의 적정성
  - 67 3) 특혜발생 가능성
- 79 2. 집행
  - 79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102 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117 3) 재정누수 가능성
- 131 3. 행정절차
  - 131 1) 접근의 용이성
  - 146 2) 공개성
  - 165 3) 예측 가능성
- 184 4. 부패통제
  - 184 1) 이해충돌 가능성
  - 202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제2절 행정내용별 사례

- 222 1. 검정·평가 업무
- 230 2. 부과·징수 업무
- 245 3. 수리·통지 업무
- 249 4. 지정 / 위탁·대행 업무
- 273 5. 심사·심의·위원회 업무
- 280 6. 지원·보상 업무

# 03

제3장

## 현행 자치법규 평가 사례

송·변전 설비·공항·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 284 제1절 추진배경
- 286 제2절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 292 제3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93 제4절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 328 제5절 권고대상 기관 및 조치사항

# 04

제4장

## 자발적 개선 사례

- 334 제1절 공직유관단체 사규 개선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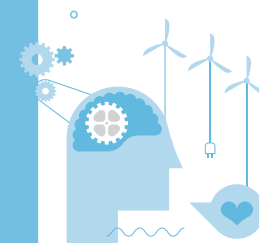
## 부록

- 364 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 375 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 388 3. 관련 법령
  - 388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391 2) 제·개정 시 참고할 만한 일반법
- 392 4. 색인

# Contents

# 제1장

##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제1절 부패영향평가 제도

제2절 부패영향평가 기준

제3절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제4절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제5절 2017년도 부패영향평가 주요 추진내용

## 제1절 부패영향평가 제도

### 1 의의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개선하는 사전적·예방적 부패통제 시스템으로 크게 제·개정 법령 평가와 현행 법령 평가로 나눌 수 있음

### 2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2조

-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 평가지침 수립·통보, 기초 자료의 작성·제출, 개선권고, 평가결과의 통보 등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별 부패영향평가 절차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제6항

- 법령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및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보내면서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와 통계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입법예고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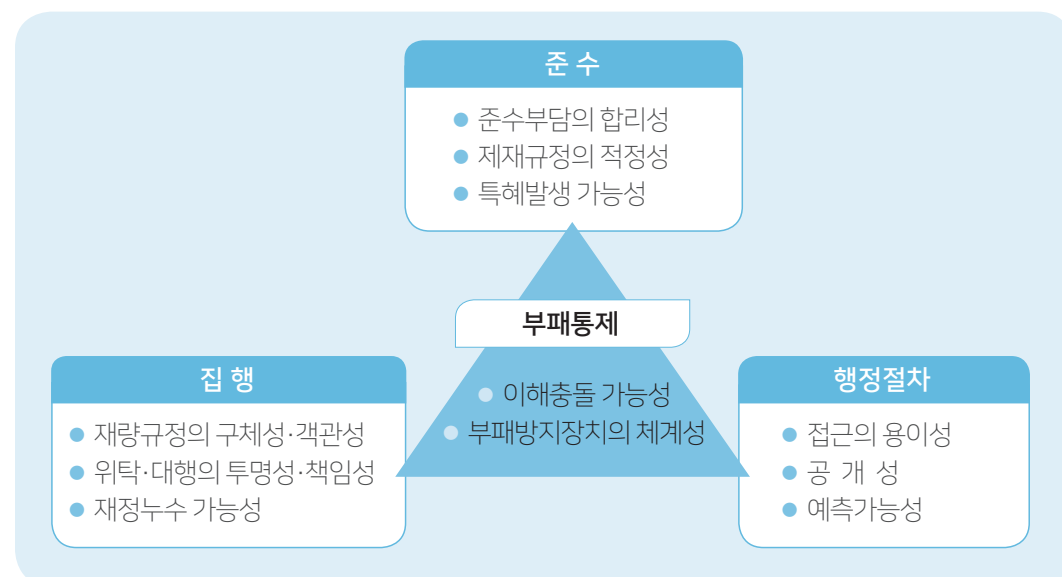
- 법령 등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가능성 차단
- 법제도상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반부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
- 법령 등의 입안·집행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예측가능성 제고

### 4 필요성

- 개별 사안별로 사후 적발·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통제로는 구조적 취약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부패 예방적 성격의 통제장치 필요
- ⇒ 2005. 12. 29.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해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6. 4. 1. 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으며,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2007. 12. 28.부터 부패영향평가 제도 도입·운영

## 제2절 부패영향평가 기준 (영 제30조제1항)

- 평가 기준은 크게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가지 영역으로 분류
  - ‘준수’는 행정의 수요자(민원인 등) 입장에서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준수부담의 합리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및 ‘특혜발생 가능성’으로 세분화됨
  - ‘집행’은 해당규정이 행정의 공급자(처분권자 등) 입장에서 부패유발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누수 가능성’으로 세분화됨
  - ‘행정절차’는 해당규정이 수요자나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해 부패발생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예측가능성’으로 세분화됨
  - ‘부패통제’는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등 행정절차 전반에 걸쳐 사적인 이해관계 개입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부패통제장치 및 부패방지 법령 등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충돌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으로 세분화됨



### 1 준수

| 평가항목      | 주요 검토 내용                                                                             |
|-----------|--------------------------------------------------------------------------------------|
| 준수부담의 합리성 |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
| 제재규정의 적정성 |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
| 특혜발생 가능성  |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2 집행

| 평가항목           | 주요 검토 내용                                                                                                      |
|----------------|---------------------------------------------------------------------------------------------------------------|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 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 재정누수 가능성       |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제3절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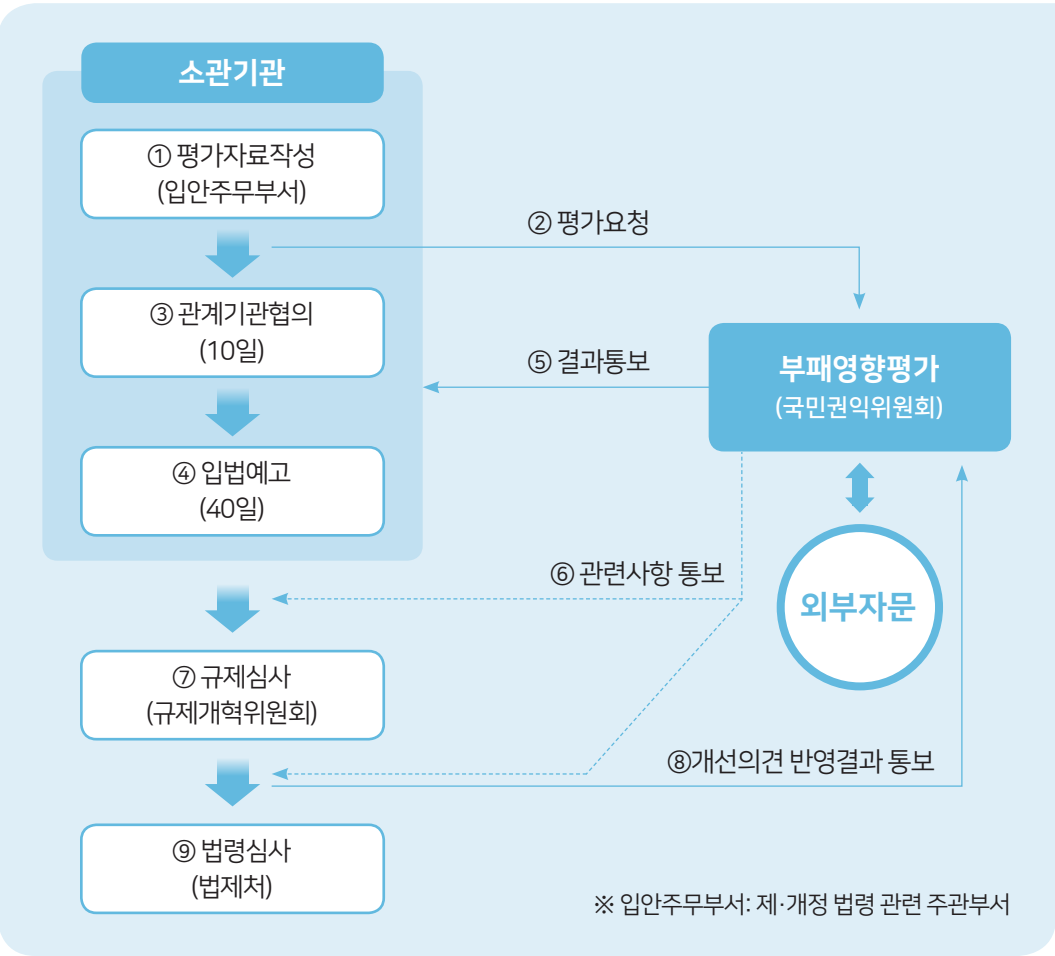
- 각 기관은 소관법령의 제·개정시 평가에 필요한 제·개정안 및 기초자료를 첨부하여 관계기관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 위원회는 통상적인 입법예고기간인 40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3 행정절차

| 평가항목           | 주요 검토 내용                                                                                               |
|----------------|--------------------------------------------------------------------------------------------------------|
| 접 근 의<br>용 이 성 |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 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 수렴에 있어 이해 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 되어 있는지 여부 |
| 공 개 성          |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
| 예 측 가능 성       |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처리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

4 부패통제

| 평가항목                      | 주요 검토 내용                                                                     |
|---------------------------|------------------------------------------------------------------------------|
| 이 해 총 돌<br>가 능 성          |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
| 부 패 방 지<br>장 치 의<br>체 계 성 |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 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



## 1 부패영향평가 요청

-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법령(안)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첨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위원회에 평가 요청
  - ※ 평가 제외 법령: 직제, 국호·국기·연호, 상훈·전례·국경일, 급여·수당, 문서·관인·차량관리 관련 법령 등
    - ⇒ 제·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대상 제외법령 통보(부패영향분석과-1125(2016.4.11.))문서 참조
  - 개정법령(안)은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첨부('16 부패영향평가 지침, p.23)
  - 제정법령(안)은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를 첨부('16 부패영향평가 지침, p.23,25)
- 평가자료의 제출방법은 공문의 경우 전자문서를 이용하고, 공청회·연구논문 등 기타 참고자료는 담당자 e-mail 등 활용
- 법령입안 주무부서는 부패영향평가 요청시 반드시 법령평가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공문 시행
-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법령(안)이 수정·보완된 경우 즉시 그 내용 및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

## 2 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 위원회는 의뢰받은 법령(안)의 부패영향평가를 관계기관 협의 단계에서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완료
  - 입법예고기간 내에 평가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 연장 가능(이 경우 최대한 신속히 평가)
    - ※ 평가기간 연장사유: 법령(안)의 지연제출, 제출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령(안)의 수정·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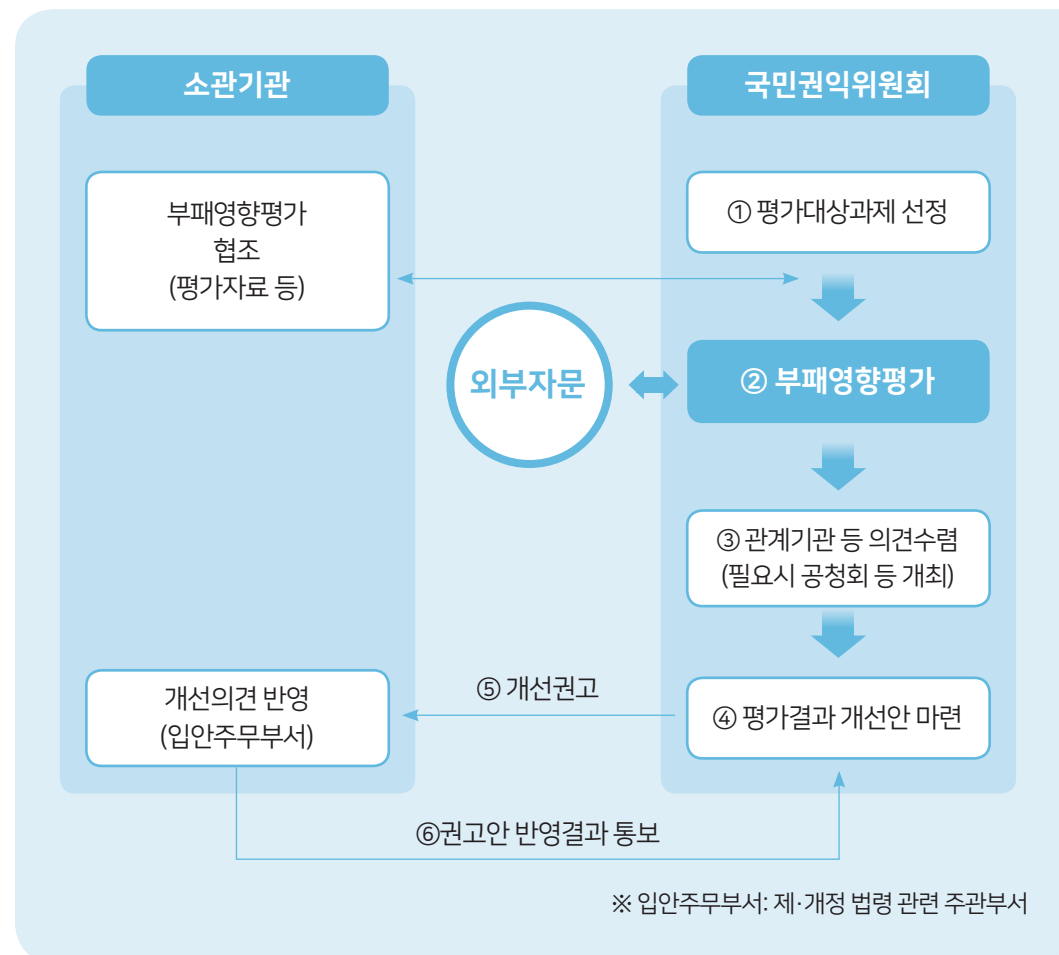
- 위원회는 평가 시 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법령(안) 및 자료를 토대로 평가 후 결과를 서면으로 소관 기관에 통보
  - 평가결과는 원안동의·개선권고·철회의견·참고의견으로 세분
- 위원회는 평가결과가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 법제처에 통보

## 3 평가결과의 처리

- 행정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의견의 반영여부를 법제처 심사 의뢰 시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 행정기관은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각 기관의 시책평가 등에 반영
  - 법령(안) 제출시기, 평가자료 협조, 권고사항 이행, 자율평가체계 구축·운영 등

## 제4절 현행 법령 부패 영향평가 절차

- 위원회가 선정한 평가대상과제(법령)에 대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평가자료 등을 제출받아 평가 실시
-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법령 소관기관에 조치 기한을 정하여 개선권고사항을 통보



### 1 평가대상법령 선정

- 제·개정 법령의 평가과정에서 부패유발요인이 해당 법령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 자치법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법령
- 부정부패·비리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법령

### 2 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 위원회는 법령 평가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실시
-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나 실태조사 등에 대해 성실히 응하고 이에 협조
- 위원회는 법령 운용실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
  - 중요사항은 관련기관·이해관계인·전문가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법령 소관기관에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권고사항을 서면으로 통보

### 3 평가결과의 처리

-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의뢰 시까지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 행정기관은 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치기한 내에 그 내용 및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각 기관 평가 등에 반영
  - 법령(안) 제출시기, 평가자료 협조, 권고사항 이행, 자율평가체계 구축·운영 등

## 제5절

## '17년도

## 부패영향평가

## 주요 추진 내용

## 1 '17년도 부패영향평가 총평

2017년도에는 총 1,440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10개 법령에 대하여 395건의 개선권고 의견을 통보하였다. 특히, 군 사망자·가습기살균제피해자 구제, 소비자 권리보호 등 사회적 이슈분야 법령에 대한 심층평가 실시로 시의성 있는 개선권고 의견 도출에 평가역량을 집중하였다.

## 중점 개선권고 분야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각종 심의위원회의 이해 충돌 방지 (100건, 25.3%)
- 국민건강·소비자 위해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강화 등 행정제재의 적정화 (77건, 19.5%)
-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모호한 감경기준 등 재량 규정의 구체화 (51건, 12.9%)

또한 각급기관의 부패영향평가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설명회, 사이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각종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정 누수 방지 및 사업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 기피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한 과제를 발굴하여 현행법령 평가를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총 1,440개의 제·개정 법령안을 평가하여 이 중 110개의 법령안에서 395건의 개선의견을 도출하여 해당기관에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령 수를 기준으로 한 기관별 접수·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법령

평가요청 상위 부처는 국토교통부(192개), 보건복지부(132개), 행정안전부(109개) 등 순이며, 개선권고 통보 법령 수는 해양수산부(도선법 시행령 등 14개), 국토교통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12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11개) 등 순으로 많았다.

현행법령은 송·변전소,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등 기피시설 인근주민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재정누수 방지 등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민지원 사업비의 부실 집행 사례,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목적 외 사용 등 각종 예산낭비 사례, ▲형식적인 사업관리로 인한 불투명한 사업운영 사례 등에 대한 현장 및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분야별 지원사업 법령을 평가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에서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해서는 각 기관 실무자의 부패영향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하고, 제도관련 교육이수 및 자체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적을 부패방지시책평가지표로 운영하였다.

## 2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내용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중앙부처의 의뢰법령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평가하는 것으로, 2017년에는 총 110개 법령안에서 395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여 해당기관에 개선권고를 하였다.

## 가. 제·개정 법령안 접수·처리 현황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1,440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의뢰를 받아 평가를 하였고, 그 중 1,330개의 법령안에 대해서는 원안동의로 통보하고, 110개의 법령안에서 395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도출하여 해당기관에 개선·보완하도록 하였다.

## 〈접수·처리 현황 ('17.1.1.~12.31.)〉

| 접수·평가     | 평가결과 통보   |         |        |
|-----------|-----------|---------|--------|
|           | 원안동의      | 개선권고    | 개선권고건수 |
| 1,440개 법령 | 1,330개 법령 | 110개 법령 | 395건   |

나. 평가기준별 개선권고 현황

평가기준별로는 4개의 평가분야 중 부패통제장치의 적정성(126건, 31.9%)에서 개선권고가 가장 많았고, 11개의 평가기준별로는 이해충돌가능성(100건, 25.3%), 제재규정의 적정성(77건, 19.5%), 예측가능성(67건, 17.0%) 등 순으로 개선권고가 도출되었다.

▶ 평가기준별 개선권고 현황 (110개 법령 395건)

| 평가분야           | 평가기준               | 개선의견 건수 |
|----------------|--------------------|---------|
| 준수<br>(88건)    | 준수부담의 합리성          | 6       |
|                | 제재규정의 적정성          | 77      |
|                | 특혜발생 가능성           | 5       |
| 집행<br>(90건)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51      |
|                | 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 28      |
|                | 재정누수 가능성           | 11      |
| 행정절차<br>(91건)  | 접근성의 용이성           | 11      |
|                | 공개성                | 13      |
|                | 예측 가능성             | 67      |
| 부패통제<br>(126건) | 이해충돌 가능성           | 100     |
|                |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26      |
| 합 계            |                    | 395     |

다. 분야별 개선권고 현황

평가법령별(1,440개)로는 산업개발 관련(398개, 27.6%), 환경보건 관련(317개, 22.0%), 일반행정 관련(271개, 18.8%) 법령이 많았고, 개선법령별(110개)로는 산업개발 관련(39개, 35.5%), 환경보건 관련(33개, 30.0%), 일반행정 관련(17개, 15.5%) 법령 순으로 개선권고가 많이 도출되었다.

▶ 분야별 개선권고 현황 ('17.1.1.~12.31.)

|            | 계     | 일반<br>행정 | 교육<br>문화 | 국방<br>보훈 | 재정<br>경제 | 산업<br>개발 | 과학<br>정보 | 환경<br>보건 | 형사<br>사법 | 기타 |
|------------|-------|----------|----------|----------|----------|----------|----------|----------|----------|----|
| 평가법령(개)    | 1,440 | 271      | 141      | 74       | 151      | 398      | 38       | 317      | 49       | 1  |
| 개선권고 법령(개) | 110   | 17       | 7        | 5        | 4        | 39       | 4        | 33       | 1        | -  |

3 현행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의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통해 국가 재정 누수 방지, 공공행정의 투명성 · 책임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송 · 변전소,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등 기피시설 인근주민 지원사업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정부가 폐기물 매립지 등 기피시설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재정지원 사업을 공직유관단체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지원금을 횡령해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각종 부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6개월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청렴도 평가 대상 공직유관단체(209개)에 대한 서면 조사 결과,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된 3개 공직유관단체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매립지관리공사), 3개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공항 주변 12개 지자체 대상 현장조사 실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민지원 사업비의 부실한 집행사례,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목적 외 사용 등 각종 예산낭비 사례, ▲형식적인 사업 관리 · 감독으로 인한 불투명한 사업 운영 사례 등 아래와 같은 다수의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었다.

① 사업 재원의 부적절한 관리로 사업비 손실 사례

- ○○공사는 주민지원 사업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이자수익 약 8억 원을 주민지원 사업비에서 누락 ('17.3, 실태조사)

② 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 예산낭비 사례

- ○○시 주민들이 ○○공사에서 받은 사업비 중 일부를 6,300만원 상당의 식사권을 구매한 사실이 적발('16.7월 언론보도), 이후 ○○공사에서 '16.10월에 환수조치 하였으나 미회수 ('17.6, 실태조사)
- ○○시 등 15개 지역에서 '16년 주민지원 사업비로 적십자회비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 ○○공사는 사업을 승인했고, 약 26백만 원이 적십자회비로 납부 ('17.3, 실태조사)

### ③ 형식적이고 불투명한 사업운영 사례

- ○○○○시의 경우 ○○공사로부터 '15년에 9개 사업 약 4억3천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진행중인 1건을 제외, 사업종료 후 1년 이상 경과된 8개 사업의 정산서류 미제출 ('17.2, 실태조사)
- ○○공사가 위촉하는 주민지원사업 심의회 위원은 임기가 2년으로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실제 A위원은 3회 연임에 총 8년간 위촉 ('17.3, 실태조사)

이에 주민지원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 별도 계정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이자수익 누락 방지,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환수규정 마련 등 집행관리 강화, ▲주무부처의 정기적인 실태점검과 사후평가 등을 통한 사업운영 내실화, ▲사업계획·결산 등 중요정보의 대국민 공개를 통한 사업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지원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했다.

## 4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내용

각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형식적인 평가 등 실효성의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우리위원회에서는 기관별로 내실 있는 자체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과 사이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각 기관 실무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공직유관단체가 부패영향평가 제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와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사규의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한 실적\*\*을 '부패방지시책평가 지표'로 운영하여 기관내 법무담당 부서와 사규 입안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촉진하고, 공공 부문 내 광범위한 부패유발요인의 적극적 개선을 도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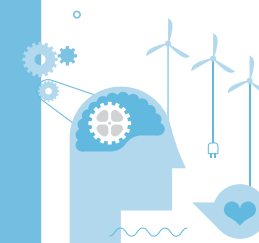
\* (교육이수) 129개 평가대상 공직유관단체 중 115개 기관(89%), 259명 교육 이수

\*\* (부패유발요인제거) 129개 평가대상 공직유관단체 중 99개 기관(77%)이 204개 조문 개선

### 예시

① 한국전력공사: 공사비 정산환급시 이설요청자와 환급자간 명의 일치여부 확인 절차 마련으로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예방 ②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판매의뢰인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에 대한 처리 절차 규정으로 업체와의 결탁 등 부패행위 방지 ③ 한국주택금융공사: 원금상환 유예 사유·기간 등 세부기준 마련 및 공고로 과도한 재량권 행사 통제 등

## 제2장 제·개정 법령 평가 사례



제1절 평가기준별 사례

제2절 업무내용별 사례

## 제1절 평가기준별 사례

### 1. 준수

- 1) 준수부담의 합리성
- 2) 제재규정의 적정성
- 3) 특혜발생 가능성

### 2. 집행

-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3) 재정누수 가능성

### 3. 행정절차

- 1) 접근의 용이성
- 2) 공개성
- 3) 예측가능성

### 4. 부패통제

- 1) 이해충돌가능성
-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기준별 사례 목차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주요 검토 내용                                                                                                      | 사례                                                                                                                                                                             |
|------|----------------|---------------------------------------------------------------------------------------------------------------|--------------------------------------------------------------------------------------------------------------------------------------------------------------------------------|
| 준수   | 준수부담의 합리성      |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p.29</li><li>•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p.32</li><li>•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p.35</li></ul>                                                   |
|      | 제재규정의 적정성      |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p.39</li><li>•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p.42</li><li>•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p.48</li><li>•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p.54</li></ul> |
|      | 특혜 발생 가능성      |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p.68</li><li>•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p.72</li><li>•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p.77</li></ul>                                 |
| 집행   | 재량규정의 구체성      |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 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81</li><li>• 군인사법 시행령 및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p.85</li><li>•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p.94</li></ul>                        |
|      | 위탁·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 협회 등에 관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04</li><li>•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p.107</li><li>• 도선법 시행령 p.113</li></ul>                               |
|      | 재정 누수 가능성      |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p.118</li><li>• 해양수산업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규칙 p.120</li><li>•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p.125</li></ul>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주요 검토 내용                                                                                               | 사례                                                                                                                                                         |
|-------|--------------|--------------------------------------------------------------------------------------------------------|------------------------------------------------------------------------------------------------------------------------------------------------------------|
| 행정 절차 | 접근의 용이성      |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 과정 등 각종 행정 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 수렴에 있어 이해 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p.132</li><li>•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시행령 p.136</li><li>•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p.139</li></ul>                |
|       | 공개성          |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p.147</li><li>•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p.156</li><li>•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p.161</li></ul> |
|       | 예측 가능성       |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처리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p.166</li><li>•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p.175</li><li>• 산림보호법 시행령 p.177</li></ul>                         |
| 부패 통제 | 이해충돌 가능성     |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세징수법 시행령 p.186</li><li>•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p.193</li><li>•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p.197</li></ul>            |
|       |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 지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항만법 시행령 p.203</li><li>•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p.209</li><li>•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218</li></ul>                 |

## 1. 준수

### 1 준수부담의 합리성

#### 개요

- ◆ 법령 등의 적용 대상집단이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각종 비용 또는 희생 등이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인가를 판단
- ◆ 준수부담이 과도할 경우 법령 등의 적용 대상자가 뇌물제공 등의 부패행위를 통해 그 부담을 면제 혹은 완화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 평가내용

- ◆ 준수부담의 법적근거 등 검토
  - 다수의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근거, 요건, 대상 및 범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지를 검토
  - 현금지출, 현물 및 서비스 제공과 같은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법률상 작위·부작위 의무, 사실상의 희생, 기회비용 등까지 검토
- ◆ 준수부담의 필요성 검토
  - 준수부담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또는 준수부담의 도입근거·배경 등을 검토 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검토
- ◆ 준수부담의 합리화 방안 등 검토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지를 검토
  - 당해 부담이외에 이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

### 사례1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평가대상 조문

**제47조(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현황

- ◆ 「디자인보호법」(이하 “법”) 제51조는 디자인등록 출원자의 우선권 주장에 필요한 서류 및 서류 미제출 시 제재(효력 상실) 등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
- ◆ 개정령(안) 제47조는 법 제51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
  -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에 대한 국어번역문 제출 요구권, 지정된 기간 내에 국어번역문 미제출 시 우선권 주장 무효 규정 등을 규정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제47조(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심사 또는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에 대한 한글 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한글번역문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다만,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내용 중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은 한글번역을 생략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문제점

- ◆ 국어번역문 미제출 시 우선권 주장 무효 규정은 법률에 근거 없는 과도한 준수부담 부과
  -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국어번역문 제출 명령권, 국어번역문의 제출을 요구 받은 자의 제출 의무 및 국어번역문 미제출 시 우선권 주장 무효 규정은
  - 국민의 권리·의무 형성에 본질적 사항으로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할 사항이나, 법률에 근거 없이 시행규칙에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준수부담을 주는 결과 초래
- **법제실무** (국민권익위원회, 2015. 1.)
  - 헌법에서 직접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국민의 기본권 제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 중 중요한 사항이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하는 대상이다. (41p)
- **헌법재판소 판례** (헌재 1999. 5. 27. 98헌바70)
  -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개정령(안) 제47조제5항 삭제
  - 법률에 근거 없이 우선권 주장을 무효로 할 수 있게 하는 개정령(안) 제47조제5항을 삭제

## 【참고의견(1건)】

- ◆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국어번역본 제출 명령권, 국어번역문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의 제출 의무, 국어번역문 미제출 시 우선권 주장 무효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

## 【시행규칙안 개선 예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 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 개정령(안)                                                                                                                | 개선의견(예시)                           |
|-----------------------------------------------------------------------------------------------------------------------|------------------------------------|
| 제47조(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br>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제47조(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br>⑤ <삭 제> |

## 【참고 입법례】

- **실용신안법** (법률 제14034호, 시행 2017.3.1.)
  - 제36조(도면의 제출) ② 특허청장은 기준일까지 제1항에 따른 도면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기준일까지 제3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도면의 국어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도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지정된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사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                                                                                                                                                                                                                                                                          |                |                                                                                                                                                                     |
|--------------------------------------------------------------------------------------------------------------------------------------------------------------------------------------------------------------------------------------------------------------------------|----------------|---------------------------------------------------------------------------------------------------------------------------------------------------------------------|
| 1. ~ 11. (생략)                                                                                                                                                                                                                                                            | (생략)           | (생략)                                                                                                                                                                |
| 12.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br>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br>1) 1건의 교통사고로 다음의 인원이 사망한 경우<br>• 10명 이상<br>• 5명 이상 9명 이하<br>• 3명 이상 4명 이하<br>• 2명 이하<br>2) 1건의 교통사고로 다음의 인원이 중상을 입은 경우<br>• 10명 이상<br>• 5명 이상 9명 이하<br>• 3명 이상 4명 이하<br>• 2명 이하 | 법 제32조제1항 제12호 | • 감차 조치(보유차량의 1/5대)<br>• 감차 조치(보유차량의 1/10대)<br>• 위반차량 운행정지(120일)<br>• 위반차량 운행정지(90일)<br><br>• 감차 조치(2대)<br>•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br>•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br>•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
| 13. ~ 16. (생략)                                                                                                                                                                                                                                                           | (생략)           | (생략)                                                                                                                                                                |

※ 비교

1. ~ 2. (생략)

6의2. 위 표 제12호가목에 따라 감차 조치하는 경우 보유차량의 1/5이 4대 이하인 경우, 보유차량의 1/10이 2대 이하인 경우에는 보유차량의 전부를 감차 조치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린다.

7. ~ 10. (생략)

현황

- ◆ 개정령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交通安全 주의의무 강화를 위해 교통사고로 다수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 (사망자가 10인 이상인 사고) 보유차량의 1/5대를 감차하되, 1/5의 값이 4 이하이면 전부 감차
  - (사망자가 5인 이상 9인 이하인 사고) 보유차량의 1/10대를 감차하되, 1/10의 값이 2 이하이면 전부 감차

\* 소숫점 이하는 버림

문제점

- ◆ 보유차량이 20대 이하인 사업자(전체사업자의 76.5%, 8,537개 해당)는 5인 이상 사망사고 시 사망자 수와 관계없이 전부 감차되어, 합리적 사유 없이 과도한 처분을 받게 되는 등 준수 부담의 합리성 결여
  - (5인 사망 사고 시) 보유차량이 30대인 사업자는 3대 감차되는 반면, 보유차량이 20대인 사업자는 20대 전부를 감차

<보유차량 20대 및 30대 사업자 간 감차대수 비교>

| 사망자수<br>보유차량 | 10인 이상                            | 5인 ~ 9인                            | 비고                               |
|--------------|-----------------------------------|------------------------------------|----------------------------------|
| 30대          | 6대 감차<br>( $30 \times 1/5 = 6$ )  | 3대 감차<br>( $30 \times 1/10 = 3$ )  | 사망자 수에 따라 1/5 또는 1/10 감차         |
| 20대          | 20대 감차<br>( $20 \times 1/5 = 4$ ) | 20대 감차<br>( $20 \times 1/10 = 2$ ) | 1/5의 값이 4, 1/10의 값이 2 이하이면 전부 감차 |

- (보유차량이 25대인 사업자) 소숫점 절사로 인해 사망자가 적은 경우에 더 중한 처분을 받게 되는 등 준수부담의 합리성 결여

| 사망자수<br>보유차량 | 10인 이상                           | 5인 ~ 9인                              | 비고                      |
|--------------|----------------------------------|--------------------------------------|-------------------------|
| 25대          | 5대 감차<br>( $25 \times 1/5 = 5$ ) | 25대 감차<br>( $20 \times 1/10 = 2.5$ ) | 1/10의 값이 2 이하인 경우 전부 감차 |

## 참고자료

## ● 차량보유대수별 운송업체 현황(화물운송연합회 내부조사자료, '16.12.)

| 구 분 |       | 전 체     | 20대 이하 |        |        |        | 20대 초과 |        |         |         |
|-----|-------|---------|--------|--------|--------|--------|--------|--------|---------|---------|
|     |       |         | 1대     | 2~10대  | 11~20대 | 계      | 21~30대 | 31~50대 | 51~100대 | 100대 초과 |
| 업체  | 업체수   | 11,157  | 3,140  | 4,082  | 1,315  | 8,537  | 773    | 859    | 739     | 249     |
|     | 비율(%) | 100     | 28.1   | 36.6   | 11.8   | 76.5   | 6.9    | 7.7    | 6.6     | 2.2     |
| 보유  | 대수    | 185,228 | 3,140  | 18,973 | 19,269 | 41,382 | 18,827 | 33,930 | 50,226  | 40,863  |
| 차량  | 비율(%) | 100     | 1.7    | 10.2   | 10.4   | 22.3   | 10.2   | 18.3   | 27.1    | 22.1    |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영세사업자의 준수부담 수준 적정화
  - 의무자의 책임정도, 부담능력 및 유사 부담과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의 준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준수부담의 합리성 제고

##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9028호, 2018.7.3., 일부개정]

## 별표 1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1항 관련)

※ 비교

1. ~ 2. (생략)

6의2. 위 표 제18호가목에 따라 중대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2대 이상의 감차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차량을 포함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차량의 1/5이 4대 이하인 경우에는 4대를 감차 조치하고, 보유차량의 1/10이 2대 이하인 경우에는 2대를 감차 조치하여야 한다.

7. ~ 10. (생략)

## 사례 3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 평가대상 조문

## 제28조(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시기·절차 등) ① ~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매년 5월 20일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⑥ ~ ⑦ (생략)

## 제33조(폐기물처분량 실적 조사·확인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확인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28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산출에 관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확인 결과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내야 할 폐기물 처분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내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차액은 제27조 및 제28조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합리성, 예측 가능성

## 현황

- ◆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매립·소각하는 폐기물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폐기물 처분량 최소화 및 재활용률 극대화 유도
  - 부담금은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 10~30원/kg, 소각 10원/kg 부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17.5.22))

| 폐기물 분류  |     | 부과요율(원/kg) |    | 비 고                                                                                                                               |
|---------|-----|------------|----|-----------------------------------------------------------------------------------------------------------------------------------|
|         |     | 매립         | 소각 |                                                                                                                                   |
| 생활폐기물   |     | 15         | 10 | <b>• 감면대상(50~100%)</b><br>- 연 매출액 120억원 미만 중소기업<br>- 자가 매립시설에 매립후 3년내 재활용<br>- 도서지역내 매립·소각, 재난·재해 폐기물<br>- 소각시 열에너지 50%이상 회수·이용 등 |
| 사업장 폐기물 | 가연성 | 25         | 10 |                                                                                                                                   |
|         | 불연성 | 10         | -  |                                                                                                                                   |
| 건설폐기물   |     | 30         | 10 |                                                                                                                                   |

※ (산정방법) 매립·소각량(kg) × 부과요율(원/kg) × 산정지수(최초년도 1,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변동고시)

- 생활폐기물은 시·도지사가, 사업장폐기물은 환경공단이 연 1회 부과·징수하고, 징수된 금액은 관련 연구·개발, 재활용 산업 육성 등에 활용

### 문제점

**부담금 환급사유 발생시 환급절차와 부담금 납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을 누락하여 납부의무자의 권익과 예측가능성을 침해**

- ◆ 체납시 가산금(3%) 징수·압류, 폐기물처분량 검증결과 추가 징수 등은 규정한 반면, 납부 이후 과오납 등 환급사유 발생시 환급절차와 환급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 등 납부자 권익 보호 장치는 미비

#### ● 법령 입안·심사 기준」(법제처 '12.12.31)

- 부담금의 부과절차는 행정청의 편의에 따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법률에서 가능하면 상세하게 규정(p.206)

- ◆ 납부의무자 편의를 위해 부담금 관련 타 유사입법과 현행 조세관련 법률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신용(직불)카드를 이용한 납부 방법 및 절차 누락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5항

-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국세기본법」 제46조의2 제1항 ('08년 도입)

-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참고) 유사입법 관련보도('17.4.25, 문화일보)

#### ● 폐기물 부담금, 연말부터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자원재활용법 개정 입법예고)

- 올 연말부터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을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됐다.
- 납부자들은 매년 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부담금을 내야 해 이동 불편과 현금 유동성 부족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 환경부는 부담금의 신용카드 납부 도입에 따라 국민 부담이 경감되고 부담금 징수율도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부담금 과오납 등 환급사유 발생시 환급절차 규정
- ◆ 부담금 환급시 납부자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의무 명시
  - 납부일로부터 환급 결정일까지 소정 이율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환급
-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부담금 납부 허용 및 납부방법 구체화

### 검토결과

-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현행법령 개정

####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8552호, 2017.12.29., 제정]

**제23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환급)** ① 환경부장관은 과오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거나 제20조제5항에 따라 감면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감면금액을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해당 납부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분부담금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납부자에게 함께 통지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 2 제재규정의 적정성

### 개요

- ◆ 평가 대상인 법령, 자치법규 등이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벌칙, 과태료 등)가 적절한 수준인지 판단
- ◆ 제재수준이 미약할 경우 실효성이 없고, 제재수준이 과도할 경우 부패행위를 통해 제재 회피 시도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제재 수준의 적정화가 필요

### 평가내용

- ◆ 제재규정 검토
  - 제·개정되는 부분 또는 평가대상 법령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거규정(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및 관련규정·내용을 검토
- ◆ 제재규정의 필요성 검토
  - 제재규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발생원인 및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 목적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피해규모 및 문제의 심각성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 다른 법령의 유사 사례와 비교·검토
  - 다른 법령에서 당해 위반행위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제재내용 및 정도, 근거규정 조사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평가대상 법령의 제재수준이 어떠한지 검토
- ◆ 제재수준의 적정성 검토
  -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경중·횟수·정도 검토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유형·정도 검토
  - 제재수준이 위반행위를 통제하는 데 적절한지 검토

## 사례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평가대상 조문

#### 별표 1 과징금 부과기준

1.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 가. 과징금 부과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과여부를 결정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 1) 위반행위로 인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한 경우
    - 2) 다수의 납품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 3) 1)과 2)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나.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징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달성할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 3. (생략)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또는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 현황

- ◆ 개정령안은 수법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규정하던 과징금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상향 규정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 위반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한 경우,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 과징금 부과 실익이 크지 않거나 과징금 부과로 달성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

## 문제점

- ◆ 법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과징금 부과에 있어 실익이 크지 않다는 사유 등으로 부과 예외를 규정하는 등 제재규정의 적정성 미흡
-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법행위를 하고도 과징금 부과를 회피하고자 부정청탁을 하는 등의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 유사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부과 예외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칫 위법행위를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여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유사 법령에서 과징금 부과 예외를 규정한 입법례 없음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과징금 부과 예외 조항 삭제
- 과징금 부과 예외 조항 삭제를 통해 부패발생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적정성 제고

## 개선결과

-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법령 개정

###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8580호, 2018.1.9., 일부개정]

#### 별표 1 과징금 부과기준

##### 1. 과징금 부과 여부 결정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 가. 위반행위로 인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한 경우
- 나. 다수의 납품업자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 다. 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삭제〉

2. ~ 3. (생략)

## 사례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평가대상 조문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 1. 법 제1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방법

###### 가. 일반기준

- 1)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2)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과징금 부과금액} = \text{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금액} \times \text{사업정지 일수} \times 0.18$$

- 3) 2)의 사업정지 일수는 별표1에 따라 처분된 일수(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를 말한다.
- 4) 1일 평균매출액은 전년도 1년간 총 매출액의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 다만, 신규 사업·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매출액을 환산한다.
- 5) 2)의 과징금의 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금액이 나목, 다목의 기준 금액의 2분의 1을 가중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2분의 1을 가중한 금액으로 한다.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생략)

다.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현행 2호와 같음)

##### 2. 법 제14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현행 3호와 같음)

##### 3. 법 제14조제3항 및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현행 4호와 같음)

### 현황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법 제13조에서는 각 사업자별 위반행위를 열거하고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등록의 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각각의 위반사항에 대한 사업자별 행정처분 기준을 [별표1]로 명시하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은 사업자별·위반행위별 정지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금액을 위반행위 요건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별 정액으로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
  -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은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되 과징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함
-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할지자체장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제34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석유대체연료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하도록 하고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 의무량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 석유정제업자 등이 행정법규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정지 일수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 추진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호~15호 (생략).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석유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제석유거래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2의2.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제1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4항제2호·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등록 요건 또는 신고 사항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석유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가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 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⑥ (생략)

**제35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제34조제1호·제1호의2·제2호·제3호·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식별제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4., 2012.1.26.,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제34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석유대체연료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 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문제점

- ◆ 현실성 · 규제효율성 담보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필요
    - 과징금 부과 시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1일 매출액을 산정하고, 운영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에 위반사업자 1일 평균 매출액과 과징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
- \*  $\text{과징금 부과액} = \text{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times \text{사업정지 일수} \times 0.18$
- 그러나, 처분일이 속한 전년도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1일 매출액은 국내 · 외 경제 상황 및 시장의 변화와 사업별 매출액과 이익률의 변동에 따른 상황 반영에 한계
  - 사업자별 매출액은 시장상황을 반영하듯 매년 상이한 실적으로 보임, 따라서 부과 과징금의 현실성과 규제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1일 평균 매출액의 산정 기준을 현재의 행정처분 직전 1개년도 총매출액에서 직전 3개년도 평균매출액 등 다년으로 확대 필요

< 석유정제사업자 최근 매출액 동향 >

단위 : 억원

| 년도   | 구분     | SK<br>이노베이션 | GS<br>칼텍tm | S-Oil   | 현대오일    | 매출액<br>합계 | 정유사 평균     |                           |          |
|------|--------|-------------|------------|---------|---------|-----------|------------|---------------------------|----------|
|      |        |             |            |         |         |           | 월평균<br>매출액 | 월평균 이익<br>(매출액×<br>영업이익률) | 1일<br>평균 |
| 2013 | 매출액    | 666,695     | 456,598    | 311,585 | 224,037 | 1,658,915 | 34,561     |                           | 1,152.0  |
|      | 영업이익   | 13,829      | 9,001      | 3,660   | 4,032   | 30,522    | 0          | 636                       | 21.2     |
|      | 영업 이익율 | 2.07%       | 1.97%      | 1.17%   | 1.80%   | 1.84%     |            |                           |          |
| 2014 | 매출액    | 658,653     | 402,584    | 285,576 | 213,241 | 1,560,054 | 32,501     |                           | 1,083.4  |
|      | 영업이익   | -2,312      | -4,563     | -2,897  | 2,262   | -7,510    | -156       | -156                      | -5.2     |
|      | 영업 이익율 | -0.35%      | -1.13%     | -1.01%  | 1.06%   | -0.48%    |            |                           |          |
| 2015 | 매출액    | 666,695     | 283,392    | 178,903 | 130,096 | 1,259,086 | 26,231     |                           | 874.4    |
|      | 영업이익   | 19,803      | 13,055     | 8,775   | 6,293   | 47,926    | 998        | 998                       | 33.3     |
|      | 영업 이익율 | 2.97%       | 4.61%      | 4.90%   | 4.84%   | 3.81%     |            |                           |          |
| 2016 | 매출액    | 395,205     | 257,702    | 163,218 | 118,853 | 934,978   | 19,479     |                           | 649.3    |
|      | 영업이익   | 32,286      | 21,404     | 16,929  | 9,657   | 80,276    | 1,672      | 1,672                     | 55.7     |
|      | 영업 이익율 | 8.17%       | 8.31%      | 10.37%  | 8.13%   | 8.59%     |            |                           |          |

출처 : 나이스신용평가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
  - 매출액 산정기간을 다년으로 확대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7호, 2017.10.19., 일부개정]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 법 제1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 일반기준
    - 1)~3) 생략
    - 4) 1일 평균 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3년간 총 매출액의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사례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평가대상 조문

#### ●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관련

**제44조의4(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0조의4제4항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은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지킴이단의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2. 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상황 점검
3. 인권침해 의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사의뢰, 진정·고발 등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인권지킴이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 운영자, 운영 법인의 임직원 등 해당 시설 운영에 직접 관계된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1. ~ 6. (생략)

③ 인권지킴이단은 단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⑤ 단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대면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인권지킴이단,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별표 8 장애인거주시설 행정처분기준 (제64조의2 관련)

##### 1. 일반기준

가.~라.(생략)

#####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가.~마.(생략)                                           |              |        |       |       |
| 바. 법 제60조의4제4항에 따른 인권지킴이단을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 법 제60조의4 제4항 | 개선명령   | 시설장교체 | 시설폐쇄  |
| 사.~차.(생략)                                           |              |        |       |       |

※ 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 가능성

#### 현황

- ◆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장애인쉼터 설치,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설치 등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에 대한 주요업무, 자격요건, 위촉방법, 구성인원 및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장애인거주시설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 함

#### 문제점

- ◆ 인권지킴이단이 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의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실 확인 및 조사의뢰,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함에도
  - 지킴이단의 부정·불법 행위에 대한 해촉 등 참여배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재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인권지킴이단원에 대한 해임·해촉 규정을 통해 공정성 제고
  - 부정 및 불법행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관련 업무에서 배제 필요

《향후 법개정 사항》

문제점

- ◆ 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의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 있음에도
  - － 인권지킴이단을 설치·운영하지 않을 시 해당시설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재량행위를 벗어남.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①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인권지킴이단의 기능이 정기적인 인권상황 점검 및 인권침해 의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실 확인 및 조사의뢰, 진정·고발 등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공정한 직무윤리를 담보할 수 있는 규정 부재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인권지킴이단을 설치·운영하지 않을 시 해당시설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기준 개선 (법 60조3의 4항 개정 포함)
  - ◆ 인권지킴이단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 마련
    - － 업무상 비밀 누설, 뇌물수수 등 범죄행위 시 공무원과 동일한 「형법」상의 형사처벌 부과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역할을 하는바(제59조의 9) 해당 기관 종사자의 공무원 의제 포함 필요 (장애인권익지원과)

【시행규칙 개선 예시】

| 개정안                                                       | 개선의견(예시)                                                                                                                                                                                                                                                                                                                    |
|-----------------------------------------------------------|-----------------------------------------------------------------------------------------------------------------------------------------------------------------------------------------------------------------------------------------------------------------------------------------------------------------------------|
| 제44조의4(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①~ ⑤ (생략) (신설)                     | 제44조의4(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① ~ ⑤ (생략)<br>⑥ 인권지킴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br>1. 정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br>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br>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br>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br>⑦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 ⑥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

※ 본 평가서의 개선의견 [예시]는 소관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므로, 개선취지의 반영을 전제로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음

▲ 향후 법개정 포함

【장애인복지법 예시】

| 현행법령                                                                                                                     | 개선의견(예시)                                                                                                                         |
|--------------------------------------------------------------------------------------------------------------------------|----------------------------------------------------------------------------------------------------------------------------------|
| <b>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b> ①~③ (생략)<br>④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br>⑤ (생략) | <b>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b> ①~③ (생략)<br>④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br>⑤ (생략) |

※ 본 평가서의 개선의견 [예시]는 소관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므로, 개선취지의 반영을 전제로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음

## 【시행규칙 예시】

| 개정안                                                                        |                         |          |               |          | 개선의견(예시)                                                       |                         |          |               |          |
|----------------------------------------------------------------------------|-------------------------|----------|---------------|----------|----------------------------------------------------------------|-------------------------|----------|---------------|----------|
| [별표 8] 장애인거주시설 행정처분기준(제64조의2 관련)                                           |                         |          |               |          | [별표 8] 장애인거주시설 행정처분기준(제64조의2 관련)                               |                         |          |               |          |
| 1. 일반기준<br>가.~라.(생략)                                                       |                         |          |               |          | 1. 일반기준<br>가.~라.(생략)                                           |                         |          |               |          |
| 2. 개별기준                                                                    |                         |          |               |          | 2. 개별기준                                                        |                         |          |               |          |
| 위반사항                                                                       | 근거<br>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br>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br>위반 | 2차<br>위반      | 3차<br>위반 |                                                                |                         | 1차<br>위반 | 2차<br>위반      | 3차<br>위반 |
| 가.~마.(생략)                                                                  |                         |          |               |          | 가.~마.(생략)                                                      |                         |          |               |          |
| 바.법 제60조의4제4항에<br>따른 <u>인권지킴이단을<br/>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br/>니하거나 방해하는 경<br/>우</u> | 법 제<br>60조<br>의4<br>제4항 | 개선<br>명령 | 시설<br>장<br>교체 | 시설<br>폐쇄 | 바.법 제60조의4제4항에<br>따른 <u>인권지킴이단을<br/>설치 또는 운영을 방해<br/>하는 경우</u> | 법 제<br>60조<br>의4<br>제4항 | 개선<br>명령 | 시설<br>장<br>교체 | 시설<br>폐쇄 |
| 사.~차.(생략)                                                                  |                         |          |               |          | 사.~차.(생략)                                                      |                         |          |               |          |

## 【공무원의제 관련 법령 예시】

●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개선안(예시)**

제○○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9조의 9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의 종사자, 제60조의 4에 따른 인권지킴이단은 공무원이 아닌 종사자·단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근거 법령·기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③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법령 입안·심사 기준』**(법제처, 2012. 12. 31.)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결격사유, 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pp. 362~363)

## [참고 입법례]

## 해임·해촉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위원의 지명철회·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 각 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解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사면법 시행규칙**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사면법」 제1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심사내용이나 그 밖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 사례 4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 평가대상 조문 1

**제5조(화랑업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위작 미술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계획
4.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제12조(미술품 경매업의 허가 등)**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인력·시설 및 설비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능력
3. 위작 미술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계획
4. 그 밖에 미술품 경매업의 건전한 운영에 필요한 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예측 가능성, 준수부담의 합리성

### 현황

- ◆ 미술품 위작 유통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함으로써 미술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정

※ 천경자 화백, 이우환 작가 위작 유통 논란 등으로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 ◆ 화랑업 및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 미술품 경매업의 허가 등 미술품 유통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규정 마련

### ●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법') 주요 내용

1. 화랑업 및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2. 미술품 경매업의 허가 등,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3. 미술품 유통업의 이해충돌의 방지 및 상생협약
4. 미술품 자체 이력 관리 의무화
5.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

- ◆ 법 제5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은 화랑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와 미술품 경매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할 자료를 명시  
 - 등록신청서, 위작 미술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계획 등

### 문제점

#### 〈법 제5조 관련〉

- ◆ 실시계획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제시가 없어 화랑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이하 '화랑업자')들의 예측가능성 저해  
 -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명시 부재로 화랑업자들이 위작 미술품의 유통 방지를 위해 갖추어야 할 물적·기술적 조치 등 서류 수리를 위한 요건 예측 불가

- ◆ 담당자가 화랑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할 우려  
 - 법 제5조제2항제4호는 화랑업자가 같은 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 제5조 ①화랑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작가의 명단 등을 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함  
 - 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특정하지 않아 등록을 수리하는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화랑업자에게 과도한 증빙을 요구해 필요 이상으로 부담 부과 여지 존재

〈법 제12조 관련〉

- ◆ 실시계획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제시가 없어 미술품 경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경매업자’)들의 예측가능성 저해
  -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명시 부재로 경매업자들이 위작 미술품의 유통 방지를 위해 갖추어야 할 물적·기술적 조치 등 서류 수리를 위한 요건 예측 불가

검토결과 : 개선권고

〈법 제5조 관련〉

- ◆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화랑업자의 화랑업 등록 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 위작 미술품의 유통 방지를 위해 실시계획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요소를 명시
  -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해당 분야 업무 특성을 반영한 요건 규정
- ◆ 화랑업자가 제출하여야 할 증빙 서류를 구체화하여 화랑업자의 준수부담의 합리성 확보
  - 법 제5조제2항제4호의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법 또는 시행령에 구체화하여 화랑업자들이 필요최소한의 서류만 제출하도록 보완

〈법 제12조 관련〉

- ◆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경매업자의 경매업 허가 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 위작 미술품의 유통 방지를 위해 실시계획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요소를 명시
  -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해당 분야 업무 특성을 반영한 요건 규정

【예시】

※ 본 평가서의 개선의견 [예시]는 소관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므로, 개선취지의 반영을 전제로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음

〈법 제5조 관련〉

▶ 실시계획 관련 개정사항

| 제정안                                                                                                | 개선의견(예시)                                                                                                             |
|----------------------------------------------------------------------------------------------------|----------------------------------------------------------------------------------------------------------------------|
| 제5조(화랑업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br>3. 위작 미술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 계획 | 제5조(화랑업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br>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위작 미술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계획 |

▶ 증빙서류 관련 개정사항

| 제정안                                                                                        | 개선의견(예시)                                                                                                                                                                                                                                                                            |
|--------------------------------------------------------------------------------------------|-------------------------------------------------------------------------------------------------------------------------------------------------------------------------------------------------------------------------------------------------------------------------------------|
| 제5조(화랑업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br>4.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 제5조(화랑업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br>4. <u>시설설치내역서</u><br>5. <u>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u><br>6. <u>전시 시설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u><br>7. <u>미술작가와와의 계약서</u><br>8. ....<br>또는<br>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br>또는<br>4. <u>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u> |

〈법 제12조 관련〉

▶ 실시계획 관련 개정사항

| 제정안                                                                                                  | 개선의견(예시)                                                                                                               |
|------------------------------------------------------------------------------------------------------|------------------------------------------------------------------------------------------------------------------------|
| 제12조(미술품 경매업의 허가 등)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br>3. 위작 미술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 계획 | 제12조(미술품 경매업의 허가 등)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br>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위작 미술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계획 |

【실시계획 관련 유사 입법례】

● 공연법 및 시행령

**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 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증빙서류 관련 유사 입법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시행령

**법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시행령 제8조(등록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1. 시설명세서
-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 3. 학예사 명단
-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 평가대상 조문 2

**제5조(화랑업의 등록)** ④ 화랑업을 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과 발굴·양성·지원·홍보하는 작가의 명단을 화랑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정안 내용

- ◆ 평가대상 조문은 화랑에 화랑업자가 발급받은 등록증 및 발굴·양성·지원·홍보하는 작가의 명단을 게시하도록 의무화
- ◆ 화랑이 등록 절차를 거치고, 작가를 양성하려는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화랑에 대한 구매자 등의 신뢰도 제고 도모

### 문제점

- ◆ 게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화랑업자에 대한 제재규정 불비로 화랑업자들이 해당 의무를 소홀히 할 개연성 상존
  - － 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화랑이 정식으로 등록한 화랑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구매자들의 신뢰도 확보 어려움
  - － 위작 유통, 미술품 사기로부터 구매자들을 보호하고 화랑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등록증 게시 의무를 준수하게 할 필요

### 관련 보도 사례

- **김관호·김환기 고가 명화 들고 튼 '검은 손' 화랑대표 4년만에 잡혔다** (국민일보, '14.1.8.)
  - － A씨가 '08년에 화랑업계에서 '큰손'으로 유명한 이씨에게 그림 10점과 함께 보석 8점까지 팔아달라고 맡겼으나, 이씨는 '09년 10월 화랑을 닫고 도피
- **미술품 사기 실태 "위작이 걸작되고 전시하다 행방 묘연"** (일요서울, '13.5.27.)
  - － 위작 문제는 화랑과 갤러리, 경매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고가의 미술품을 위탁받아 전시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판매하는 등 횡령 사건 계속 발생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게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화랑업자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 －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해당 분야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제재 신설
  - ※ 등록업인 학원, 중개사무소의 경우 등록증 등의 게시 의무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

### 【예시】

※ 본 평가서의 개선의견 [예시]는 소관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므로, 개선취지의 반영을 전제로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음

| 제정안                                                                                          | 개선의견(예시)                                                                                                                                                                                 |
|----------------------------------------------------------------------------------------------|------------------------------------------------------------------------------------------------------------------------------------------------------------------------------------------|
| 제5조(화랑업의 등록) ④ 화랑업을 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과 발굴·양성·지원·홍보하는 작가의 명단을 화랑에 게시하여야 한다.<br><br>〈신 설〉 | 제5조(화랑업의 등록) ④ 화랑업을 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과 발굴·양성·지원·홍보하는 작가의 명단을 화랑에 게시하여야 한다.<br><br>제4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br>1. 제5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화랑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

### 【유사 입법례】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학원설립·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학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강사 등)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1의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나 제14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3의2,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자
4.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 ● 공인중개사법 및 시행규칙

법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법 제5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시행규칙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말한다)
2.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평가대상 조문 3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화랑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화랑”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미술품 경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미술품 경매, 미술품 경매업,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정안 내용

- ◆ 법 제5조는 화랑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전시 공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속 작가 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할 것을 요구
  - 법 제8조는 제5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한 화랑업자가 아닌 경우, “화랑”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
  - 구매자 등이 등록된 화랑을 통해 작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위작 구입 가능성을 방지하고 화랑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 ◆ 법 제12조는 미술품 경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
  - 법 제14조는 제12조에 따라 허가 받은 경매업자가 아닌 경우, 미술품 경매, 미술품 경매업,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
  - 구매자 등이 허가 받은 경매업자를 통해 작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위작 유통을 방지하고 미술품 경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 문제점

- ◆ 등록 또는 허가받지 않고 화랑 또는 경매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미술품 유통업을 영위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 부재
  - 제재 불가로 등록 또는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화랑 또는 경매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 발생 가능

관련 보도 사례

- 전속작가·전시공간 없으면 ‘화랑’ ‘갤러리’ 간판 못단다(서울경제, '16.10.6.)
  - 예술경영지원센터가 '15년 기준 집계한 국내 433개 화랑 중 과반 이상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구매자들의 신뢰를 거짓으로 확보하고, 위작을 유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창출하려는 부패행위 발생 우려
  - ※ 법 제26조제7항 및 제40조제2항제8호는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유사명칭 사용 제재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제8조) 등록하지 않고 화랑과 유사명칭을 사용한 화랑업자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해당 분야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제재 명시
- ◆ (제14조) 허가받지 않고 미술품 경매, 미술품 경매업과 유사명칭을 사용한 미술품 경매업자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해당 분야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제재 마련
    - ※ 다른 과태료 규정의 과태료 부과방식(건당, 일정 기간동안 위반사실 있는 경우 부과 등), 제재수준과 비교하여 적절한 제재 수준 마련

【예시】

※ 본 평가서의 개선의견 [예시]는 소관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므로, 개선취지의 반영을 전제로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음

▶ 제8조 관련 개정사항

| 제정안                                                                        | 개선 의견(예시)                                                                                        |
|----------------------------------------------------------------------------|--------------------------------------------------------------------------------------------------|
|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화랑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화랑”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화랑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화랑”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신 설〉                                                                      | 제4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br>1. 제8조를 위반하여 화랑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 제14조 관련 개정사항

| 제정안                                                                                         | 개선 의견(예시)                                                                                                       |
|---------------------------------------------------------------------------------------------|-----------------------------------------------------------------------------------------------------------------|
| 제1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미술품 경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미술품 경매, 미술품 경매업,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미술품 경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미술품 경매, 미술품 경매업,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신 설〉                                                                                       | 제4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br>1. 제14조를 위반하여 미술품 경매, 미술품 경매업,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 【유사 입법례】

## ● 건축사법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 ●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⑥ 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9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의2.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약국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3 특혜발생 가능성

## 개요

- ◆ 법령 등으로 인해 특정인 또는 단체에게 특혜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된 특혜를 획득·유지·확대하는 과정에서 뇌물제공 등 부패행위가 발생되거나 용인될 위험성이 있는지 평가

## 평가내용

- ◆ 수익적 규정 검토
  - 법령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혜택이나 반사적 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 또는 잠재적으로 혜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규정 및 그에 근거한 처분내용을 검토
  - 구체적인 수익내용이 하위법규에 위임된 경우 하위법규의 관련조항 검토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 특정계층 등에 대한 수익 발생 가능성
  - 혜택이나 이익의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 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는지 검토
- ◆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유사 사례와의 적정성·형평성 검토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토
- ◆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부패 통제장치 마련 여부 검토
  -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사례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평가대상 조문

**제10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 1의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신설)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립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 또는 15년 이상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현황

- ◆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의 범위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추가
- ◆ 위탁대상에 독립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 또는 15년 이상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하고 있음

< 자연휴양림 위탁현황 (‘14. 12월 기준) >

| 소유 주체 | 휴양림 수 | 수탁기관 |         |            |                 |                                     |
|-------|-------|------|---------|------------|-----------------|-------------------------------------|
|       |       | 지자체  | 지방공사·공단 | 산림조합·비영리법인 | 독립가 임업후계자 산림기술자 | 15년 이상 산림분야 공무원이었던 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
| 국가    | 2     | 2    |         |            |                 |                                     |
| 지자체   | 21    |      | 13      | 3          | 1               | 4                                   |

### 문제점

- ◆ 퇴직공무원 또는 특정개인에 대한 특혜 발생 우려
  - 공익적인 자연휴양림의 위탁대상에 15년 이상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하여 공무원 특혜로 인한 사회적 비판 우려

#### ● 경남 ○○군 △△ 등 3개 휴양림은 퇴직공무원 단체(8명)에 위탁

- 실질적 운영은 수탁자 단체가 아니라 (주)○○개발의 대표가 하고 있음
- 연간 약 100백만원의 순수익 발생  
(운영자 인건비는 경비로 처리되어 순수익에 불포함)

- 또한, 위탁대상을 대부분 법인·단체로 하고 있으나, 독립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는 개인자격도 가능하도록 해 특혜 발생 우려

#### ● 전남 ○○군 △△ 휴양림은 개인(임업후계자)에게 위탁

- 연간 약 120백만원의 순수익 발생  
(부부 인건비 연간 약 60백만원 순수익에 불포함)
- ▲ 시설이용료가 타지역에 비해 평균보다 높아 수입증대 보장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위탁대상의 특혜요인 개선
  - 15년 이상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삭제
  - 독립가 · 임업후계자 · 산림기술자 개인 위탁 조문 삭제

[예시]시행령 개정사항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수정, 변경 등 새로운 방향 제시 가능

| 개정안                                                                                                                                                                                                                                  | 개선의견(예시)                                                                                                                                                                                                          |
|--------------------------------------------------------------------------------------------------------------------------------------------------------------------------------------------------------------------------------------|-------------------------------------------------------------------------------------------------------------------------------------------------------------------------------------------------------------------|
| <p><b>제10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b>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단체로서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 · 단체를 말한다.</p> <p>1. ~ 3. (생략)</p> <p>4. 독립가 · 임업후계자 · 산림기술자 또는 15년 이상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p> <p>② (생략)</p> | <p><b>제10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b>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단체로서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 · 단체를 말한다.</p> <p>1. ~ 3. (생략)</p> <p>4. 독립가 · 임업후계자 · 산림기술자로 ○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 단체</p> <p>② (생략)</p> |

<붙임 1>

자연휴양림 위탁현황

(2014년 12월)

|    | 소유주체        | 휴양림명 | 수탁기관               | 위탁기간                 |
|----|-------------|------|--------------------|----------------------|
| 1  | 국가<br>(산림청) | 제주절물 | 제주특별자치도<br>(제주시장)  | '05.3.13 ~ '17.8.31  |
| 2  |             | 서귀포  | 제주특별자치도<br>(서귀포시장) | '05.4.1 ~ '17.8.31   |
| 3  | 대구 달성       | 비슬산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14.4. 1 ~ 계속        |
| 4  | 대구 달성       | 화원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
| 5  | 경기 가평       | 칼봉산  | 가평 시설관리공단          | '08.6.30 ~ 계속        |
| 6  | 경기 용인       | 용인   | 용인 도시공사            | '14.9.26 ~ '19.9.25. |
| 7  | 경기 포천       | 천보산  | 산림문화연구원 묵당         | '13.3.1 ~ '16.2.29.  |
| 8  | 경기 의왕       | 바라산  | 의왕 도시공사            | '15.01.01~ 계속        |
| 9  | 충북 ○○       | ○○   | ○○영농조합법인           | '11.9.1 ~ '17.8.31.  |
| 10 | 충북 단양       | 소선암  | 단양관광관리공단           | '09.1.1 ~ 계속         |
| 11 | 충남 천안       | 태학산  | 천안시설관리공단           | '12.1.1 ~ 계속         |
| 12 | 충남 부여       | 만수산  | 부여시설관리공단           | '13.8.5 ~ 계속         |
| 13 | 전북 남원       | 흥부골  | 임업후계자협회 남원지회       | '13.7.1 ~ '15.6.30   |
| 14 | 전남 ○○       | ○○   | 민간위탁(○○)           | '12.7.1 ~ '15.6.30   |
| 15 | 경북 구미       | 옥성   | 구미시설관리공단           | '09.5.1 ~ '16.12.31  |
| 16 | 경북 안동       | 계명산  | 안동시설관리공단           | '10.1.1 ~ 계속         |
| 17 | 경북 문경       | 불정   | 문경관광진흥공단           | '07.5.1 ~ 계속         |
| 18 | 경남 거제       | 거제   | 거제해양관광 개발공사        | '12.1.1 ~ 계속         |
| 19 | 경남 양산       | 대운산  | 양산시설관리공단           | '13.5.1 ~ '18.4.30   |
| 20 | 경남 창녕       | 화왕산  | 창녕산림조합             | '14.5.1 ~ '16.12.31  |
| 21 | 경남 ○○       | ○○   | (주)○○개발            | '12.3.1 ~ '17.2.28   |
| 22 |             | ○○   |                    |                      |
| 23 |             | ○○   |                    |                      |

## 사례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평가대상 조문

제10조의2(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3.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특혜발생 가능성, 공개성, 예측가능성

### 현황

#### ● 개정이유

- 목재문화체험장이 조성·운영되고 있음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 미흡, 일부 지자체의 담당공무원 등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 존재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관리위탁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목재이용법」의 개정(2017.3.21.공포, 9.22.시행)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 등 법률 위임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개정안은 수탁기관으로 목재문화진흥회,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자체장이 체험장 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을 인정한 법인·단체로 규정

### (참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 ● 목재문화체험장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과 공간으로서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목재제품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

####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 현황 (총 40개소, '16.12. 기준)

| 시·도 | 인천 | 대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운영중 | —  | —  | 1  | 3  | 2  | 3  | 2  | 4  | 1  | 2  | —  |
| 조성중 | 1  | 1  | 3  | 2  | 1  | —  | 1  | 2  | 4  | 6  | 1  |

\* 운영중인 체험장은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 중

#### ● 주요시설물

- 전시시설 : 목재·목제품 전시실, 영상실, 야외전시장, 산업체 홍보관
- 교육(체험)시설 : 자료실, 목재이용체험실, 공방, 야외공연장·교육장
- 기타 편의시설 : 휴게시설, 음수대, 야외탁자 등

#### ● 지원 규모

- 사업비(국비 80%, 지방비 20%)  
신규조성(개소당 52억원), 기존시설 활용(150백만원)
- 회계명 :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제주계정)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문제점

- ◆ 체험장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의 전문성 판단 기준 미흡
  -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체험장 운영·관리 전문성’을 인정하는 법인·단체에 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요구되는 전문성을 인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구체적 기준이 없어 업무담당자 및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 저해
  - 개소당 52억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각 지자체별 체험장이 운영·관리 능력 없는 수탁업체 선정으로 부실 운영될 가능성

- ◆ 체험장 운영·관리 위탁기관 선정 시 특정 단체에 특혜발생 가능
  - 업무담당부서에 의한 내부방침으로 수탁기관이 결정될 가능성 등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인해 특정 법인·단체에 특혜발생 가능성 존재
- ◆ 수탁업체에 대한 관련 정보 공개 미흡
  - 체험장 운영·관리 업체 및 해당 업무에 대하여 일반국민 등 체험장 이용객 및 이해관계자의 알권리 및 접근성 제한

(참고) 관련 보도 사례

● 합천군 정양레포츠공원 민간위탁 잡음 <매일신문, '17. 6. 8.>

“기준이나 방침, 일관성도 없이 오락가락 하는 행정을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경남합천군이 ‘정양레포츠공원’을 민간위탁해 운영하기로 하고 관리운영자 선정에 나섰지만 공고와 취소 공고, 재공고를 반복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군민들은 “레포츠공원 운영자는 전문성과 관리 운영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당초 전문성을 평가해서 수탁자를 결정하려 했던 것인데 돌연 임대료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바꾼 것은 무자격자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시켜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체험장 운영·관리 위탁기관 선정을 위해 법인·단체의 ‘운영·관리 전문성’ 검토 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 구체화
- ◆ 체험장 운영·관리 전문성을 인정받은 기관에 대해 행정규칙 형식으로 고시
- ◆ 수탁업체 및 위탁업무 등 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책임성 확보

[예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수정, 변경 등 새로운 방향 제시 가능

| 개정안                                                                                                                                                                                                                                                                | 개선 의견(예시)                                                                                                                                                                                                                                                                                                                  |
|--------------------------------------------------------------------------------------------------------------------------------------------------------------------------------------------------------------------------------------------------------------------|----------------------------------------------------------------------------------------------------------------------------------------------------------------------------------------------------------------------------------------------------------------------------------------------------------------------------|
| <p><b>제10조의2(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b><br/>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br/>1. 법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br/>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br/>3.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p> <p>〈신 설〉</p> | <p><b>제10조의2(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b><br/>① .....<br/>.....<br/>.....<br/>1. ....<br/>2. ....<br/>.....<br/>3.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장이 설립목적·업무수행 능력·조직·인력 등을 고려하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단체<br/>② 산림청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단체에 그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p> |

## [참고 입법례]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가맹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업무의 위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같은 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3호 및 제14호의 업무를 공단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다만, 법 제65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비영리법인일 것

나.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법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30조의2제1항, 제38조의2제2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3.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정·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교육·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사례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평가대상 조문

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 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제품 설명서와 견본품·모형 등이 첨부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 지정 대행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특혜발생 가능성, 예측가능성

## 현황

- ◆ 개정안은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지정 신청이 없는 제품에 대해 지정 대행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심사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우수문화상품지정 제도를 개선
  - 일반 공모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신청제”뿐만 아니라 지정과정이 상대적으로 간소한 “추천제”를 추가적으로 도입

## 문제점

- ◆ 우수문화상품 추천기준 부재로 자의적 재량권 행사 및 특혜발생 우려
  - 추천기준이 없을 경우 우수문화상품추천 관련 지정 대행기관장의 자의적 재량권 행사 및 사적이익 개입 우려
  - 또한,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제작자금, 제품의 판로 확보 등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노린 문화상품 제작·유통 관련 사업자의 우수문화상품지정을 받기위한 로비와 특혜 지원 가능성

### 문화상품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등)**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 문화상품의 제작 및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제작·유통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작 자금의 지원
2. 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
3.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에서의 우선 입주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대통령령에 지정 대행기관의 장의 우수문화상품 추천기준 마련
  - 지정 대행기관장의 우수문화상품 추천기준을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특혜지원 방지

### 개선결과

-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시행규칙 7조에 반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87호, 2017.6.2., 일부개정]

**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제품 설명서와 견본품·모형 등이 첨부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 지정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한 추천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견본품·모형 등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 설명서
2. 견본품·모형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추천서
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 2. 집행

###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개요

- ◆ 추상적·다의적 법령은 집행과정에서 자의적인 재량행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재량권자,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재량범위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평가

#### 평가내용

- ◆ 재량권자의 명확성 검토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 재량판단의 기준·재량행사절차의 구체성 검토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가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법령 등의 적용 대상 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지 검토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지 검토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이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위임인지 검토

- ◆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토
  - 재량으로 선택 가능한 행위의 양태, 효과의 종류, 기간의 장·단, 금액의 상한·하한 등이 적정한지 검토
  -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 검토
  - 검토 결과 재량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수범자가 재량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지,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있는지 검토
- ◆ 과도한 재량권행사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검토
  - 재량권 행사과정에 당사자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사전통지절차, 의견청취절차 등)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권 행사 기준이 설정·공표되어 있는지 검토

사례 1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별표 1 기탁등록보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같은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생략)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기준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 나.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2호 | 시정명령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다.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18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3호 | 시정명령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일과 같은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생략)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가.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식별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가증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 제2항 | 100    | 150   | 200      |
| 나 ~ 라. (생략)                                      |            | -      |       |          |

## 현황

- ◆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명자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1」의 처분 기준에 따라 지정 취소 및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
  - 「별표 1」에서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에 있어 재차 위반행위의 기준시점을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날’로 규정
- ◆ 해양생명자원법 제44조에서는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를 받은 외국인등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별표 2」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재차 위반행위의 기준시점을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날’로 규정

## 문제점

- ◆ 불분명한 행정처분 기준으로 인한 부패발생 우려
  - 「별표 1」, 「별표 2」에서는 반복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과태료 부과처분)의 기준을 규정함에 있어,
  - 재차 위반행위의 기준시점인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날’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인지, 적발한 날 이전 실제 위반행위가 시작된 날인지, 적발에 따른 처분이 있는 날인지가 불분명
  - ‘실제 위반행위가 있는 날’~‘적발한 날’~‘처분일’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처분 적용 기준일이 불분명할 경우 처분의 당사자가 가중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청탁 등 부패발생 우려
  - 또한 가중처벌의 기준이 처분권자의 해석에 따라 결정될 소지가 있어 처분권자에 불필요한 재량 부여

## 관련 사례

- 감사원 감사 지적사례 (‘16. 1, ‘민생분야 행정처벌기준 운용실태’)
  - 개요 : 인천광역시 ○○구에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소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업무를 처리(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관련)
  - 내용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횟수 산정 시 기존 ‘행정처분일’로부터 현재의 행정처분기준이 되는 ‘적발일’까지로 기간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에 대해 영업정지 90일이 아닌 40일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13.3.27.부터 ‘13.9.9.까지 5개 업소에 대하여 짧게는 20일, 길게는 5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감경 → 주의처분
- “청주시, 대기업 식품 위법 적발 행정처분 능력 눈총” <청주일보, 2015.11.11>
  - CJ제일제당 냉동식품 표시기준 위반 적발...청주시 단속 4달 만에 행정처분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일 구체화
  - 재차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일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불분명한 처분기준으로 인한 부패발생 가능성 차단(「별표 1」, 「별표2」)

##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양생명자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 별표 1 기탁등록보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6조제1항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사례 2 군인사법 시행령 및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 평가대상 조문

## ●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4(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②~⑤ (생략)

⑥ 보통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군 참모총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⑧ (생략)

**제60조의25(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4조의3제3항에 따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 6. (생략)

②~⑤ (생략)

⑥ 중앙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⑧ (생략)

**제60조의26(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① 법 제54조의3제2항제2호에서 따른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로 한다.

② 법 제54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경우에는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국방부 훈령 제1691호 ('14. 8. 28.)

제4조(전공사망심사위원회) ①~② (생략)

③ 보통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 시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4조의2(전공상심사위원회)①~② (생략)

③ 보통전공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 시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4조의3(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4조에 따른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내부위원과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⑦ (생략)

제4조의4(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4조에 따른 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내부위원과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⑦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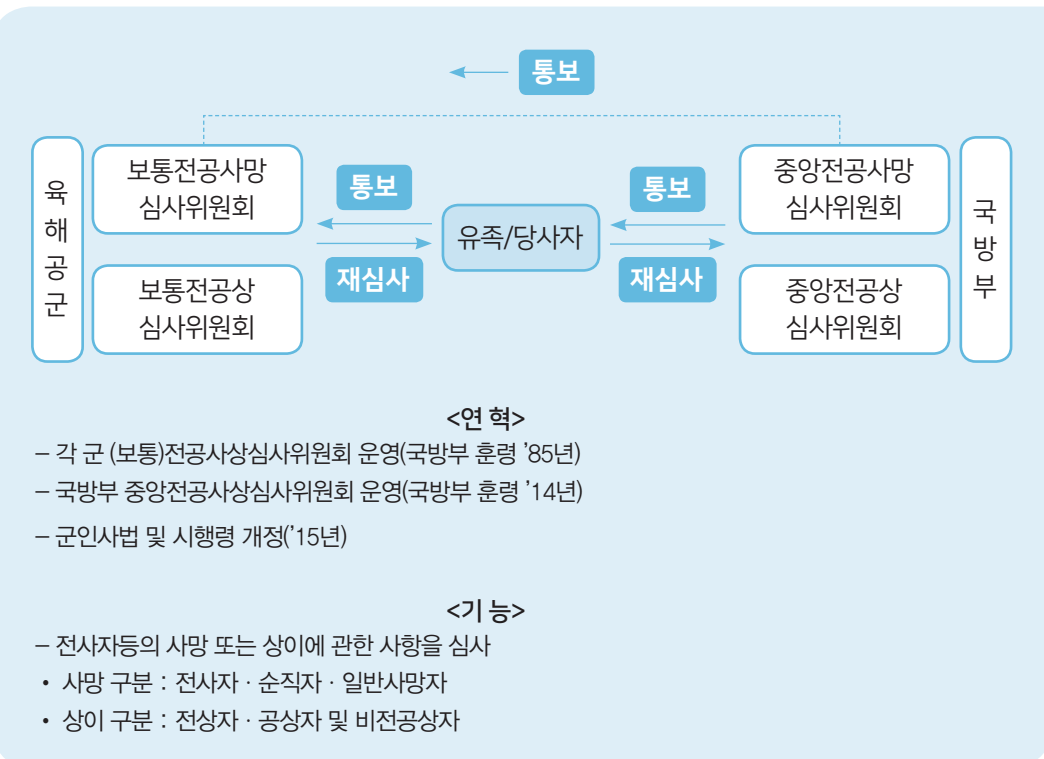
## 평가기준

-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현황

- ◆ (개정이유)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구성인원을 통일하고,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유족과 당사자의 적극적 권리구제 측면에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 후 1회에 한해 재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정

## 1. 국방부 전공사상심사 처리절차



## 2. 보통전공사망심사위원회 구성

| 구 분 |    | 육 군                   |       | 해 군                    | 공 군                      |       |
|-----|----|-----------------------|-------|------------------------|--------------------------|-------|
| 명 칭 |    | 전공사망심사위원회             |       | 전공사망심사위원회              | 전공사망심사위원회                |       |
|     |    | 갑 반                   | 을 반   |                        | 갑 반                      | 을 반   |
| 구 성 | 내부 | 7명                    | 8명    | 8명                     | 9명                       | 8명    |
|     | 외부 | 1명                    | 1명    | 1명                     | 없음                       | 없음    |
| 대 상 |    | 대령급이상                 | 중령급이하 | 전 체                    | 장관급 장교                   | 대령급이하 |
| 비 고 |    | ※ '14년부터 외부전문위원 1명 참여 |       | ※ '15.11월부터 외부위원 1명 참여 | ※ '15년 9월부터 외부전문위원 1명 참여 |       |

※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9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 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함(군인사법 제54조의3 제4항)

## 3. 보통·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심사현황 ('14년~'16년)

## (1) 보통전공사망심사위원회 심사현황 (45%~63% 순직 인정)

단위 : 명

| 구 분  | 총 계 |        | 육 군 |        | 해 군 |        | 공 군 |        |
|------|-----|--------|-----|--------|-----|--------|-----|--------|
| 계    | 478 | (100%) | 364 | (100%) | 65  | (100%) | 49  | (100%) |
| 전 사  | —   |        | —   |        | —   |        | —   |        |
| 순 직  | 263 | (55%)  | 200 | (55%)  | 41  | (63%)  | 22  | (45%)  |
| 일반사망 | 215 | (45%)  | 164 | (45%)  | 24  | (37%)  | 27  | (55%)  |

## (2)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심사현황

## ① 재심 청구 건 중 81%가 전사·순직으로 변경

단위 : 명

| 총 계 |        | 전 사 |        | 순 직 |       | 일반사망 |       | 보 류 |        |
|-----|--------|-----|--------|-----|-------|------|-------|-----|--------|
| 213 | (100%) | 1   | (0.5%) | 171 | (80%) | 40   | (19%) | 1   | (0.5%) |

## ② 각 군별 세부 현황

단위 : 명

| 구 분  | 총 계 |        | 육 군 |         | 해군(해병* 포함) |        | 공 군 |        |
|------|-----|--------|-----|---------|------------|--------|-----|--------|
| 계    | 213 | (100%) | 195 | (100%)  | 14         | (100%) | 4   | (100%) |
| 전사   | 1   | (0.5%) | 1   | (0.5%)  | ·          |        | ·   |        |
| 순직   | 171 | (80%)  | 157 | (80.5%) | 12         | (86%)  | 2   | (50%)  |
| 일반사망 | 40  | (19%)  | 36  | (18.5%) | 2          | (14%)  | 2   | (50%)  |
| 보류   | 1   | (0.5%) | 1   | (0.5%)  | ·          |        | ·   |        |

\*

\*해병은 2명 재심사하여 순직처리

## 관련보도 : 뉴스1 '16.9.26

## ● 군내 '순직' 등 공상 처리 '주먹구구식'

-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과 공군 전공상심사위원회와 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경우 개정법 시행이후에도 7~8명의 위원으로 진행한 회의가 다수 발견, 해병대 전공상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채 고정된 7명의 내부위원만으로 매년 운영되고 있음
- 각 군 보통전공사망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건 중 △2015년 78% △2016년 77%가 순직으로 변경

## 문제점

- ◆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의 자격을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그 관련 업무'로 하여 위촉자격의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 구성 우려 (시행령 제60조의24)
  - 각 군 보통사망심사의 경우 사망자 예우 및 유족에 대한 권익과 신뢰를 위해 위촉자격 기준을 구체화 하여 전문성 강화 필요
  - ※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법의학 분야 조교수 이상, 전문의 6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6년 이상 등 구체적으로 명시(시행령 제60조의25)
- ◆ 상위 법 규정 및 취지에 벗어나게 각 군의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군인사법」에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9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음에도(제54조의3)
    - 국방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7명이상 9명 이내로 각 군의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8명 이상으로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음(「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4조내지 제4조의4)
- ◆ 각 군의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외부 위원 참여가 없거나 단 1명만이 참여하고 있어 공정성·객관성 저해로 불신의 개연성 있음
  - 최근 3년('14~'16년)간 보통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 불복하여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로 재심청구한 사건의 81%가 전사나 순직으로 변경
  - ※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위원은 과반수(군인사법 제54조의3 제4항)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의 자격기준을 구체화
- ◆ 중앙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구성을 법 규정에 맞게 9명 이상으로 변경
- ◆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

【예시】「군인사법 시행령」개정 관련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수정, 변경 등 새로운 방향 제시 가능

| 현 행                                                                                                                                                                                                          | 개선 의견 (예시)                                                                                                                                                                     |
|--------------------------------------------------------------------------------------------------------------------------------------------------------------------------------------------------------------|--------------------------------------------------------------------------------------------------------------------------------------------------------------------------------|
| <b>제60조의24(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 ① 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전사자들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b>제60조의24(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 ① 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u>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u> |

【예시】「전공사상자 처리훈령」개정 관련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수정, 변경 등 새로운 방향 제시 가능

| 현 행                                                                                                                                                               | 개선 의견 (예시)                                                                                                                                                  |
|-------------------------------------------------------------------------------------------------------------------------------------------------------------------|-------------------------------------------------------------------------------------------------------------------------------------------------------------|
| <b>제4조(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②(생략)</b><br>③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 시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br>④~⑤ (생략)                                                   | <b>제4조(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②(생략)</b><br>③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 시 ①명 이상의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외부 위원은 제4조 3의 3항에 준한다.<br>④~⑤ (생략)               |
| <b>제4조의2(전공상심사위원회) ①~②(생략)</b><br>③ 보통전공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 시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br>④~⑤ (생략)                                                   | <b>제4조의2(전공상심사위원회) ①~②(생략)</b><br>③ 보통전공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 시 ①명 이상의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외부 위원은 제4조 4의 3항에 준한다.<br>④~⑤ (생략)               |
| <b>제4조의3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br>① 제4조에 따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내부위원과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br>②~⑦ (생략)  | <b>제4조의3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br>① 제4조에 따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의 내부위원과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br>②~⑦ (생략)  |
| <b>제4조의4 (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br>① 제4조의 2에 따른 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내부위원과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br>②~⑦ (생략) | <b>제4조의4 (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br>① 제4조의 2에 따른 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의 내부위원과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br>②~⑦ (생략) |

- 각 군 「전공사망 및 사상심사 규정」
  - 육군의 보통전공사망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상심의위원회(갑·을) 규정 개정
  - 해군의 보통전공사망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상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 공군의 보통 전공사망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상심의위원회(갑·을) 규정 개정
  - 해병대의 보통전·공상확인심사위원회 규정 개정

【예시】각 군 규정 개정관련

| 현 행                                                                                | 개선의견 (예시)                                                                                 |
|------------------------------------------------------------------------------------|-------------------------------------------------------------------------------------------|
| 제○조(전공사망심사위원회)<br>보통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 시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 제○조(전공사망심사위원회)<br>보통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 시 ○명 이상의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
| 제○조(전공상심사위원회)<br>보통전공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 시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 제○조(전공상심사위원회)<br>보통전공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 시 ○명이상의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

<붙임>

각 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 구분 |    | 육군                                                                                                                          |                                                                                                                                  | 해군                                                                                           |                                                                                                                         |
|----|----|-----------------------------------------------------------------------------------------------------------------------------|----------------------------------------------------------------------------------------------------------------------------------|----------------------------------------------------------------------------------------------|-------------------------------------------------------------------------------------------------------------------------|
| 명칭 |    | 보통 전공사망심사위원회                                                                                                                |                                                                                                                                  | 보통 전공상<br>심사위원회                                                                              | 보통 전공상<br>심사위원회                                                                                                         |
| 구성 |    | 〈갑반〉<br>• 위원장<br>(인사참모부장)<br>• 위원<br>– 인참부 차장<br>– 인사행정처장<br>– 헌병실장<br>– 법무실장<br>– 의무실장<br>– 정신과군의관<br>• 외부전문위원             | 〈을반〉<br>• 위원장<br>(인사행정처장)<br>• 위원<br>– 안전관리 센터장<br>– 교육훈련과장<br>– 보호지원과장<br>– 보건정책과장<br>– 헌병장교<br>– 법무장교<br>– 정신과 군의관<br>• 외부전문위원 | • 위원장<br>(의무실장),<br>• 위원<br>– 인사처리과장<br>– 인사근무과장<br>– 의무계획과장<br>– 보건정책과장<br>– 헌병장교<br>– 법무장교 | • 위원장<br>(근무차장)<br>• 위원<br>– 근무행정과장<br>– 감사/민원과장<br>– 안전/재난관리과장<br>– 훈련과장<br>– 범죄예방과장<br>– 법무과장<br>– 보건정책과장<br>• 외부전문위원 |
|    |    | • 위원장<br>(근무행정과장)<br>• 위원<br>– 호국보훈담당<br>– 인력획득정책담당<br>– 의학자문담당<br>– 의무조사담당<br>– 해양법제과장<br>– 범죄예방과장<br>– 병영정책담당<br>• 외부전문위원 |                                                                                                                                  |                                                                                              |                                                                                                                         |
| 인원 | 내부 | 7명                                                                                                                          | 8명                                                                                                                               | 7명                                                                                           | 8명                                                                                                                      |
|    | 외부 | 1명                                                                                                                          | 1명                                                                                                                               | 없음                                                                                           | 1명                                                                                                                      |
| 비고 |    | ※ '14년부터 외부위원 1명 참여                                                                                                         |                                                                                                                                  | ※ 외부위원 없음                                                                                    | ※ '15년 11월부터 외부위원 1명 참여<br>(5명중 순번제)                                                                                    |

| 구분 |                                                                                                                                                                                                                                               | 공군                                                                                                                                                                                                                                    |                                                                                                                                                                                                                                         | 해병대                                                                                                                                                                                                                                  |
|----|-----------------------------------------------------------------------------------------------------------------------------------------------------------------------------------------------------------------------------------------------|---------------------------------------------------------------------------------------------------------------------------------------------------------------------------------------------------------------------------------------|-----------------------------------------------------------------------------------------------------------------------------------------------------------------------------------------------------------------------------------------|--------------------------------------------------------------------------------------------------------------------------------------------------------------------------------------------------------------------------------------|
| 명칭 |                                                                                                                                                                                                                                               | 보통 전공사망심사위원회                                                                                                                                                                                                                          |                                                                                                                                                                                                                                         | 보통 전·공상<br>확인 심사위원회                                                                                                                                                                                                                  |
| 구성 | 〈갑반〉                                                                                                                                                                                                                                          | 〈을반〉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위원장(참모차장)</li><li>• 위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인사부장</li><li>－ 기획관리부장</li><li>－ 정보작전부장</li><li>－ 군수참모부장</li><li>－ 감찰실장</li><li>－ 헌병단장</li><li>－ 법무실장</li><li>－ 의무실장</li></ul></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위원장(인참부 차장)</li><li>• 위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인참부 2차장</li><li>－ 법무과장</li><li>－ 장교인사과장</li><li>－ 감찰과장</li><li>－ 병영정책과장</li><li>－ 항공의무과장</li><li>－ 범죄예방과장</li></ul></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위원장(인사2차장)</li><li>• 위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근무행정과장</li><li>－ 감찰실 담당</li><li>－ 법무과장</li><li>－ 항공의무과장</li><li>－ 인사계획담당</li><li>－ 인사관리담당</li><li>－ 병영문화계획담당</li></ul></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위원장(인사참모처장)</li><li>• 위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인력계획과장</li><li>－ 법무과장</li><li>－ 헌병수사과장</li><li>－ 복지운영과장</li><li>－ 의무조사담당</li><li>－ 의무대장</li><li>－ 근무행정과장</li></ul></li></ul> |
| 인원 | 내부                                                                                                                                                                                                                                            | 9명                                                                                                                                                                                                                                    | 8명                                                                                                                                                                                                                                      | 8명                                                                                                                                                                                                                                   |
|    | 외부                                                                                                                                                                                                                                            | 없음                                                                                                                                                                                                                                    | 없음                                                                                                                                                                                                                                      | 없음                                                                                                                                                                                                                                   |
| 비고 |                                                                                                                                                                                                                                               | ※ '15년 9월부터 외부위원 1명 참여<br>※ 규정에는 외부위원 포함할 수 있음                                                                                                                                                                                        |                                                                                                                                                                                                                                         |                                                                                                                                                                                                                                      |
|    |                                                                                                                                                                                                                                               | ※ '17년 1월 부터 외부위원 1명 참여 (5명중 순번제)<br>※ 규정에는 외부위원 없음                                                                                                                                                                                   |                                                                                                                                                                                                                                         |                                                                                                                                                                                                                                      |

### 사례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평가대상 조문

- 제80조(시험위원회)**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시험위원회를 둔다.
- ② 시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2명 이내, 민간위원 6명 이내를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시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택관리사보 시험과 관련이 있는 공단의 부서장으로 한다.
- ③ 시험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당연직위원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 있는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장 및 공단 국장·실장급으로 한다.
- ④ ~ ⑧ (생략)

#### 현황

##### ● 개정이유

-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17.8.9.개정, '18.2.10.시행)됨에 따라,
-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시험위원회 이관에 따른 위원회 위원 자격 등 구성·운영 기준을 마련

- ◆ 법 제68조에서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기준 >

| 구 분                     |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           |                                               |
|-------------------------|------------------------------------------------------------------------------------------------------------------------------------------------|-----------|-----------------------------------------------|
| 심의·의결사항<br>(법 제68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시험 과목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li> <li>• 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자격시험과 관련한 중요 사항</li> </ul> |           |                                               |
| 구성·자격요건 등<br>(시행령 제80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원 : 총 9명 이내 (간사 1명 별도)</li> </ul>                                                                    |           |                                               |
|                         | 구분                                                                                                                                             | 정원        | 자격요건                                          |
|                         | 위원장                                                                                                                                            | 1명        | • 없음 (공단 이사장이 위촉)                             |
|                         | 위원                                                                                                                                             | 당연직 2명 이내 | • 시험관련 국토부 담당부서장<br>• 시험관련 공단 국·실장급           |
|                         | 민간                                                                                                                                             | 6명 이내     | •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br>(공단 이사장이 임명·위촉) |

\* 간사 : 주택관리사보 시험과 관련이 있는 공단의 부서장 1명

- 임기 : 3년
- 운영 :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문제점

- ◆ 시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고,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위원 선정 및 위원회 운영 과정에 사적 이해관계나 과도한 재량이 개입될 가능성
  - 시험과목 조정, 선발인원 결정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의 중요도를 고려 시, 참여위원의 전문성과 위원 선정과정의 투명성이 크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 위원회 심의·의결과정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원장’에 대해 별도의 자격요건 규정 없이 단순히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하도록만 규정하여, 위촉과정에 사적 이해관계나 과도한 재량이 개입될 소지가 있음
  - 또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된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의 경우 공단 이사장의 재량과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다 객관화·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민법, 회계, 주택관련 법규 등 주택관리사보 시험 과목을 고려 시, ‘학식’과 ‘경험’ 보유 정도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기준 명시 필요 (※ 유사 국가자격시험 관련 입법례 고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위원장 위촉 자격 명확화
  - 주택관리사보 등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공단 내 담당 상임이사 등으로 특정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되도록 규정
- ◆ 민간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임명·위촉권자의 사적인 이해 개입을 방지하고 위원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 ‘풍부한 학식과 경험’ 보유 여부 및 전문성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시험 관련분야 경력, 학위 소지 등 최소한의 객관적 자격기준 명시

[법령안 예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수정, 변경 등 새로운 방향 제시 가능

| 개 정 안                                                                                                                                                                                                                                                                                                                                                                                                                                                                       | 개선 의견(예시)                                                                                                                                                                                                                                                                                                                                                                                                                                                                                                                                  |
|-----------------------------------------------------------------------------------------------------------------------------------------------------------------------------------------------------------------------------------------------------------------------------------------------------------------------------------------------------------------------------------------------------------------------------------------------------------------------------|--------------------------------------------------------------------------------------------------------------------------------------------------------------------------------------------------------------------------------------------------------------------------------------------------------------------------------------------------------------------------------------------------------------------------------------------------------------------------------------------------------------------------------------------|
| <p><b>제80조(시험위원회)</b>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시험위원회를 둔다.</p> <p>② 시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2명 이내, 민간위원 6명 이내를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p> <p>2. 시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p> <p>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택관리사보 시험과 관련이 있는 공단의 부서장으로 한다.</p> <p>③ 시험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민간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 <p><b>제80조(시험위원회)</b>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시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개정안과 같음)</p> <p>2. 시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단의 능력평가이사로 한다.</p> <p>    〈또는〉</p> <p>2. 시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p>3. (개정안과 같음)</p> <p>③ 시험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민간위원은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시험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p> <p>    나. 해당 시험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p> <p>    다. 해당 시험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시험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

| 개 정 안                                                                    | 개선의견(예시)                                                                                                                                                         |
|--------------------------------------------------------------------------|------------------------------------------------------------------------------------------------------------------------------------------------------------------|
| 2. 당연직위원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 있는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장 및 공단 국장·실장급으로 한다.<br>④ ~ ⑧ (생략) | 라. 해당 시험분야의 학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시험과 관련된 분야에서 7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br>마. 그 밖에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람<br>2. (개정안과 같음)<br><br>④ ~ ⑧ (개정안과 같음) |

[참고 입법례]

● 공인중개사법

〈법〉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제1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령〉

**제1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8. 그 밖에 부동산·금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법〉

**제40조(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감정평가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관한 사항
  3.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제39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37조(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같은 항 제1호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명
  2. 변호사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4. 협회의 장이 소속 상임임원 중에서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5. 한국감정원장이 소속 상임이사 중에서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6.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난 감정평가사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 ④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13(시험 실시기관)** ① 법 제5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지도사시험의 실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공단으로 하여금 시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위원 3명 이내 및 민간위원 5명 이내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공단 능력평가이사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도사시험과 관련 있는 공단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당연직위원은 지도사시험과 관련 있는 고용노동부 담당부서장 및 공단 국장·실장급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시험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2. 해당 시험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또는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해당 시험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시험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당 시험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시험과 관련된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실장급 직위 이상에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③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시험분야와 관련 있는 협회,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 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개요

- ◆ 행정권한·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대행하는 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가 있는지 평가
  - ※ '위탁·대행' 외 '행정업무의 부여를 위한 지정'의 경우도 포함하여 평가
- ◆ 수탁·대행기관의 선정절차·운영방식이 투명한지, 관리·감독 수단이 합리적인지, 책임성확보를 위한 [통제 수단이 있는지 등 평가

### 평가방법

- ◆ 위탁·대행의 법적근거, 요건 등 검토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근거, 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의 요건 및 사무를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하게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 위탁사무의 내용이 위탁의 대상으로 적정한지 검토
  - 수탁기관이 재위탁할 경우 원 위탁기관의 승인절차나 재위탁 사실 공개 등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 위탁·대행의 절차적 투명성 등 검토
  - 위탁·대행의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기관의 선정 방식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아 특정업체의 장기간 독점 위험성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대상기관, 선정기준 등을 규정을 공개하고 있는지 검토

- ◆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 검토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수탁·대행 기관에 대한 평가규정 등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후 업무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수탁·대행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행정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 수탁·대행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검토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의 제재수단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업무의 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지 검토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 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사례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평가대상 조문

#### 제10조(의료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 ①~④ 생략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비 심사 결과를 통보받거나 의료비 지급을 청구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의료비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현황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17조)
- ◆ 보건복지부는 현재 장애인 의료비 지급에 대하여 '17.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협약을 맺고 공단에 의료비 예산 관리 및 지급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음('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

### 문제점

- ◆ 위탁 기관 선정에 대한 구체적 절차규정 없이 업무가 위탁·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필요
- ◆ 법 도입 이후 공단이 의료비 지급 업무를 수행할 것임이 분명하나 이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미흡
  - － 위탁 후 업무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의 위탁기관 및 위탁 업무에 대한 통제수단이 결여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는 공단이 예산관리 및 지급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을 명시
- ◆ 공단의 위탁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규정 마련

#### ● 「법령 입안·심사 기준」(법제처, '12.12.31)

수탁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지를 법률의 입안 단계에서 미리 검토하여 수탁기관이 공단 등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법률에서 명시하도록 한다. 그러나 수탁기관을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의 법적근거를 명시하면서 수탁자가 갖추어야 할 인적·물적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한다.(p.438)

### 【예시】

| 제정령안                                                                                                                                                                            | 개선의견(예시)                                                                                                                                                                                                                                                           |
|---------------------------------------------------------------------------------------------------------------------------------------------------------------------------------|--------------------------------------------------------------------------------------------------------------------------------------------------------------------------------------------------------------------------------------------------------------------|
| <b>제10조(의료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 ① ~ ④</b><br><생략><br>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비 심사 결과를 통보받거나 의료비 지급을 청구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의료비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u>다만, 지급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br>⑥ <신 설> | <b>제10조(의료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 ① ~ ④</b><br><생략><br>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비 심사 결과를 통보받거나 의료비 지급을 청구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의료비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u>다만 의료비 예산관리 및 지급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u><br>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다음 회계연도 0월 00일까지 예산집행 결과 및 정산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유사 입법례】

##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7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② 한국은행총재는 매월의 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총재는 매 회계연도의 관리기금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기금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그 밖에 결산보고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④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한국은행의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3.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 현황, 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명세 등을 포함한 월별 세부 기금 운용실적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개요·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수입 및 지출 계산서
5. 그 밖에 결산보고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④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한다.

## 사례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평가대상 조문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술진흥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조사 및 연구·기획
2.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평가·관리
3. 제29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기술료의 징수 등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술진흥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탁)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환수금의 징수
4.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정산금의 회수

## 현황

## ● 개정이유

연구수행 중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제재 등과 관련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 개정('17.3.)되어, 법률의 위임 사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임.

-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등 5개 유형 중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 가능(시행령 제5조)

※ 시행령 제19조 각 호의 위탁업무를 중소기업기술진흥원에서 대부분 수행 중임에 따라 금번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 포함하여 개정

- ◆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기술혁신사업의 평가·관리, 기술료의 징수, 사업의 참여제한 등 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 구분             | 근거      | 지정 및 취소절차             | 관리·감독                    | 제재수단               |
|----------------|---------|-----------------------|--------------------------|--------------------|
|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지정 | 「법제7조」  | 지정대상만 있고<br>취소관련절차 없음 | 〈시행령제5조〉<br>보고의무         | 〈법제30조〉<br>공무원의제조항 |
| 위탁업무           | 「법제29조」 | 위탁선정방식 및<br>절차 규정 없음  | 〈행정권한의 위임 및<br>위탁에 관한규정〉 | 〈법제30조〉<br>공무원의제조항 |

## 문제점

- ◆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지정과 관련하여 결격 사유,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근거 부재
  - 지정대상 기관이 업무 수행 능력이 없거나, 업무 수행 관련 부패사례 등이 있더라도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상존
  -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더라도 이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부패 발생 가능

## (참고) 관련보도 ('17.7.04, 연합뉴스)

-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직원 이모(32)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컨설팅업자에게 직원에 게만 접근 권한이 있는 관리자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컨설팅업자는 이씨에게 건네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연구·개발 지원사업 신청업체 현황과 평가결과 등을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 위탁사무 절차의 투명성 확보장치 미흡

– 복수의 기술진흥전문기관의 단체 중 중소기업청장의 위탁선정방식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아 특정업체의 장기간 독점 가능성 내재

## ※ 민간위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는 수탁기관 선정기준, 공개모집, 계약체결, 지휘감독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제10조~제16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위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부적인 선정 절차 등에 대해서 개별법령에 규정 필요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lt;금번 시행령 개정사항&gt;

- ① 위탁기관의 선정 방식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고시토록 근거규정 마련

## &lt;추후 법 개정사항&gt;

- ② 전문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관련 법적근거 마련

## 개선결과 (시행령)

###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약칭 :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701호, 2018.3.13., 일부개정]

#### 제19조(권한의 위탁) ①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향상사업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가. 해외규격 획득 상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 나. 최근 2년 이내에 5건 이상의 해외규격 획득 지원실적이 있을 것

2.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외규격의 확보·보급 및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나. 제5조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 다.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 라.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품질향상사업: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법령안 예시] (법개정 사항)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수정, 변경 등 새로운 방향 제시 가능

| 개정안                                                                                      | 개선의견(예시)                                                                                                                                                                                                                                                                       |
|------------------------------------------------------------------------------------------|--------------------------------------------------------------------------------------------------------------------------------------------------------------------------------------------------------------------------------------------------------------------------------|
| <b>&lt;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gt;</b><br><b>제7조(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b><br>① ~ ④ (생략)<br><br><신설> | <b>제7조(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b><br>① ~ ④ (현행과 같음)<br><br><b>제7조2(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취소)</b><br>① 중소기업청장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0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br>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br>2.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br>3. .... |

## [참고 입법례]

### ● 지정취소관련사항

#### ▶ 먹는물관리법

####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①~⑤ (생략)

⑥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의 임원이나 대표자 중에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임원이나 대표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만 해당한다)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
4.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항에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7. 제7항에 따른 기술 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8. 제10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국가재정법

##### 제8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② (생략)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행하는 업무가 그 지정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례 3 도선법 시행령

#### 평가대상 조문

##### 제19조(권한의 위임)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선사 교육 및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및 단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도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법 제37조(권한의 위임) ②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 2.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

#### 현황

- ◆ 법 제37조제2항에서는 도선사 교육 및 보수(補修)교육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와 관련된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 규정
  - － 시행령 개정안 제19조제2항에서는 상기 도선사 교육업무에 대해 지정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도선 관련 단체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문제점

- ◆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제재규정 미비로 위탁업무의 책임성 확보 미흡
  - － 지정교육기관의 위탁업무 수행 중 발생한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적절한 제재·감독규정 미비로 위탁업무의 책임성 확보 곤란
  - － 특히, 지정교육기관 임직원이 뇌물 등을 수수하고 허위로 교육이수증을 발급하는 등 비위행위 발생 시 이에 대한 처벌 필요

관련 보도 사례

● **돈만 주면 ‘교육 이수증’ 발급...중장비학원장 구속** <연합뉴스, '16. 5. 11.>

이론과 실습교육 없이 돈을 받고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준 학원장 안 모씨와 이를 부정 취득한 농협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 안 씨는 3년간 교육생 624명으로부터 1인당 20만원에서 40만원을 받고 허위로 교육이수증을 발급해 1억 6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그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 이수증만 지자체에 제출하면 소형건설기기계 면허증을 발급해준다는 점을 악용했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책임성 확보 수단 마련

- 지정교육기관의 위탁업무 수행 중 발생한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지정 취소 규정 마련 (시행령 개정사항)
- 지정교육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향후 법률개정 사항)

[법률안 예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수정, 변경 등 새로운 방향 제시 가능

| 현 행   | 개선의견(예시)                                                                                                         |
|-------|------------------------------------------------------------------------------------------------------------------|
| <신 설> | <b>제△△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b> 제37조제 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시행령안 예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수정, 변경 등 새로운 방향 제시 가능

| 개정안                                                                                                                                                                                                                                                                                             | 개선의견(예시)                                                                                                                                                                                                                                            |
|-------------------------------------------------------------------------------------------------------------------------------------------------------------------------------------------------------------------------------------------------------------------------------------------------|-----------------------------------------------------------------------------------------------------------------------------------------------------------------------------------------------------------------------------------------------------|
| <p><b>제19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b></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선사 교육 및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및 단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p> <p>1.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도선 관련 법인 또는 단체</p> <p>2.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 해양수산연수원</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 <p><b>제19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b></p> <p>② (개정안과 동일)</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p> <p>2.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p> <p>3. 〇〇〇한 경우</p> |

## [참고 입법례]

## ① 지정취소 관련

## ● 공인노무사법

## 제5조의2(공인노무사의 교육) ① ~ ② (생략)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 및 단체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0조(교육훈련 지원) ① (생략)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정부는 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⑤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관련

##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 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3 재정누수 가능성

## 개요

- ◆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등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중복 지원되고 있는지, 재정누수 가능성은 없는지 등 평가
- ◆ 재정지원 대상 선정·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통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패유발요인을 평가

## 평가방법

- ◆ 재정지원의 관계규정 및 법적근거, 요건, 절차 등 검토
  - 평가 대상 조문에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일반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의 관련규정과 부합하는지 검토
  - 재정지원 근거, 목적, 요건,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다른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는지, 다른 재정지원과 비교하여 지원수준이 적절한지 검토
- ◆ 재정지원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검토
  - 재정지원 결정주체, 결정방법, 제출서류, 신청자의 범위, 신청절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재정지원 대상 선정기준이나 그 절차 등이 공개되어 재정지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는지 검토
- ◆ 재정지원의 사후관리 및 책임성 확보 수단 검토
  - 보고의무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 확인 수단이 있는지 검토
  - 재정지원 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절차 등 재정지원사업의 목적 달성 확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정지원 신청 등이 위법한 경우, 지원 취소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환수규정 등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사례 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 평가대상 조문

**제35조(부담금의 용도)** 법 제2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분리배출·수거·재활용 및 처리 사업의 지원
2. 순환자원 및 재활용제품의 생산·유통·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3. 폐기물처분부담금(가산금을 포함한다) 징수에 따른 비용 교부
4.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현황

- ◆ 법에서는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사용 용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용도를 시행령으로 위임

#### ●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1.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평가대상조문에서는 지자체 폐기물 처리 지원, 재활용제품 유통 등 촉진, 부담금 징수업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등 법률에서 위임한 부담금 사용 용도를 규정

### 문제점

- ◆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불명확한 부담금 용도를 추가로 규정
  - 법률에서 ‘그 밖의 자원순환 촉진 사업’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으나, 시행령에서 ‘그 밖의 자원순환 촉진사업’을 재차 규정

#### (참고) 「법령 입안·심사 기준」(법제처 '12.12.31)

- 「헌법」 제75조에서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
- 이는 법률에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법률 그 자체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 (p.34) (법령 입안·심사 기준)

- 특히, 환경부장관 재량으로 ‘자원순환 촉진사업’을 정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용도에 부담금이 낭비될 우려

\* 용어(“자원순환 촉진”) 자체의 모호성으로 인해, 구체적 사업내용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 또는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예산이 무분별하게 집행될 소지가 큼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불명확한 부담금 용도 규정 삭제
  - 향후 필요한 사업내용 발굴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용도를 지속 추가

### 개선결과

-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에서 개정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52호, 2017.12.29., 제정]

**제26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법 제2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수거·재활용 지원 사업
2. 순환자원을 생산·유통·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3. 재활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 〈4. 삭제〉

## 사례 2 해양수산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규칙

### 평가대상 조문

**제13조(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 방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및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전에 공동활용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구축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서비스가 공동활용체계에서 이미 구축·제공되었는지 여부
2. 공동활용체계에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및 서비스의 활용 가능 여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 방지를 위하여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예측가능성, 재정누수가능성

### 현황

#### ● 제정 이유

– 해양수산정보를 기관별·업무별로 개별 시스템을 구축·관리함에 따라 정보의 종합적 분석 지원 미흡, 품질 저하,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 한계

※ 기관별 70여개 시스템을 통해 정보 관리, 시스템 간 연계채널 63개 개별 구축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및 시행령 제23조에 근거, 해양수산정보의 체계적 통합 및 공동 활용(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규정 마련

-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를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생산·관리하는 기관\* (이하 “관리기관”)의 중복 서비스 개발·제공 방지를 위하여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 지방해양수산청, 국립해양조사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 문제점

- ◆ 실태조사의 내용·절차 규정 부재로 행정의 예측가능성 저해
  - 실태조사의 범위, 절차(사전 통지 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행정조사가 적정 절차 없이 행정청 임의로 행해지는 등 행정의 예측가능성 저해

### 관련 보도 사례

- “기업들, 규제보다 행정조사가 더 부담” <한겨레, '15. 1. 19.>

정부가 기업에 부과하는 각종 조세, 준조세, 규제, 행정적 조사 가운데 기업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것은 ‘행정적 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기업 56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19일 내놓은 ‘2014년 기업부담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총 12개 세부 부담항목 가운데 세무·노동·환경·공정거래 조사 등과 관련된 ‘행정 조사’의 부담지수(보통수준=100)가 136으로 가장 높았다...

- ◆ 실태조사에 따른 사후조치 부재로 인한 재정누수 우려

–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한 개선·시정 권고 등의 사후조치가 부재하여 지속적 중복투자로 인한 재정누수 우려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실태조사의 범위, 절차 등 관련 내용 구체화
  - ※ 필요시, 세부 내용을 하위규정(훈령,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
- ◆ 실태조사에 따른 사후조치(시정권고 등)의 근거 및 절차 마련
  - ※ 필요시, 세부 내용을 하위규정(훈령,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

[시행규칙안 예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수정, 변경 등 새로운 방향 제시 가능

| 제정안                                                                                                                                                                                                                                                                                                                                                                      | 개선의견(예시)                                                                                                                                                                                                                                                                                                                                                                                                                                                                                                                                                                                                            |
|--------------------------------------------------------------------------------------------------------------------------------------------------------------------------------------------------------------------------------------------------------------------------------------------------------------------------------------------------------------------------|---------------------------------------------------------------------------------------------------------------------------------------------------------------------------------------------------------------------------------------------------------------------------------------------------------------------------------------------------------------------------------------------------------------------------------------------------------------------------------------------------------------------------------------------------------------------------------------------------------------------|
| <p><b>제13조(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 방지)</b> ① 관리기관의 장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및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전에 공동활용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p> <p>1. 구축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서비스가 공동활용체계에서 이미 구축·제공되었는지 여부</p> <p>2. 공동활용체계에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및 서비스의 활용 가능 여부</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 방지를 위하여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 <p><b>제13조(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 방지)</b> ① (개정안과 동일)</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 방지를 위하여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 경우에는 수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의 일시, 취지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p> <p>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공동활용체계와의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 등과 관련하여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날 부터 ○○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에 관한 이행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사항 외에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

[참고 입법례]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전략위원회가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에 관한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중복·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이하 “공공기관 서비스”라 한다) 개발·제공 현황

2. 공공기관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민간 서비스의 현황

3~8 (생략)

②~③ (생략)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가맹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맹사업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2 ~ 7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가맹사업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 ⑥ (생략)

### 사례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평가대상 조문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2조(출연금의 환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학교·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8조(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 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 타당성조사사업에 출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③ (생략).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정산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협약 내용과 다르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⑤ (생략)

※ 법령 개정사항은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의 해외규격 획득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선정된 수행기관의 출연 대상기관 명확화이나, 관련된 조항에 부패유발 요인이 있어 해당 조항과 연계하여 부패영향평가 실시함.

## 현황

## ● 개정이유

- 해외규격획득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법제17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 시행령에는 권한의 위탁에 따른 위탁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출연금 교부 근거가 불명확하여 금번 시행령에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을 위해 선정된 수행기관을(법제17조4항 및 시행령제14조) 출연대상기관으로 규정함

-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란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전년도 수출액 5천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
  - (사업방식) 중기부는 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위탁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감독
  - (지원내용) 일반해외규격 인증 시 인증 1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컨설팅 비용은 제품별로 상이)  
고부가치해외규격 인증 시 인증 1건당 5천만 원 까지 지원 (컨설팅 비용은 최대 440만 원까지 지원)

※ 협약체결일로부터 인증 획득 시 까지(최장 3년), 106.5억원, 1,000개사 내외 지원

&lt;연도별 예산 및 지원건수 현황&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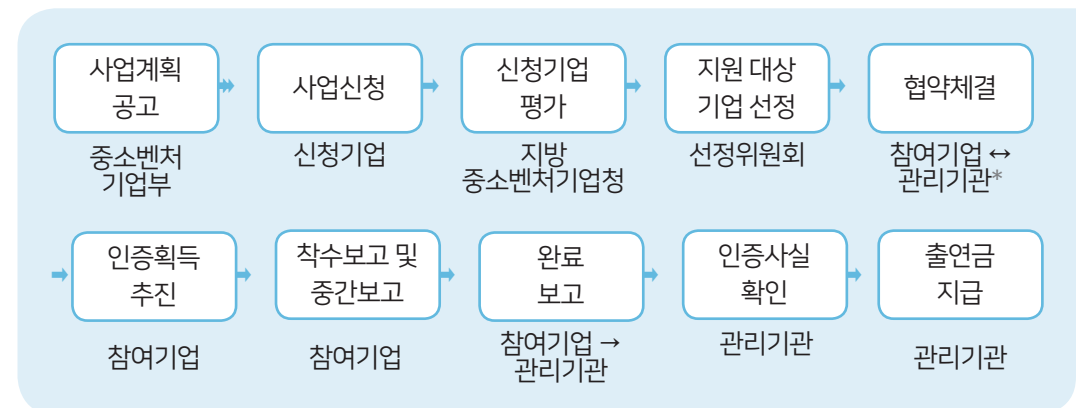
단위: 억원/개사/건

| 구 분 | '98~'10 | '11   | '12   | '13   | '14   | '15   | '16   | 합 계     |
|-----|---------|-------|-------|-------|-------|-------|-------|---------|
| 예 산 | 1,713   | 100   | 100   | 206.9 | 132.6 | 164.6 | 176.5 | 2,593.6 |
| 기 업 | 37,200  | 1,810 | 1,830 | 2,292 | 2,153 | 1,657 | 1,834 | 48,776  |
| 인 증 | 62,519  | 3,098 | 2,959 | 3,706 | 3,416 | 3,001 | 2,950 | 81,649  |

- ◆ 시행령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행령 제14조①항)
  - 추진방법 ·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시행령 제14조③항)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7-12호)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운영지침〉(내부규정, 2017.8.31.)

&lt;일반공모 추진절차&gt;



\* 관리기관 : 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집행·관리, 사업의 협약체결, 중간 및 최종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문제점

- ◆ 출연금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규정 부재로 재정누수 우려
  - 출연은 출연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지원되며, 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정산과 반환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보조금과 차이가 있으나,
    -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운영요령」제4조(출연금 관리)에는 출연금 사후 정산내용만 포함, 환수관련 내용 및 절차사항 없음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법 제32조(출연금의 환수) 및 시행령 제8조(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 관리 수단 미비로 인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환수 여부와 그 액수 등이 결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을 환수대상 조항에 포함하여 재정 지원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필요



## [참고 입법례]

##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3(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① ~ ③ (생략)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에 상응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내용, 등록, 등록 취소 및 환수의 절차, 등록 제한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사업비의 관리) ① 대학등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비 관리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산학협력단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지원 또는 연구관리 부서 중에서 사업비 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연구자 및 대학등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실태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의 사용 실적 보고와 정산, 사업비의 환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실태 조사 등 그 밖에 사업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3. 행정절차

## 1 접근의 용이성

## 개요

- ◆ 행정절차상 이해관계자와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지 평가
- ◆ 의견진술 제도 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행정절차에 참여·접근이 가능한지,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지 판단

## 평가방법

- ◆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참여제도의 실효성 검토
  - 참여제도에 이해당사자, 일반국민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참여 기회는 충분한지, 참여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
- ◆ 참여제도의 필요성 검토
  - 별도의 참여제도가 없거나 당해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참여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참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 있는지 검토

## 사례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평가대상 조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4569호, '17.2.8)

**제11조(빈집의 철거)** ① 시장·군수등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2.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경우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그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철거할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비를 공탁하여야 한다.

1.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비 지급이 금지된 경우

⑥ 시장·군수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고,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정안

**제11조(빈집의 철거보상비)** ①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빈집의 철거를 명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 준수부담의 합리성, 접근의 용이성

### 현황

#### ● 시행령 제정이유

- 「도시정비법」상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이관하고, 빈집의 체계적 정비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법률 제14569호, '17.2.8 제정, '18.2.9 시행]
-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빈집 실태조사·철거 및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가능 구역 및 대상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주요내용)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의 정의, 빈집의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 방법 등,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 계획 수립절차 및 방법, 각종 특례, 관련지침 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

- ◆ 시장·군수 등은 방치되거나 버려진 주택 등 ‘빈집’에 대한 개·증축 또는 철거 후 신축 등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 ● “빈집”의 정의 (법 제2조제1항제1호, 시행령안 제2조)

- 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만, 미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별장 등은 제외

※ 전국 빈집 현황 : '10년 81.9만호 → '15년 106.9만호 (25만호↑)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철거 명령이 가능하고, 소유자가 60일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철거\* 가능

\* 이 경우, 철거예정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철거통지서를 소유자에게 통보

→ (유사입법례) 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제7조(철거명령등), 건축법시행령 제116조의2(빈집철거통지)

- 직권철거에 따른 건물 보상비는 시장·군수 등이 선정한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적용(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권한은 없음)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제21조) 또는 감정평가법인(제29조)

## 문제점

- ◆ 철거보상비 감정평가 절차에 빈집 소유자의 의사반영체계 미비
  - 감정평가 과정에 소유자의 의사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 절차가 없고, 시장·군수 등이 선정한 평가업자로만 감정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 유리한 평가액 산정을 위해 행정청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등 부패행위가 발생할 우려

## (참고) 관련 입법동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상진 의원 등 11명, '17.2.22)

## 가. 제안이유

-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평가액을 기초 지가체장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하도록 규정
- 그러나, 기초지가체장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만이 해당 정비사업의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이 불가능한 상황

## 나. 개정안 내용

- 정비사업에서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정하여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하도록 함

## &lt;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방식&gt;

| 구분              | 당 초                            | 개 정 안                 |
|-----------------|--------------------------------|-----------------------|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 ▶ 시장·군수 선정 2인 이상               | ▶ 시장·군수 선정 1인 이상<br>+ |
| 재건축사업           | ▶ 시장·군수 선정 1인 이상 + 조합 선정 1인 이상 | 조합 선정 1인 이상           |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철거대상 건축물 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근거 마련
    - 시장·군수등이 선정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빈집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1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비 산정
- \* 단,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거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직권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로만 평가 실시

## 검토결과

-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현행법령 개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045호, 2018. 7. 16., 타법개정]

**제10조(빈집의 철거보상비)** ①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말한다.

② 빈집 소유자는 제9조제4항에 따라 직권 철거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등은 빈집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빈집 소유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비의 산정은 시장·군수등이 제9조제4항에 따라 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 결정을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 사례 2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시행령

### 평가대상 조문

#### 제11조의2(장애인기업 확인 등) ①~④ (생략)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한 기업이 장애인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생략)

###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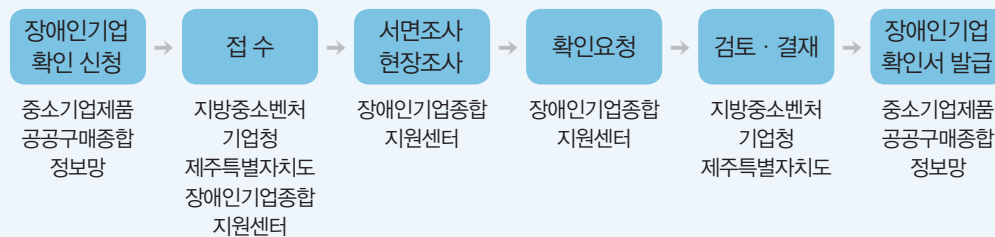
#### ● 개정이유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8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 등), 제18조의3(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제18조의4(보고와 검사) 등 법에서 위임한 장애인기업확인에 관련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서는 장애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 활동 기회가 우선되도록 보장

※ 장애인의 창업지원, 자금지원우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경영능력 향상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 세제 지원 등

### (참고) 장애인기업 확인절차



### 문제점

- ◆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나,
  - 장애인기업 확인에 필요한 절차만 규정할 뿐, 장애인기업이 아닌 것으로 통지할 경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가 부재하여 공정성확보 저해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추후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사항】

- ◆ 확인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조항 마련

#### 【시행령안 예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수정, 변경 등 새로운 방향 제시 가능

| 개정안  | 개선의견(예시)                                                                                                                                                                                                                                                                                                      |
|------|---------------------------------------------------------------------------------------------------------------------------------------------------------------------------------------------------------------------------------------------------------------------------------------------------------------|
| 〈신설〉 | <p><b>제00조(장애인기업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b><br/>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장애인기업확인 여부의 확인 통보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 또는 전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이의신청의 절차,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p> |

## [참고 입법례]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제9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통보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 또는 전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의 절차,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 인삼산업법

**제17조의6(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인삼 종자·종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한 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재검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사례 3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 평가대상 조문 1

**제27조 (항만인력 수급관리협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수급관리협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하 “항만운송사업자 단체”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 3명

2.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각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조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하 “항만운송근로자 단체”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 3명

3. 항만인력 수급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각 항만의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1명

③ 수급관리협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 법 제27조의7(항만인력 수급관리협회)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구성한 단체,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구성한 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근로자의 수 산정, 근로자의 채용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등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인력 수급관리협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 수급관리협회의 구성·운영 및 협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접근의 용이성, 이해충돌가능성

현황

● 개정 이유

- 독점적 노무공급권을 가진 항운노조의 인사 비리 문제<sup>\*</sup> 해소를 위해, 항만별 노사정 협의를 통해 항만 인력의 수급·관리가 가능하도록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신설(법 제27조의7)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을 규정

<sup>\*</sup> 부산항운노조 취업장사 여전...33명에 7억9000만 원 챙겨(국제신문, '16.8.2.), 항운노조 비리 확산...하역 노임 착복 24억 횡령(목포투데이, '16.11.25.)

- ◆ 노사정 협의를 통해 항만운송사업 종사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항만별로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27조의7)
  - 개정령안은 법률 위임에 따라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

| 구 분 | 내 용                                                                                                                            |
|-----|--------------------------------------------------------------------------------------------------------------------------------|
| 구 성 | • 위원장 1명(위원 중 호선)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br>- 항만운송사업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br>- 항만운송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br>-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자 1명(당연직) |
| 기 능 | • 항만 인력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br>- 항만별 적정 근로자수 산정, 근로자 채용기준,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                                                  |
| 운 영 | • (소 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요청<br>• (의 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문제점

- ◆ 모호한 위원 추천 기준에 따른 자의적인 협의회 구성 우려
  - 개정안은 항만별 항만운송사업자 및 관련 노동조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협의회를 구성토록 규정
  - 노사정 협의를 통한 독점적 노무공급권을 가진 항운노조\*의 각종 인사 비리 문제 해소라는 협의회 설립 취지 및 기능을 고려하면 공정한 협의회 위원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 \* 「직업안정법」에 근거,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은 항운노조를 통해서만 노무 제공 가능
  - 사업자 및 노동조합의 일부만을 회원으로 하는 특정 단체가 추천하는 자가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 협의회 구성 우려(특히, 단체수가 여러 개인 경우 대표성의 문제 발생)

- ◆ 비위사실이 있는 위원 등에 대한 해촉 규정 부재로 협의회 구성의 투명성 및 심의·의결의 공정성 저해 우려
  - ※ 협의회 의결에 대한 노·사간 공감대 확보 및 향후 의결된 사항의 이행 등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위원 자격유지 요건 필요

관련 보도자료

- 원전 찬성 교수가 공론화위 참여...논란 불거져 해촉 ('17.9.25, 국제신문)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찬반 양측의 ‘보이콧’ 으름장에 연일 파행.... 25일에는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할 자료 검증을 맡은 공론화위 전문가 위원 중 한 명이 건설 찬성 입장을 표명한 부산대 A교수로 드러나 공정성·중립성 훼손 논란 제기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협의회 위원 구성 시,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근로자 단체들 간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신설
- ◆ 비위사실 있는 협의회 위원 등에 대한 해촉 규정 신설
  - ※ 다만 법률로 규정하기 곤란한 경우, 개정안 제27조의3제3항제1호<sup>1)</sup>에 근거 협의회 운영규정을 통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 검토

###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08호, 2017.12.26., 일부개정]

**제26조의2(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③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2.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그 자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에서 같다)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3. 제1항의 사람 1명

### 평가대상 조문 2

**제28조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① (생략)

② 분쟁협의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1. 항만운송사업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2. 항만운송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3. 항만 운송 관련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각 항만의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1명
- ③ 분쟁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시행령 제27조제2항제1호)

\*\*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각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조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시행령 제27조제2항제2호)

▶ **법 제27조의8(항만운송 분쟁협의회 등)** ①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항만운송근로자 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해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항만운송사업자 단체와 항만운송근로자 단체는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통하여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분쟁기간 동안 항만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협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접근의 용이성, 이해충돌가능성

1) 제27조의3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관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급관리협의회 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 현황

## ● 개정 이유

- 항만운송 관련 노사 간 분쟁 해소를 위해 항만별 노사정 협의체인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신설 (법 제27조의8)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
  - ⇒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허용(‘11.7), 하역 요금 출혈 경쟁 등에 따른 노사 간 갈등 예방 및 신속한 분쟁 해소
  - \* “울산항운노조, 온산항운노조 업무방해 말라”...울산지법, “업무방해 땀 하루 300만원 지급” 결정(‘17.6.20, 경상일보)

- ◆ 노사정 협의를 통해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이하 “분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법 제27조의8)
  - 개정령안은 법률 위임에 따라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기능,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

| 구 분 | 내 용                                                                                                                                                                                                                                                        |
|-----|------------------------------------------------------------------------------------------------------------------------------------------------------------------------------------------------------------------------------------------------------------|
| 구 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1명(위원 중 호선)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운송사업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li> <li>- 항만운송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li> <li>-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자 1명(당연직)</li> </ul> </li> </ul> |
| 기 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해소 등에 필요한 사항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별 노사간 분쟁, 항만운송사업 노무공급권 분쟁 등의 해소</li> </ul> </li> </ul>                                                                     |
| 운 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요청</li> <li>• (의 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li> </ul>                                                                                                                          |

## 문제점

- ◆ 모호한 위원 추천기준에 따른 자의적 분쟁협의회 구성 우려
  - 개정안은 항만별 항만운송사업자 및 관련 노동조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분쟁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
  - 노사정 협의를 통한 항만운송 관련 분쟁 해소라는 분쟁협의회 설립 취지 및 기능을 고려하면 공정한 위원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 사업자 및 노동조합의 일부만을 회원으로 하는 특정 단체가 추천하는 자가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 분쟁협의회 구성 우려(특히, 단체수가 여러 개인 경우 대표성 문제 발생)

- ◆ 비위사실 있는 위원 등에 대한 해촉 규정 부재로 분쟁협의회 구성의 투명성 및 심의·의결의 공정성 저해 우려
  - ※ 공정한 노사 분쟁 해결 및 향후 의결된 사항의 이행 등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위원 자격유지 요건 필요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분쟁협의회 위원 구성 시,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근로자 단체들 간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신설
- ◆ 비위사실 있는 분쟁협의회 위원 등에 대한 해촉 규정 신설
  - ※ 다만 법률로 규정하기 곤란한 경우, 개정안 제28조의3제3항제1호 제28조의3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쟁협의회 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에 근거 분쟁협의회 운영규정을 통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 검토

##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08호, 2017.12.26., 일부개정]

제26조의5(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③ 분쟁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2.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3. 제1항의 사람 1명

## 2 공개성

### 개요

- ◆ 평가대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가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지 판단
- ◆ 민원인 등의 정보공개 신청에 따른 소극적인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관련정보를 인터넷게시, 개별통지 등을 통해 수시로 알려주는 적극적 공개도 포함

### 평가방법

- ◆ 정보제공 관련규정 검토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련규정 검토
  -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제공시기·제공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 ◆ 정보제공 관련규정 실효성 검토
  - 이해관계자 또는 일반국민이 공개된 정보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검토
- ◆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공개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 있는지 검토

## 사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평가대상 조문

**제15조의5(안전관리전문기관의 평가 등)**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평가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 및 관리 능력 등 운영체계
2. 기술지도의 충실성, 사업장의 만족도 등 업무성과
- ②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④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공개성, 예측가능성

현황

●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 관련 민간재해예방기관(13개 분야)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우수기관 양성을 위해, 평가 근거가 없는 5개 분야에 대한 평가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을 정하기 위함

\* 민간재해예방기관 : 산재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고용노동부 지정·등록 13개 분야의 1,135개 기관(16년 기준)

\* 13개 분야 : 안전관리전문기관(107), 보건관리전문기관(115),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85),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30), 건설업기초교육기관(90), 직무교육기관(20), 안전인증기관(5), 안전검사기관(4), 지정검사기관(21), 석면조사기관(222), 지정측정기관(165), 특수건강진단기관(224), 안전보건진단기관(47)

– 주요내용 : 5개 분야 민간재해예방기관(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안전·보건 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방법,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법 제15조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 평가의 기준·방법,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시행규칙 제15조의5에서 관련 내용 규정

[참고]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제도 개요

- 추진배경 : 민간재해예방기관(13개 분야)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관리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우수기관을 양성하기 위함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하위 법령 포함)

| 평가분야         | 평가근거(법)   | 위임(시행규칙) |
|--------------|-----------|----------|
|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 제15조제5항   | 제15조의5   |
| ② 보건관리전문기관   | 제16조제3항   |          |
| ③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제30조의2제4항 | 제19조의2   |
| ④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 제32조의2제1항 | 제32조의7   |
| ⑤ 건설업기초교육기관  |           | 제35조     |
| ⑥ 직무교육기관     |           | 제37조의4   |
| ⑦ 안전인증기관     | 제34조의5제2항 | 제39조의3   |
| ⑧ 안전검사기관     | 제36조제7항   | -        |
| ⑨ 지정검사기관     | 제36조의2제6항 | -        |
| ⑩ 석면조사기관     | 제38조의2제6항 | 제80조의3   |
| ⑪ 지정측정기관     | 제42조제9항   | 제97조     |
| ⑫ 특수건강진단기관   | 제43조제10항  | 제106조    |
| ⑬ 안전보건진단기관   | 제49조제3항   | 제126조의2  |

※ 현재 위 평가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 위탁

● 평가내용

- (평가등급) 5등급 절대평가(1,000점 만점)
- (평가항목) 운영체계분야(400점), 업무성과분야(600점)
- (평가주기) 매년(단, 일부 분야는 2년에 1회)
-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안전보건 서비스 향상 유도, 안전관리공단의 각종 비용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우수기관 양성

## 문제점

## 모호하고 불충분한 평가규정에 따른 행정청의 자의적 평가 우려

- ◆ 불분명한 평가기준에 따른 행정의 예측가능성 저하
  - 평가기준이 ‘보유수준’, ‘충실성’, ‘만족도’ 등 포괄적·추상적인 용어로 규정되어 있어, 피평가기관의 평가기준에 대한 예측 곤란
  - 행정청의 자의적인 평가제도 운영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 저해 우려
    - ※ 현재 평가의 세부기준은 ‘안전보건공단’의 내부방침(「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종합계획」, '17.3.)으로 정하고 있음
- ◆ 이의신청 절차의 부재로 피평가기관의 권리보호에 미흡
  - 평가결과는 피평가기관의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 ※ 평가결과는 안전보건공단의 비용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반영, 우수기관 정부포상 실시, 서비스 수요자의 선택권 및 기관 이미지에 영향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누락으로, 피평가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에 저해
- ◆ 결과공개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평가 우려
  - 평가결과의 공개는 서비스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수단인 동시에, 평가대상자들 간 결과공유를 통해 평가 자체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 평가결과의 공개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공개여부가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우려가 있어 평가의 실효성 확보에 미흡

## 관련보도사례

- 시내면세점 평가 ‘조작’...관세청 점수 조작, 檢 수사 본격 (컨슈머치, '17.7.12.)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7월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획득 과정에서 관세청이 점수를 조작하면서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이 탈락했다... 관세청이 사업자를 선정 발표가 있기도 전에 한화갤러리아가 상한가를 기록한 것도 특혜 관련 의혹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으나 관세청 직원들이 관련 증목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구심은 더 강해졌다...

## 검토결과: 개선권고

## 평가결과 공개, 평가기준·절차 구체화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 제고

## &lt;이번 시행규칙 개정 시 반영 사항&gt;

- ◆ 세부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개하도록 규정 신설
-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규정 신설
- ◆ 평가 결과의 공개 의무화

※ 상기 ‘안전관리전문기관’ 외 4개 분야 평가 시,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근거조항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상기 개선의견 사항은 다른 4개 분야의 평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각각의 준용규정에 대한 개정 필요

## &lt;5개 평가분야별 개선권고 과제 현황&gt;

| 평가분야        | 대상조문         | 규정방식                                                | 권고건수 | 비고 |
|-------------|--------------|-----------------------------------------------------|------|----|
| 합계          | —            | —                                                   | 7건   |    |
|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 시행규칙 제15조의5  | 조문신설<br>– 평가기준 등 구체화<br>– 이의신청 절차 마련<br>– 결과 공개 의무화 | 3    |    |
| ② 보건관리전문기관  | 시행규칙 제19조의2  | 시행규칙 제15조의5 준용                                      | 1    |    |
| ③ 지정검사기관    | 시행규칙 제76조의3  | 시행규칙 제15조의5 준용                                      | 1    |    |
| ④ 석면조사기관    | 시행규칙 제80조의3  | 시행규칙 제15조의5 준용                                      | 1    |    |
| ⑤ 안전·보건진단기관 | 시행규칙 제126조의2 | 시행규칙 제15조의5 준용                                      | 1    |    |

【시행규칙안 예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수정, 변경 등 새로운 방향 제시 가능

| 개정안                                                                                                                                                        | 개선의견(예시)                                                                                                                                                                                                                                                                                                                                                                                    |
|------------------------------------------------------------------------------------------------------------------------------------------------------------|---------------------------------------------------------------------------------------------------------------------------------------------------------------------------------------------------------------------------------------------------------------------------------------------------------------------------------------------------------------------------------------------|
| <b>제15조의5(안전관리전문기관의 평가 등)</b><br>① ~ ④ (생략)<br>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b>제15조의5(안전관리전문기관의 평가 등)</b><br>① ~ ④ (개정안과 동일)<br>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 및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br>⑥ 공단은 제4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평가대상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기관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〇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br>⑦ 공단은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〇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br>⑧ 공단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한다. |
| <b>제19조의2(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등)</b><br>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 <b>제19조의2(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등)</b><br>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〇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
| <b>제76조의3(지정검사기관의 평가 등)</b><br>① (개정안과 동일)<br>② 제1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5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 <b>제76조의3(지정검사기관의 평가 등)</b><br>① (개정안과 동일)<br>② 제1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5 제〇항부터 제〇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

| 개정안                                                                                                                                                          | 개선의견(예시)                                                                                                                                                           |
|--------------------------------------------------------------------------------------------------------------------------------------------------------------|--------------------------------------------------------------------------------------------------------------------------------------------------------------------|
| <b>제80조의3(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b><br>① (개정안과 동일)<br>②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5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 <b>제80조의3(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b><br>①(개정안과 동일)<br>②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5조의5제〇항부터 제〇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
| <b>제126조의2(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b><br>① (생략)<br>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5조의5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 | <b>제126조의2(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b><br>① (개정안과 동일)<br>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5조의5 제〇항부터 제〇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 |

【참고 입법례】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법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실시된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신기술 인증의 대상·기준·심사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 또는 수산물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는 대상은 신기술 인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1.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 또는 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이 조에서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2.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工程技術)

②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2. 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일 것
  3.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면에서 개발 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인증 대상과 제2항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평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에 대하여 기술명, 기술보유자, 인증 예정 유효기간, 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을 포함한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관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고된 신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사·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사업의 추진절차 등)** ① (생략)

② 영 제17조제2호에 따라 신기술을 사용한 환경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공개 모집을 통하여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사업자로 하여금 그의 부담으로 해당 환경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시험운전 등을 통하여 신기술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환경시설에 사용된 신기술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따른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 절약의 기준,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사례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평가대상 조문

제10조의2(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3.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특혜발생 가능성, 공개성, 예측가능성

### 현황

#### ● 개정이유

- 목재문화체험장이 조성·운영되고 있음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 미흡, 일부 지자체의 담당공무원 등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 존재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관리위탁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목재이용법」의 개정(2017.3.21.공포, 9.22.시행)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 등 법률 위임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개정안은 수탁기관으로 목재문화진흥회,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자체장이 체험장 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을 인정한 법인·단체로 규정

### [참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 ● 목재문화체험장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과 공간으로서 목재 및 목재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목재제품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

####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 현황 (총 40개소, '16.12. 기준)

| 구분 |     | 인천 | 대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현황 | 운영중 | －  | －  | 1  | 3  | 2  | 3  | 2  | 4  | 1  | 2  | －  |
|    | 조성중 | 1  | 1  | 3  | 2  | 1  | －  | 1  | 2  | 4  | 6  | 1  |

\* 운영중인 체험장은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 중

#### ● 주요시설물

- 전시시설 : 목재·목제품 전시실, 영상실, 야외전시장, 산업체 홍보관
- 교육(체험)시설 : 자료실, 목재이용체험실, 공방, 야외공연장·교육장
- 기타 편의시설 : 휴게시설, 음수대, 야외탁자 등

#### ● 지원 규모

- 사업비(국비 80%, 지방비 20%)
- 신규조성(개소당 52억원), 기존시설 활용(150백만원)
- 회계명 :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제주계정)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문제점

- ◆ 체험장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의 전문성 판단 기준 미흡
  -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체험장 운영·관리 전문성’을 인정하는 법인·단체에 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요구되는 전문성을 인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구체적 기준이 없어 업무담당자 및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 저해

– 개소당 52억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각 지자체별 체험장이 운영·관리 능력 없는 수탁 업체 선정으로 부실 운영될 가능성

◆ 체험장 운영·관리 위탁기관 선정 시 특정 단체에 특혜발생 가능

– 업무담당부서에 의한 내부방침으로 수탁기관이 결정될 가능성 등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인해 특정 법인·단체에 특혜발생 가능성 존재

◆ 수탁업체에 대한 관련 정보 공개 미흡

– 체험장 운영·관리 업체 및 해당 업무에 대하여 일반국민 등 체험장 이용객 및 이해관계자의 알권리 및 접근성 제한

### 【참고】 관련 보도 사례

● **합천군 정양레포츠공원 민간위탁 잡음** (매일신문, '17. 6. 8.)

“기준이나 방침, 일관성도 없이 오락가락 하는 행정을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경남합천군이 ‘정양레포츠공원’을 민간위탁해 운영하기로 하고 관리운영자 선정에 나섰지만 공고와 취소공고, 재공고를 반복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군민들은 “레포츠공원 운영자는 전문성과 관리 운영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당초 전문성을 평가해서 수탁자를 결정하려 했던 것인데 돌연 임대료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바꾼 것은 무자격자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시켜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검토결과: 개선권고

####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사항】

- ◆ 체험장 운영·관리 위탁기관 선정을 위해 법인·단체의 ‘운영·관리 전문성’ 검토 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 구체화
- ◆ 체험장 운영·관리 전문성을 인정받은 기관에 대해 행정규칙 형식으로 고시
- ◆ 수탁업체 및 위탁업무 등 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책임성 확보

#### 【시행규칙안 개선 예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수정, 변경 등 새로운 방향 제시 가능

| 개정령(안)                                                                                                                                                                                                                                                                   | 개선의견(예시)                                                                                                                                                                                                                                                                                                                                           |
|--------------------------------------------------------------------------------------------------------------------------------------------------------------------------------------------------------------------------------------------------------------------------|----------------------------------------------------------------------------------------------------------------------------------------------------------------------------------------------------------------------------------------------------------------------------------------------------------------------------------------------------|
| <p><b>제10조의2(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b> 법 제1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p> <p>1. 법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p> <p>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p> <p>3.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p> <p>〈신 설〉</p> | <p><b>제10조의2(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b></p> <p>① .....</p> <p>.....</p> <p>.....</p> <p>.....</p> <p>1. ....</p> <p>2. ....</p> <p>3.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립목적·업무수행 능력·조직·인력 등을 고려하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단체</p> <p>② 산림청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단체에 그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p> |

## 【참고 입법례】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가맹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업무의 위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같은 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3호 및 제14호의 업무를 공단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다만, 법 제65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비영리법인일 것

나.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법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30조의2제1항, 제38조의2제2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7조 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3.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정·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교육·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사례 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평가대상 조문

**제7조(주치의 교육)** ① 주치의로 등록하고자 하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하는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의사의 정보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치의 교육업무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 센터, 관련 전문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 현황

◆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 규정하기 위하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정

◆ 중증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도입(법 제16조 제1항)

-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병원 또는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함
- 주치의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법 제16조 제2항)

## 문제점

◆ 주치의 교육과정에 관한 공개성 미흡

- 주치의 제도는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건강문제를 겪고 있으며,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더 절실한 장애인의 건강권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나
-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주치의 교육과정’이라는 규정만으로는 주치의 등록을 위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행정의 공개성 저하

검토결과: 개선권고

◆ 교육에 관한 세부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선

【예시】

※ 본 평가서 [예시]의 개선의견안은 해당 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수정, 변경 등 새로운 방향 제시 가능

| 개정령(안)                 | 개선 의견(예시)                                                                                       |
|------------------------|-------------------------------------------------------------------------------------------------|
| 제7조(주치의 교육) ① ~ ③ <생략> | 제7조(주치의 교육) ① ~ ③ <제정령안과 같은<br>④ 주치의 교육과정, 실시방법, 그 밖에 교육의<br>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br>정하여 고시한다. |

【참고 입법례】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노후준비서비스 교육과정)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 과정을 2년마다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 1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교육훈련 과정 (제6조제1항 관련)

1. 교육 과목 구성

| 과목         | 주요내용                                                                           | 교육시간(단위:시간) |           |      |    |    |
|------------|--------------------------------------------------------------------------------|-------------|-----------|------|----|----|
|            |                                                                                | 합계          | 이러닝<br>교육 | 소집교육 |    |    |
|            |                                                                                |             |           | 소계   | 이론 | 실습 |
| 계          |                                                                                | 65          | 33        | 32   | 16 | 16 |
| 노후준비<br>총론 | - 노후준비의 필요성 및 노후준비 진단지표<br>- 생애전환기에 대한 이해<br>- 상담에 대한 이해<br>- 노인의 심리·사회적 특성 변화 | 13          | 11        | 2    | 2  | -  |
| 재무설계       | - 노후소득보장 일반<br>- 3층보장체계<br>-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br>- 개인신용 관리 및 부채 관리                  | 20          | 10        | 10   | 4  | 6  |
| 건강설계       | - 노후 건강생활의 이해<br>- 의료보장제도 및 노인장기요양제도<br>- 노인복지서비스 이해                           | 8           | 4         | 4    | 2  | 2  |
| 여가설계       | - 여가의 개념과 특성<br>- 노후의 여가생활<br>- 사회활동서비스                                        | 6           | 2         | 4    | 2  | 2  |
| 대인관계<br>설계 | - 부부관계 및 사회적 관계<br>- 노후 대인관계 상담사례                                              | 7           | 3         | 4    | 2  | 2  |
| 경력관리<br>설계 | - 노년기 일의 의미와 실태<br>- 노인일자리 정책                                                  | 55          | 1.5       | 4    | 2  | 2  |
| 주거설계       | - 노후주거의 이해<br>- 노후주거 계획                                                        | 5.5         | 1.5       | 4    | 2  | 2  |

## 2. 이수방법

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 과목 중 이러닝 교육 33시간 및 소집 교육 32시간을 각각 수강하여야 한다.

## 나. 수료 기준

| 이러닝 교육                                                                | 소집 교육                 |
|-----------------------------------------------------------------------|-----------------------|
| 교육 시간 중 90% 이상을 학습하고, 과제 및 시험 등 평가항목을 합산한 점수가 총점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인 경우 | 교육시간 중 90% 이상을 출석한 경우 |

다. 보유 자격에 따른 이러닝 교육 중 면제받을 수 있는 과목

| 보유 자격                       | 교육 과목   |
|-----------------------------|---------|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 노후준비 총론 |
| 한국재무설계사(AFPK), 국제재무설계사(CFP) | 재무설계    |
| 보건교육사                       | 건강설계    |
| 생활체육지도사                     | 여가설계    |
| 건강가정사                       | 대인관계설계  |
| 직업상담사                       | 경력관리설계  |

##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직무교육 교육과정 등)** ①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교육과정은 가축방역행정과정과 임상실습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교육과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방역행정과정 : 가축방역정책, 가축방역 관계법령, 가축방역 관련 전문수의학 그 밖의 가축방역행정 및 소양에 관한 과목

2. 임상실습과정 : 가축전염병의 예찰·예방 및 진료와 축산물 위생검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실습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교육과정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방역행정과정 : 2주 이내

2. 임상실습과정 : 6주 이내. 다만,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임상실습과정은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④ 직무교육의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그 밖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3 예측 가능성

## 개요

- ◆ 업무처리의 과정 및 결과를 누구나 충분히 예측가능한지, 필요한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판단
- ◆ 이해관계자 등이 자격기준 및 필요한 제출서류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하고,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의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하여 불투명한 결과에 대비하기 위한 부패행위를 예방

## 평가방법

- ◆ 행정절차 관련규정의 구체성 검토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 및 업무의 처리절차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 행정절차 관련규정 이해의 용이성 검토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검토
- ◆ 예측가능성 판단
  - 모호한 기준 중의적·다의적 표현 등으로 행정청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 재량을 행사하거나, 민원인이 처리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지 검토

## 사례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평가대상 조문 1

**제96조의3(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에 대한 확인)** ① 법 제93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신고센터는 법 제93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가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96조의4(공동주택 관리비리 종결처리)**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 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96조의3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 4. (생략)무효로 할 수 있다.

### 개정배경

- ◆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구성·운영,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시행령에 신설  
–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4793호, '17.10.19. 시행)은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 회계 부정, 공사계약 관련 금품수수 등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대한 전담 신고 창구를 '14. 9월부터 운영 중

<'14.9 ~ '16.12 간 신고센터 운영실적 ('17.4.5. 국토부 보도자료)>

#### ● 총 575건 접수, 505건 처리 완료 (70건 조사중)

– 처리결과 : 고발 2건, 수사의뢰 7건, 과태료 64건, 시정조치 등 432건

#### ● 주요 처리내역

- (고발) 지하주차장 LED 공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동대표 고발 등
- (과태료부과) 전기료 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장기수선계획 수립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도색공사 지출, 입찰서류 무효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등
- (시정조치) 결격사유 동별대표자를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시정, 잡수익 사용용도 및 사용 절차의 명확한 기준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시정 등
- (행정지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공사업체 선정된 것 무효화, 외벽 도장공사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한 것 무효화 등

– 그간의 운영성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근거와 절차 등을 법령에 규정

####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2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관리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신고의 상담 및 접수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게 조사 및 조치 결과의 요지 등 통보

③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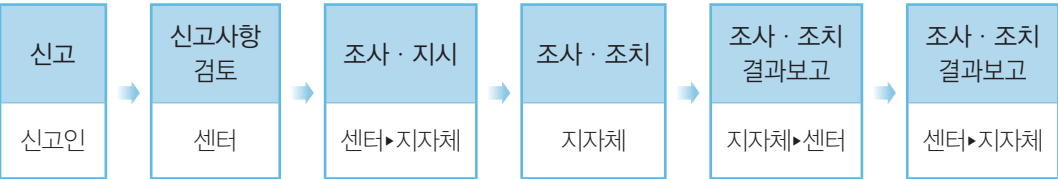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 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신고자에게 그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업무·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황

-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인적사항 및 신고 증거 등을 제출
  - 신고센터는 증거 등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신고인에 보완 요구 가능

< 신고사항 처리절차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출입, 시설·장부·서류 조사 및 검사 등 감독권한을 가짐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문제점

- ◆ 방문·우편 등 신고서류 제출 방식과 신고서 등 서식 미비로, 신고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한 신고인의 예측가능성 저해
  - 신고 방법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신속한 접수 저해 및 신고 처리 지연 우려
- ◆ 신고자료의 보완 기한을 ‘적정한 기간’으로 모호하게 규정하여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보완 기한을 운영할 가능성
  - 신고인의 ‘보완요구 불응’은 신고를 직권 종결할 수 있는 사유(제96조의4제2호)이므로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신고인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기한 등 절차를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검토결과: 개선권고

- ◆ 신고방법과 필요 서류 등을 구체화하여 명시
- ◆ 신고자료의 보완 기간을 특정하고, 필요시 신고인과 협의 등을 통하여 별도로 보완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예시】

※ 본 평가서의 개선의견 [예시]는 소관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므로, 개선취지의 반영을 전제로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음

◆ 신고방법 등 구체화

| 현행                                                                                                                                                                                                 | 개선 의견(예시)                                                                                                                                                                                                                        |
|----------------------------------------------------------------------------------------------------------------------------------------------------------------------------------------------------|----------------------------------------------------------------------------------------------------------------------------------------------------------------------------------------------------------------------------------|
| <b>제96조의3(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에 대한 확인)</b><br><br>〈신 설〉<br><br>① 법 제93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br>1. 법 제93조의2제3항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br>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 <b>제96조의3(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에 대한 확인)</b><br>① 법 제93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0호 서식의 신고서와 이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료를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br>1. (개정안과 같음)<br><br>2. (개정안과 같음) |

◆ 신고자료의 보완 기간 특정(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제96조의3(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에 대한 확인)**

- ③ 신고센터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신고센터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고서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보완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고방법 등 구체화 관련 유사 입법례】**

●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훈령 제331호, '17.1.2.)

제4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 ①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신, 방문, 유무선 또는 포털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수인 또는 단체가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112호, '17.3.13.)

제2조(신고 등의 접수) ①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제출된 신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가 방문·인터넷·우편·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른다.

2.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처리결과 통지를 받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등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신고자의 경우에는 상담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다음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접수한다.

**평가대상 조문 2**

**제96조의3(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에 대한 확인)** ③ 법 제9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처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현황**

- ◆ 신고센터는 신고사항 접수 후 사안을 검토하여 지자체에 조사·조치를 요구하며, 지자체는 사건을 조사·조치 후 신고센터에 보고
- ◆ 안 제96조의3은 지자체가 신고센터로부터 사건 조사·조치 요구를 받은 후 지자체의 장이 신고인에게 신분공개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문제점**

- ◆ 신고 사항의 처리기한이 불분명하여 신고 이후 처리절차에 대한 신고인의 예측가능성 저해
- 신고 접수에서 결과통보까지 절차별 처리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관리비리의 시급한 조사·조치 등이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장기간 방치 우려
  - 신고인 또는 그와 관련된 주민공동체는 신고사항에 대한 조치가 언제 완료될 것인지 대강의 기간에 대해서도 예측 불가

**검토결과: 개선권고**

- ◆ 신고의 접수·검토, 조사·조치, 재조사 등 절차별 처리기한을 설정
- 그간 처리가 완료된 신고 건 분석을 통해 적정기간을 설정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기간을 정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

## 개선결과

-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법령 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8350호, 2017.9.29., 일부개정]

#### 제96조의3(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에 대한 확인)

- ③ 신고센터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조문 3

**제96조의5(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에 대한 확인)** ① 신고센터는 법제9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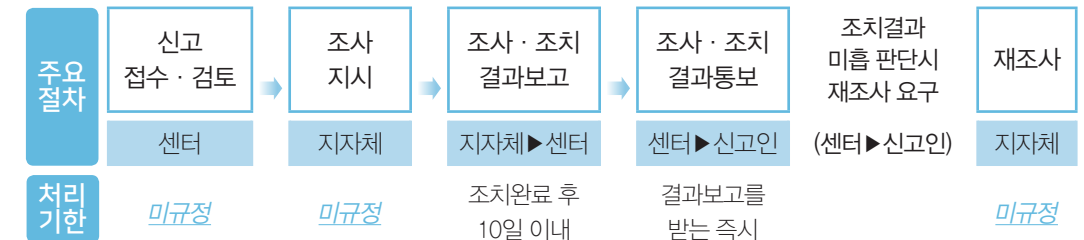
② 신고센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및 조치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 현황

- ◆ 신고센터는 접수한 신고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에 대한 재조사 요구도 가능
- ◆ 신고센터의 신고 접수·검토, 지자체의 조사·조치 및 재조사 소요기간 미규정

### < 신고처리 주요단계별 처리기한 >



## 문제점

- ◆ 신고 사항의 처리기한이 불분명하여 신고 이후 처리절차에 대한 신고인의 예측가능성 저해
  - 신고 접수에서 결과통보까지 절차별 처리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관리비리의 시급한 조사·조치 등이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장기간 방치 우려
  - 신고인 또는 그와 관련된 주민공동체는 신고사항에 대한 조치가 언제 완료될 것인지 대강의 기간에 대해서도 예측 불가

## 검토결과: 개선권고

- ◆ 신고의 접수·검토, 조사·조치, 재조사 등 절차별 처리기한을 설정
  - 그간 처리가 완료된 신고 건 분석을 통해 적정기간을 설정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기간을 정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

## 개선결과

-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법령 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350호, 2017.9.29., 일부개정]

**제96조의5(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처리)** ① 신고센터는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 및 조치 기간을 연장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고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례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 평가대상 조문

**제17조의2(교육)** ① 법 제41조제6항<sup>\*</sup>에 따른 다시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 등과 연계·활용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sup>\*</sup> 수산업법 제41조⑥ 제35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어선·어구에 대하여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현황

#### ● 개정이유

- 수산업법 상 의무를 위반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최대 1년이 경과하면 별다른 조건 없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어, 허가취소에 따른 손실보다 불법어업으로 인한 이익이 큰 경우 지도·단속만으로 불법어업 근절 어려움

<sup>\*</sup>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허가를 받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등

- 수산업법 개정('16.12)에 따라,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신청 시 수산관계법령 등의 교육의무화를 통해 불법어업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 전환

- ◆ 어업허가가 취소된 후 다시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 신설(수산업법 제41조제6항)
  - 이에 부령에서 시·도지사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매년 실시하는 어업인 교육훈련 등과 연계·활용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개정안 제17조의2제1항)

### 문제점

- ◆ 의무교육의 내용·시간 등 부재에 따른 행정의 예측가능성 저해
    - 어업허가 취소 후 재신청하려는 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해당 교육의 내용·시간·방법 등 교육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 미규정
    - 행정청(교육기관 별)의 자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 저해
- ※ 교육기관(지자체) 별 교육과정 및 내용에 차이가 많으므로 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 주요 사항은 법령에 규정하여 교육의 통일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

### 검토결과: 개선권고

- ◆ 의무교육의 내용·시간 등 관련 사항 구체화

###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67호, 2017.12.1., 일부개정]

제12조의2(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신청을 위한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1조 제6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사례 3 산림보호법 시행령

### 평가대상 조문

제12조의5(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사람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나무의사 자격 취득자가 산업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필요한 시설이나 재료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산림청장은 다음 연도의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확정하고,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정 시행일 60일 전까지 그 변경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 ④ (생략)
- ⑤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5의1과 같다.
- ⑥ ~ ⑨ (생략)

#### 별표 5-1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제12조의5제5항 관련)

|              |      |                                                                            |
|--------------|------|----------------------------------------------------------------------------|
| 나무의사<br>자격시험 | 필기시험 | 1.수목병리학<br>2.수목해충학<br>3.수목생리학<br>4.수목토양학<br>5.수목관리학(비생물적피해, 농약관리, 관계법령 포함) |
|              | 실기시험 | 1.논술형(수목 피해진단 및 처방)<br>2.실기형(수목 및 병충해의 동정, 약제처리와 외과수술)                     |

제12조의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 ⑤ (생략)

⑥ 법 제21조의7제5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⑦ (생략)

별표 5-4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  
(제12조의7제6항 관련)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1조의7제2항제1호                   | 지정취소   |       |       |
| 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                                            | 법 제21조의7제2항제2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 다. 지정 당시 제출한 나무의사등의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 법 제21조의7제2항제3호<br>영 제12조의7제5항제1호 | 시정명령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 제21조의7제2항제3호<br>영 제12조의7제5항제2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 마.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 법 제21조의7제2항제3호<br>영 제12조의7제5항제3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 바. 산림청장의 시정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법 제21조의7제2항제3호<br>영 제12조의7제5항제4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현황

● 개정이유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나무의사 국가자격 및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나무병원 등록 등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전형방법,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기준,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시정명령 기준

- ◆ 「산림보호법」(2016. 12. 27. 법률 제14519호로 개정, 2018. 6. 28. 시행) 제21조의4는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함)의 자격 취득을 규정  
- 시행령(개정안)은 「산림보호법」의 위임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 나무의사 자격 정지·취소 및 나무의사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규정

나무의사 제도 도입 배경

-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방제를 비전문가인 관리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시행함에 따른 부작용 발생  
→ 실내소독업체에 의한 수목방제(90%), 고독성농약 등 부적정 약제 사용(78%)
- 사람이나 동물과 달리 수목의 경우 진료·치료와 관련한 자격이나 진료체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교육과 진료가 미흡
- 따라서 수목의학 교육이 가능한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나무의사 자격을 통해 전문적인 수목진료체계 구축 필요

## &lt;나무의사 등 자격취득 및 나무병원 등록절차&gt;

|         |                                                          |              |                          |            |
|---------|----------------------------------------------------------|--------------|--------------------------|------------|
| 나무의사    | • 취득요건 :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                          |            |
| 수목치료기술자 | • 취득요건 :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              |                          |            |
| 나무병원 등록 | • 등록요건 : 종류별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br>* 나무병원 세부등록기준(안) |              |                          |            |
|         | 종류                                                       | 업무범위         | 기술자격                     | 자본금 비고     |
|         | 1종                                                       | 수목진료         | 나무의사 1인 및 수목치료 기술자 1인 이상 | 1억원        |
|         | 2종                                                       | 처방에 따른 약제 살포 | 수목치료기술자 1인 이상            | 1억원 5년후 폐지 |

## 문제점

- ◆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실시 여부 및 공고할 사항·공고방법이 불분명하고, 시험 시행의 세부기준이 미흡하여 자의적 시험 운영 우려 및 응시예정자의 예측가능성 저해
- ◆ 나무의사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불분명하여 처분 대상자의 예측가능성 저해
  - ①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사항과 공고방법이 불분명하여 응시예정자 등 이해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저해
    -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및 변경된 시행계획에 대한 추상적 공고의무만 규정하고, 공고할 사항과 그 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시행기관이 공고사항 및 공고방법을 임의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필수적으로 공고해야 할 사항과 공고방법을 특정하여 규정할 필요
  - ② 필기시험의 문제유형 및 배점기준이 없이 과목만 규정되어 있어 응시예정자의 예측가능성 저해
    - 필기시험의 경우 선택형, 단답형, 완결형 등 여러 방식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유형 및 배점기준이 없음

- ③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별표 5의4)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불명확하여 처분대상자의 처분종류에 대한 예측가능성 저해
  - [별표5-4] 2. 개별기준 중 나목부터 마목까지는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바목에서 ‘시정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별도의 위반유형으로 규정
  - 따라서 1차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위반행위 유형을 적용할 것인지 불분명

## 구체적 적용 사례

## 별표 5-4 나목과 바목의 적용례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나목에 따르면, 1차로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면 시정명령을 하고,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1. 일반기준 다목\*에 따라 2차 위반한 것이 되어 지정취소 대상

1차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

불이행

2차 위반으로 인정되어  
지정취소

\* 행정처분기준이 시정명령인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차 및 3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 바목에 따르면,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됨을 이유로 시정명령(나목에 따른 1차 위반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을 받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이행 불응 1차 위반이 되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야 지정취소 대상

1차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

불이행

시정명령 이행 1차  
위반으로 되어 시정명령

불이행

시정명령 이행 2차  
위반으로 되어 지정취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① 시험 시행계획 공고 시 필수 공고사항과 시행계획 및 변경계획의 공고방법(홈페이지 등) 명확화를 통한 응시예정자의 예측가능성 확보(2건)
- ② 필기시험의 문제유형 및 배점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응시예정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 ③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나무의사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위반행위 중 ‘시정명령 위반’(2. 개별기준의 바목)을 삭제하여 처분대상자의 처분유형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현행법령 개정

자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98호, 2018.6.26., 일부개정]

제12조의5(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 ① (생략)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응시자격
- 2. 시험의 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 3.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 기준
- 4. 합격자 발표 일시 및 방법
- 5.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수요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거나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된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 5-1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제12조의6제2항 관련)

| 구분    | 유형          | 시험과목(배점)                                                                                                                                                   |
|-------|-------------|------------------------------------------------------------------------------------------------------------------------------------------------------------|
| 1차 시험 | 선택형<br>필기시험 | 1. 수목병리학(100점)<br>2. 수목해충학(100점)<br>3. 수목생리학(100점)<br>4. 산림토양학(100점)<br>5. 수목관리학(100점)<br>가. 비생물적피해(기상·산불·대기 오염 등에 의한 피해)<br>나. 농약관리<br>다. 「산림보호법」 등 관계 법령 |
|       |             |                                                                                                                                                            |
| 2차 시험 | 서술형<br>필기시험 | 수목 피해진단 및 처방(100점)                                                                                                                                         |
|       | 실기시험        | 수목 및 병충해의 분류, 약제처리와 외과수술(100점)                                                                                                                             |

별표 5-4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

(제12조의7제6항 관련)

2.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br>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바. 산림청장의 시정명령을 1개월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의7제2항제3호, 영 제12조의8제5항제4호 | 지정취소   |      |      |

※ 바는 개선의견의 삭제대신 처분기준을 변경하여 개정

## 4. 부패통제

### 1 이해충돌 가능성

#### 개요

- ◆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해충돌 방지장치가 규정되어 있는지 등 부패유발요인 평가

#### 평가내용

- ◆ 이해충돌 가능성 검토
  - 위원 및 임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야기하거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결정이나 심의 등을 하는 경우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해 결정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유무 검토
  - 자격요건 및 임기·연임 규정, 제척·기피·회피, 해촉, 공무원 의제, 겸직·영리행위 금지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적정성 검토
  - 자격요건의 구체성, 연임제한 규정의 유무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척규정이 있는지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영리행위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지를 검토

#### ◆ 이해충돌 방지제도 규범력 강화수단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 시 뇌물죄 등 형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

## 사례 1 국세징수법 시행령

### 평가대상 조문

**제85조(국세채납정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채납정리위원회를 지방국세청국세채납정리위원회(이하 “지방국세청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세무서에 두는 국세채납정리위원회를 세무서국세채납정리위원회(이하 “세무서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② 지방국세청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세무서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국세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세무서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된다.

③ 국세채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5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상공계를 대표할 만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92조(의사 관여의 제한)** 국세채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과 관련되어 있는 채납세금에 관한 의사(議事)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94조(위원의 해촉)**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85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국세를 채납한 경우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 현황

- ◆ (위원 임기) 현행 국세징수법 제85조에서는 국세채납정리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정수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면서 위원 임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 ◆ (제척·회피) 심의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의사결정에서 배제하는 조항은 자기 또는 친족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제척사유로 규정

- ◆ (회피의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안건 심의·의결과정에 회피의무를 명시한 조항은 두고 있지 않음
- ◆ (해촉사유) 품위손상 등에 대한 해촉 근거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직무관련 비위 사실 발생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 (공무원 의제) 국세채납정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별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조항 부재

### 문제점

- ◆ 법령상 별도의 임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 곤란
  - 특정인이 계속 위원직을 장기 독식할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장기간 재직하는 특정위원에 대한 로비유발 등 부패발생 가능성 증가
- ◆ 이해충돌을 사전방지 할 수 있는 장치 부재
  - 채납정리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안이므로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국세청장·지방청장 등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음
- ◆ 부정·불법 위원 배제 및 제재 규정 미흡
  - 채납정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부정·불법 위원에 대한 심의참여 배제 및 사후 처벌 강화 등 위원회 심사·의결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 미흡
    - ※ 지방세의 채납정리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제척 사유, 회피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은 위원의 제척사유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회피의무를 명시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회피·회피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 「법령 입안·심사 기준」(법제처, 2012. 12. 31.)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회피·회피, 결격사유, 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pp. 362~363)

### 검토결과: 개선권고

#### 《시행령 개정 사항》

① 위원의 임기, 연임 가능여부, 횟수 등 명시

② 위원의 제척·회피 관련 규정 개선·보완

- 이해관계 위원의 참여배제 강화를 위해 제척사유를 구체화
- 이해관계 위원의 회피의무 조항 명시
- 직무관련 비위발생시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사유 보완

### 개선결과 [시행령]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47호, 2018.2.13., 일부개정]

**제85조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4조(위원의 해촉)**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85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국세를 체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7. 제92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관련 개선안(예시)

제○○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체납정리의 당사자 또는 체납정리 업무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체납정리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법률 개정 사항》

#### ①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 추후 법률 개정 시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 지방세와 관련하여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이미 규정되어 있음

#### ●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개선안(예시)

제○○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세채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참고 입법례 1】 제척·회피 조항 관련 입법례 (조세 관련분야)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고액·상습채납자 등 명단 공개)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이하 이 항에서 "명단공개대상자"라 한다)인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명단공개 대상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5. 명단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명단공개대상자에 관한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신청·청구에 관여하였던 경우
6. 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명단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7. 그 밖에 명단공개대상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⑦ 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⑭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으로부터 제척된다.

1. 심사청구인 또는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심사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사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7. 그 밖에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⑮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 등에 관여한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 또는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참고 입법례 3】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관련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
2. 제40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46조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 ● 건설기술진흥법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특별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4.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사례 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평가대상 조문

## ● 시행령

제6조(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30조(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 상기 조문과는 별개로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 부재

※ 이해충돌 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현황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법률 제14566호, '17.2.8 제정, '17.8.9 시행)

☞ (주요골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피해구제위원회·구제계정운용위원회 구성 및 종합 지원센터 운영,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간병비 등 지원, 가습기살균제 및 원료물질 사업자가 부담 해야 할 피해구제분담금 규정 및 특별구제계정(2천억원이내) 운용 등

- ◆ 법 제7조 및 제33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와 '특별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

－ 시행령에서는 상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

<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구성 기준 >

| 구 분      | 피해구제위원회                                                                                                                                                              | 구제계정운용위원회                                                                                                                                                 |
|----------|----------------------------------------------------------------------------------------------------------------------------------------------------------------------|-----------------------------------------------------------------------------------------------------------------------------------------------------------|
| 설 치      |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위원정수     | 15명 이내                                                                                                                                                               | 20명 이내                                                                                                                                                    |
| 심의·의결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습기살균제 정보 제공·열람 명령 결정</li> <li>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 결정</li> <li>특별유족 인정 결정</li> <li>구제급여 지급 결정</li> <li>각 결정 등에 대한 재심사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구제계정 관리·운용</li> <li>손해배상책임 사업자를 알 수 없는 피해자 등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li> <li>긴급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한 금액 지원 결정 등</li> </ul> |
| 위원장      | 환경부차관                                                                                                                                                                | 위원 간 호선                                                                                                                                                   |
| 위 원      | (공무원) 행정기관 공무원(환경부, 복지부 등)<br>(민간인) 관련분야 전문의·교수, 판·검사 또는 변호사, 관련기관 추천자                                                                                               | (민간인) 관련분야 전문의·교수, 판·검사 또는 변호사, 자산운용·재무관리전문가, 피해자 단체·관련업계 추천자                                                                                             |
| 전 문 위원회  | 폐질환·폐외질환 조사판정전문위원회<br>(각 20명 이내)                                                                                                                                     |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준용                                                                                                                                              |

## 문제점

- ◆ 위원회 위원들의 연임 횟수 제한이 없어 무제한 연임 가능
  - 피해인정 및 지원범위·금액 결정, 구제계정 재원 운용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및 관련기업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위원회 심의·의결내용의 강한 구속력과 권한을 고려 시,
  - 특정인이 계속 연임될 경우 장기 재직하는 위원에 대한 로비 등 부패행위가 유발될 가능성이 큼
- ◆ 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 미비
  - 안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부정·불법 위원에 대한 해촉 등 참여배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심의·의결의 객관성·공정성이 침해될 우려
- ◆ ‘구제계정운용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미흡
  - 손해배상책임 사업자를 알 수 없는 피해자 등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긴급의료지원 결정 등 기능상 권한과 심의·의결내용의 구속력은 피해구제위원회와 동등한 반면, 전원 민간인으로만 구성이 가능한 위원회 특성에도 불구하고,
  - 뇌물수수 등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 등 법률상 부패

통제장치 규정에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만 누락

\* 피해자·유족의 개인정보, 화학물질 성분·배합비 등 관련기업의 영업상 비밀 등

## 검토결과: 개선권고

- ① 위원회 위원들의 연임 가능 횟수 제한
- ② 위원회 위원들의 결격사유 및 이해관계 위원의 참여배제 강화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 ③ 업무상 비밀누설 및 비위행위, 회피의무 위반 등 부적격 사유 발생시 해당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마련

##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39호, 2017.8.9., 제정.)

**제5조(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2. 환경부장관
3. 그 밖에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참여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을 말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지명 철회)** 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거나 의뢰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구제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사례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평가대상 조문 1

**제55조(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전문가(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한다)
3.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제5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위원장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6조(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제60조(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기능적·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장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⑥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⑦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 등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 ⑧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세부사항은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정한다.

※ 이해충돌 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현황

- ◆ 법 제5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과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대한 붕괴·파손 등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중앙시설물조사위원회 및 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의를 구성·운영
- ◆ 법 제18조 및 제60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점검 및 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 구분       | 중앙시설물조사위원회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                                                        |
|----------|--------------------------------------------------------------------------------------------------|---------------------------------------------------------------------------|
| 주요업무     | ▲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에 대한 사고경위 및 사고 원인·대책 등에 관한 사항<br>▲ 기타 시설물 사고조사 및 결과·분석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 정밀안전점검 및 안전진단결과와 평가 심의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br>▲ 평가관련 자료요구 및 조사 등 평가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
| 위원정수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br>*소위원회구성·운영(7인상15인 이내)                        |
| 임기       | ×                                                                                                | 2년                                                                        |
| 연임가능여부   | ×                                                                                                | ○                                                                         |
| 연임횟수제한규정 | ×                                                                                                | ×                                                                         |
| 제척 기피 회피 | ○ ○ ○                                                                                            | ×                                                                         |
| 해촉사유규정   | ×                                                                                                | ×                                                                         |

## 문제점

- ◆ (중앙시설물조사위원회 등) 임기 및 연임횟수 제한이 없어 위촉위원의 무제한 연임 가능
  - 특정인이 임명될 경우 위원직의 장기 독식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기회 제한
- ◆ (정밀안전점검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장치가 미흡하여 심의의 객관성·공정성 저해 우려
  - 정밀안전점검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등 점검·진단 대상기관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나,
  - 위원의 제척, 기피 등의 규정이 부재하여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 개인의 사적인 이해의 개입으로 인한 부패유발 위험성 존재
- ◆ 부정·불법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부재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① 위원에 대해 임기 규정 및 연임가능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
- ②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등 이해충돌방지장치 보완
- ③ 부적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마련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후략)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략)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법령 입안 · 심사 기준」(법제처, '12.12.31)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위원 의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결격사유, 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

【참고의견】

-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및 회피 규정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고시에 규정
  -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와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관련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규정을 두고 있음
  - － 향후 법 개정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사항 등에 따라 현행 고시 규정을 상세히 보완하여 법령에 상향 입법하는 것이 필요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설물의 안전관리 일원화에 따라 전부 개정된 취지에 맞게
  - － 세 위원회의 제척 · 기피 · 회피 및 해촉 규정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준용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 ◆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기 위한 위원의 자격 중 공무원에 대한 자격기준의 일치 필요

| 시설물안전법시행령 (제60조5항1호)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6조3항1호)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 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 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5급이상 공무원 중 해당분야 박사기술사자격을 갖춘 사람 |

※ 현재 '17년 기준 평가위원 298명 중 공무원이 6명(2%)이며, 4급 2명(33%), 5급 4명(67%)

개선결과 [시행령]

-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1.16., 전부개정]

제38조(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③ 위원의 임기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고 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44조(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⑥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평가 위원회”로 본다.

제45조(위원의 해촉)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 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평가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4조제6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개요

- ◆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평가

### 평가방법

- ◆ 관련 부패사례 검토
  -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타기관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과거 부패사례가 있었는지 검토
- ◆ 부패방지장치 관련 규정 및 실효성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관련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 ◆ 부패방지장치의 필요성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부패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부통제 장치 도입 필요성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

## 사례1 항만법 시행령

### 평가대상 조문

제18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 ① (생략)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로 한다.

1. 별표 3에 따른 토지 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비관리청이 취득하려는 토지의 가액(價額)이 제19조에 따른 총사업비의 범위 이내일 것. 이 경우 총사업비는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에 사용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가액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감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이 적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다시 해당토지의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등 가액은 감정평가업자가 다시 감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 법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해양수산 부장관이 아닌 자)의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황

#### ● 개정이유

- 현행 항만법 상 감정평가 방법은 다른 유사법령과 달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주체 및 절차 등이 부재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렵고 감정평가업자가 평가의뢰자에게 유리한 평가액을 제시할 우려 상존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② 매립면허취득자가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해당 매립지의 가격산정은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 지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이 적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다시 평가하게 할 수 있다.

→ 유사법령 간 감정평가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평가업자 선정 주체 명확화 및 재감정 절차 마련 등을 통해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 ◆ 비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의 항만공사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는 준공과 동시에 국가 귀속이 원칙이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귀속의 예외(비관리청 귀속)를 인정(법 제15조제1항)
  - 이에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는 비관리청에 귀속되는 토지의 요건으로 [별표 3]에 규정된 토지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1호), 취득하려는 토지 가액이 총사업비 범위 이내(2호)일 것으로 규정

**시행령 제18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로 한다.

1. 별표 3에 따른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비관리청이 취득하려는 토지의 가액(價額)이 제19조에 따른 총사업비\*\*의 범위 이내일 것. 이 경우 총사업비는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에 사용된 금액으로 산정한다.

\* 「별표3」은 부두별 국가 귀속 토지의 범위를 정함(적재 톤수 2만톤급 미만의 일반 소형부두의 경우 안벽으로부터 200미터 등)

\*\* 총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 부가가치세 비용을 합산한 금액(단,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설 및 토지 관련 비용 제외)

- ◆ 시행령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가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개정령안 제18조제3항)

※ 현행은 감정평가업자 지정 주체 미규정, 비관리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의뢰자에 유리하게 평가액이 산정될 우려가 있어 개정안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토록 명확히 규정

## 문제점

- ◆ 감정평가 시 사업시행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액 산정을 위해 행정청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을 하는 등 부패행위 발생 우려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업자로만 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평가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배제되어,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련 로비 등 부패 발생 우려 및 평가의 신뢰성 저해
  -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추천이나 이해당사자의 추천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유사법령에 비해 행정절차의 공정성 확보에 미흡

## ● 토지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방식 사례

### ① 신청자 중 '추첨'으로 지정하는 방식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감정평가업자의 지정) ① 매립면허관청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 추첨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 및 이해관계자가 각각 '추천'하는 방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②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관련 보도 사례

### ● 법원, '헐값감정' 해주고 돈 챙긴 감정평가사들 징역형 <연합뉴스, '16.9.29.>

- 서울 용산구의 고급 민간 임대아파트 '한남더힐'의 분양 전환가격을 낮게 감정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감정평가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
- 김씨 등 3명은 2013년 9~11월 분양전환 대책위원장 윤모씨로부터 분양전환 가격을 낮게 평가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실제로는 감정을 하지 않은 채 아파트 전세보증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평당 가액을 사업 제안서에 써내고 감정평가 업무 수주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감정평가업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 제고
  - － 세부 선정 절차 마련을 위한 위임근거 신설(시행령 개정사항) 및 세부적인 감정평가업자 선정 절차 마련(시행규칙 개정사항)
    - ※ 세부 선정절차는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나, 해수부 소관 유사 법령인 ‘공유수면매립법’에 규정된 감정평가 절차를 고려, 추첨 방식 우선 검토

【시행령안 예시】

- ◆ 세부 선정 절차 마련을 위한 위임근거 신설
  -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수정, 변경 등 새로운 방향 제시 가능

| 개정안                                                                                                                                                                                                                                                                                                                                                                                                                                    | 개선의견(의견)                                                                                                                                                                                                                                                                        |
|----------------------------------------------------------------------------------------------------------------------------------------------------------------------------------------------------------------------------------------------------------------------------------------------------------------------------------------------------------------------------------------------------------------------------------------|---------------------------------------------------------------------------------------------------------------------------------------------------------------------------------------------------------------------------------------------------------------------------------|
| <b>제18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b><br>① (생략)<br>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로 한다.<br>1. 별표 3에 따른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br>2. 비관리청이 취득하려는 토지의 가액(價額)이 제19조에 따른 총사업비의 범위 이내일 것. 이 경우 총사업비는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에 사용된 금액으로 산정한다.<br>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가액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감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br><br>④ (생략) | <b>제18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b><br>①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br><br>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가액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감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br><br>④ (현행과 같음) |

【시행규칙안 예시】

- ◆ 세부적인 감정평가업자 선정 절차 마련
  -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수정, 변경 등 새로운 방향 제시 가능

| 개정안  | 개선의견(의견)                                                                                                                                                                                                                                                                                                                                                                                                                                                                                                                                                                                                                                                                                                                                                    |
|------|-------------------------------------------------------------------------------------------------------------------------------------------------------------------------------------------------------------------------------------------------------------------------------------------------------------------------------------------------------------------------------------------------------------------------------------------------------------------------------------------------------------------------------------------------------------------------------------------------------------------------------------------------------------------------------------------------------------------------------------------------------------|
| 〈신설〉 | <b>제○○조(감정평가업자의 지정)</b>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 추첨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1.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 및 면적<br>2. 조성공사의 준공예정 연월일<br>3. 감정평가업자의 추첨일시 및 추첨 장소<br>4. 지정 대상 감정평가업자의 수<br>5. 감정평가업자의 지정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 기관<br>6. 제출서류〔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사본 또는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서의 사본을 말한다〕<br>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br>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공고사항을 지체 없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br>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업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하되, 재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업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직권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한다.<br>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비관리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참고 입법례]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1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① (생략)

② 매립면허취득자가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해당 매립지의 가격산정은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 지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3조(감정평가업자의 지정) ① 매립면허관청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 추첨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
2. 매립공사의 준공예정 연월일
3. 감정평가업자의 추첨일시 및 추첨 장소
4. 지정 대상 감정평가업자의 수
5. 감정평가업자의 지정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기관
6. 제출서류[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사본 또는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서의 사본을 말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매립면허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공고사항을 지체 없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업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하되, 재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업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직권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한다.

⑤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사례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 평가대상 조문

제5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생활화학제품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활화학제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11. (생략)

③ 생활화학제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생활화학제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생활화학제품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화학·생물·환경·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화학·생물·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⑥ 생활화학제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의 생활화학제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이해충돌 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현황

- ◆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 재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질의 승인, 살생물제품의 허가 제도 도입 등 살생물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법률을 제정

## 법률 제정 개요

- **(배 경)**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생활화학제품 사용에 대한 국민 불안 확산, 관련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합동「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16.11.29)」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련물질·제품 등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법제화 추진

\* 인명피해 : 신청 5,215명, 판정 258명(생존 145, 사망 113) (환경부, ’16.11 기준)

- **(내 용)** 살생물질의 승인제도 및 살생물제품의 허가제도 도입, 살생물처리제품내 살생물질의 명칭·기능 표시 의무, 생활화학제품 관련규정 통합 및 관리 강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유통 관리 강화 등정한다.

## &lt;살생물제의 정의 및 예시(환경부)&gt;

| 살생물제     | 정 의                                           | 예 시                                           |
|----------|-----------------------------------------------|-----------------------------------------------|
| 살생물질     |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             | PHMG, PGH, CMIT/MIT, OIT 등                    |
| 살생물제품    |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 기능으로 하는 제품                      |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가습기살균제, 오존·이온 발생기 등       |
| 살생물처리 제품 | 살생물질을 의도적으로 포함시킨 제품 중 유해생물의 제거 등이 주 기능이 아닌 제품 | 항균 에어컨필터, 모기퇴치 옷, 탈취 양말, 보존제가 함유된 세정·방향·탈취제 등 |

예 OIT는 살생물질, OIT로 만든 보존제는 살생물제품, OIT보존제로 코팅한 항균필터는 살생물처리제품

- ◆ 안 제5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 위원회는 살생물질 및 관련제품의 승인·허가·취소, 정보제공, 회수·폐기 결정 등 국민건강 및 관련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 연관되는 주요사항들에 대하여 강한 구속력과 권한을 가진

- ◆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고,
  - 화학·생물·환경·보건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또는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

## &lt; 생활화학제품관리위원회 심의·의결사항 &gt;

| 구분      | 내용                                                                                                                                                                                                                                                                                                                                                                                       |
|---------|------------------------------------------------------------------------------------------------------------------------------------------------------------------------------------------------------------------------------------------------------------------------------------------------------------------------------------------------------------------------------------------|
| 제5조 제2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li> <li>• 위해우려물질 지정, 생활화학제품 위해성 평가,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결정</li> <li>• 살생물질의 승인, 승인갱신·변경·취소 및 기술적 동등성 여부 결정</li> <li>• 살생물제품의 허가, 허가갱신·변경·취소 및 허가절차 간소화 대상 살생물질 지정</li> <li>•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 제공 또는 열람 여부 결정</li> <li>•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회수 또는 폐기 결정</li> <li>•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li> </ul> |

## 문제점

- ◆ 임명·위촉대상 위원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
  - 국민건강과 직결된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의 중요도를 고려 시, 위원 선정절차에 있어 임명·위촉권자의 재량과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보다 객관화·구체화 할 필요
- ◆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관련 규정 부재
  - 안 제61조에는 살생물질 등의 시험·검사 등 업무위임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해서만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됨을 명시
  - 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이 국민건강과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해 공정한 직무윤리를 담보할 수 있는 부패방지장치 마련 필요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참여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여 임명·위촉권자의 사적인 이해 개입을 방지하고 위원 선정절차의 공정성 제고
  - ‘풍부한 학식과 경험’ 등 보유여부 판단에 임명·위촉권자의 과도한 주관과 이해가 개입되지 않도록 대학·연구소·산업계 등 소속구분과 관련분야 필요 경력연수 등 최소한의 객관적 자격기준 명시
- ◆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 마련
  - 업무상 비밀 누설, 뇌물수수 등 범죄행위 시 공무원과 동일한 「형법」상의 형사처벌 부과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관련 사항 신설(법률 제13462호 제6조 제3항, '15.8.11.)

● 「법령 입안·심사 기준」(법제처, 2012. 12. 31.)

- 위원의 자격 요건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원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결격사유, 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p. 362 ~ 363)

[법령안 예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수정, 변경 등 새로운 방향 제시 가능

【예시】임명·위촉대상 위원의 자격요건 구체화

| 개정안                                                                                                                                                                                                                                                             | 개선의견(의견)                                                                                                                                                                                                                                                                                                                                                                                                                                                                                                                                                                                                                                                                  |
|-----------------------------------------------------------------------------------------------------------------------------------------------------------------------------------------------------------------------------------------------------------------|---------------------------------------------------------------------------------------------------------------------------------------------------------------------------------------------------------------------------------------------------------------------------------------------------------------------------------------------------------------------------------------------------------------------------------------------------------------------------------------------------------------------------------------------------------------------------------------------------------------------------------------------------------------------------|
| <p><b>제5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①</b><br/>~ ④ (생략)</p> <p>⑤ 생활화학제품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1. 화학·생물·환경·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p> <p>2. 화학·생물·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p> <p>⑥ ~ ⑦ (생략)</p> | <p><b>제5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①</b><br/>~ ④ (제정안과 같음)</p> <p>⑤ 생활화학제품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1. 화학·생물·환경·보건에 관한 업무에 0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0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p> <p>2. 화학·생물·환경·보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p> <p>3. 산업계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화학·생물·환경·보건 분야 업무에 00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p> <p>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p> <p>⑥ ~ ⑦ (제정안과 같음)</p> <p>〈또는〉</p> <p><b>제5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①</b><br/>~ ④ (제정안과 같음)</p> <p>⑤ 생활화학제품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화학·생물·환경·보건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⑥ ~ ⑦ (제정안과 같음)</p> |

## 【예시】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 개정안                                                                                                         | 개선 의견(의견)                                                                                                                                                                        |
|-------------------------------------------------------------------------------------------------------------|----------------------------------------------------------------------------------------------------------------------------------------------------------------------------------|
| 제6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6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br>1.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br>2. 제6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

## 【유사 입법례】

## ◆ 임명 · 위촉대상 위원의 자격요건 구체화 관련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29조(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1. 공공데이터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의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명 이상 7명 이하의 조정부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 ⑦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절차는 비공개로 하되,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 ⑧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활용지원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 ⑨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가. 평가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나.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다. 그 밖에 평가 또는 행정에 관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자와 동등한 정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관한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8조(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이하 “광산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산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채광·탐사·선광·기계·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채광·탐사·선광·기계·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 분야의 석사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채광·탐사·기계·안전관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책임자급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광산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7. 공업직(자원직류만 해당한다) 출신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광산안전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관련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
2. 제40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46조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 ● 건설기술진흥법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특별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4.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사례 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평가대상 조문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현황

- ◆ 법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분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가·지역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
- ◆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하고(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기준),
  -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관련분야 교수 및 수자원 분야 10년 이상의 연구·실무경험이 있는 민간인 중에서 위촉

< 국가·지역 수자원 관리 위원회의 구성 기준 (법률 제29조·제32조) >

| 구 분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
|------|--------------------------------------------------------------------------|--------------------------|
| 설치   | 국토교통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 소관사항 |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                                                          |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          |
| 위원정수 | 총 50명 이내                                                                 | 총 30명 이내                 |
| 위원장  | 국토교통부차관                                                                  | 시·도 소속 3급이상 공무원 중 지사가 지명 |
| 위원   | (공무원) 행정기관 공무원, 판·검사<br>(민간인) 변호사, 하천·환경공학 등 조교수 이상, 관련분야 연구·실무경력 10년 이상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기준 준용         |

< 국가·지역 수자원 관리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

| 구 분                      | 내 용                                                                                                                                            |
|--------------------------|------------------------------------------------------------------------------------------------------------------------------------------------|
| 법률 제29조<br>·<br>시행령 제27조 | •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br>•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br>•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br>•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56<br>•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 |

문제점

- ◆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관련 규정 부재
  - 국가·지역의 수자원 관리와 관련분쟁 등 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시, 민간위원의 공정한 직무윤리를 담보할 수 있는 부패방지장치 마련 필요

검토결과 : 개선권고

[추후 법률 개정시 반영 사항]

- ⑤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 마련
  - 업무상 비밀 누설, 뇌물수수 등 범죄행위 시 공무원과 동일한 「형법」 상의 형사처벌 부과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③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법령 입안·심사 기준」(법제처, '12.12.31) (p. 362 ~ 363)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결격사유, 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

【법령 안 예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수정, 변경 등 새로운 방향 제시 가능

| 현 행                                                                                                                                | 개선 의견(예시)                                                                                                                                                                                                          |
|------------------------------------------------------------------------------------------------------------------------------------|--------------------------------------------------------------------------------------------------------------------------------------------------------------------------------------------------------------------|
| <b>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b>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b>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br>1.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br>2.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참고 입법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
- 2. 제40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3. 제46조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 건설기술진흥법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특별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2.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3.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 4.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 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절 업무내용별 사례

- 1. 검정·평가 업무
- 2. 부과·징수 업무
- 3. 수리·통지 업무
- 4. 지정 / 위탁·대행 업무
- 5. 심사·심의·위원회 업무
- 6. 지원·보상 업무

## 1. 검정·평가 업무

### 사례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평가대상 조문

**제21조(교육환경평가서의 공개)**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의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환경평가서신청자가 합리적 이유로 공개시기를 따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교육환경평가서 등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평가기준

##### ◆ 공개성

#### 현황

- ◆ 법 제6조 제7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 제정안 제21조는 교육환경평가서 공개 시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되, 교육환경신청자가 합리적 이유로 공개시기를 따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 문제점

- ◆ 법률 및 시행령 상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해야 하는 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명확한 공개의 기준시점을 알 수 없어 법령의 실질적 적용 불가능
  - ◆ 사업시행자가 공개시기를 따로 정하여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 예외적용 사유가 ‘합리적 이유로’ 라고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 정보공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 공개시기 예외 적용 하는 경우 실제 정보공개 시점도 ‘다른 시기’로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정보공개실의 실효성이 낮아 학부모 등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행정의 투명성 저하
- ※ 법 제6조 제7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또한, 교육환경평가서 등의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정안 21조 제2항)
    - 제정안과 같이 교육환경평가서 등의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할 경우 행정규칙 형식이 아닌 업무담당 부서에서 내부결재 등으로 결정 가능
    - 이해관계자가 교육환경평가서 정보공개에 관한 사전에 파악하기 곤란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투명성 저하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교육환경평가서 정보공개 시기를 명확히 규정
- ◆ 정보공개 시기 예외 적용사유 및 연장시기의 범위를 구체화
- ◆ 교육환경평가서 정보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을 행정규칙 형식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선

【 예시 】

| 개정안                                                                                                                                                                                                               | 개선의견(예시)                                                                                                                                                                                                                                                                                                       |
|-------------------------------------------------------------------------------------------------------------------------------------------------------------------------------------------------------------------|----------------------------------------------------------------------------------------------------------------------------------------------------------------------------------------------------------------------------------------------------------------------------------------------------------------|
| <p><b>제21조(교육환경평가서의 공개)</b>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의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u>다만, 교육환경평가서신청자가 합리적 이유로 공개시기를 따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u></p> | <p><b>제21조(교육환경평가서의 공개)</b>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때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환경평가서신청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00일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의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u>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신청자의 신청을 받아 공개시기를 늦출 수 있다.</u></p> <p>1. &lt;생략&gt;<br/>2. &lt; “ &gt;<br/>3. &lt; “ &gt;</p> |
| <p>② 교육환경평가서 등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p>                                                                                                                                                                  | <p>② 교육환경평가서 등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

※ 본 평가서의 개선의견 [예시]는 소관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므로, 개선취지의 반영을 전제로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음

사례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75조(시험합격자의 결정)** 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2차 시험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해당 연도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76조(시험의 시행·공고)** 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방법 및 합격기준의 결정 등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 예측가능성

현황

● 개정이유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16.3.22.개정, '20.1.1.시행)됨에 따라,
  - ※ 이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정('16.8시행)
-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

- ◆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등 확보를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제도 운영
  - 법에서는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 자격 보유자를 필수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주택관리업 등록 요건으로 1명 이상의 주택관리사를 보유하도록 규정

\*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인 ‘주택관리사보’ 시험(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의 주택관련 실무경력 필요

-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연 1회 1차와 2차 시험으로 치뤄지며,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2차 시험 응시가 가능(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회 1차 시험 면제)

| 구분    | 시험과목 (1차-3개, 2차-2개)                                      | 문항수 · 유형                        |
|-------|----------------------------------------------------------|---------------------------------|
| 1차 시험 | ① 민법, ② 회계원리, ③ 공동주택시설개론                                 | 과목당 40문항(객관식)                   |
| 2차 시험 | ① 주택관리 관계법규(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br>② 공동주택 관리실무(시설·환경·회계관리 등) | 과목당 40문항<br>(객관식 60% + 주관식 40%) |

- 1차\*는 기존과 같이 절대평가 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

\* (1차 : 절대평가) 매 과목 40점(100점만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2차 : 상대평가) 매 과목 40점(100점만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 해당 연도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

- 선발예정인원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단지 수 및 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현황, 시험위원회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법 제67조 제5항)

## 문제점

### 동점자 처리기준 등 상대평가 전환에 따라 요구되는 필수적인 행정처리기준 부재로 응시자의 예측가능성과 합격자 결정과정의 투명성 저해 우려

- ◆ 합격자 결정시 동점자 처리기준 부재
  - 일정 점수 이상자 전원 합격에서, 선발예정인원 범위내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 득점서열 내 또는 합격 컷트라인 점수에 다수의 동점자 발생으로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처리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시험시행 기관이 자의적으로 합격기준을 정할 가능성이 있고,
  - 이 과정에 특정인에 유리한 기준(특정 과목 점수 순 등)이나, 불합리한 차별적 기준(성별·연령 순 등)이 적용될 우려가 있음
- ◆ 선발예정인원에 대한 사전 공개규정 부재
  - 선발예정인원은 시험 응시 여부 등 판단에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응시예정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시험 시행 전에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합당
  - 특히, 선발예정인원 규모에 따라 합격 컷트라인 점수가 정해짐에 따라, 외부 공개 없이 행정청 내부적으로 사후에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할 경우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한 로비 등 부패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 [참고] 관련보도

### ● 금감원, 조직적 채용비리, 선발인원 늘리고 출신 조작하고 ('17.9.20, KBS뉴스)

- 금감원은 '15년 9월에 '16년도 신입직원 53명 채용 계획을 공고
- 그러나, 금감원 전 A 총무국장이 지인으로부터 경영학 분야 지원자 B씨의 채용을 부탁받자 담당 팀장에게 해당 분야 선발인원을 3명 더 늘리라고 지시했고 결국 B씨는 합격

## ◆ 선발예정인원 미달 발생 시 처리기준 부재

- 당초 「주택법」 개정검토 당시(’15), 주택관리사보의 과다 배출 등 수급조절 실패와 과당 경쟁에 따른 근로환경 저하 등을 이유로 선발예정인원 범위내 상대평가 방식이 도입되었으나,

\* 제도 초기(’90) 상대평가 선발에서 취업·고용 향상 등을 위해 ’98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 ’06년부터는 응시기회 확대를 위해 시험횟수도 격년에서 매년 시행으로 변경

\* ’10년부터 ’13년까지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1,274개 증가한 반면, 시험 합격자는 단지 증가 수의 약 8배에 달하는 9,963명이 증가 (출처 : ’15. 4 국회 국토위 검토보고서)

- 매년 회차별 문제 난이도에 따라 합격률 편차가 크고, 합격인원 또한 많게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합격기준 기본점수\* 득점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명확한 처리기준이 필요함에도,

\*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

## &lt; 최근 5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현황(2차시험 기준) &gt;

| 회차         | 응시자(a) | 합격자(b) | 합격률(b/a) |
|------------|--------|--------|----------|
| 제15회(’12년) | 14,922 | 1,473  | 9.87%    |
| 제16회(’13년) | 13,656 | 2,407  | 17.62%   |
| 제17회(’14년) | 15,643 | 2,049  | 13.09%   |
| 제18회(’15년) | 14,428 | 1,928  | 13.36%   |
| 제19회(’16년) | 15,701 | 2,288  | 14.57%   |

출처 : 국토교통부

- 다른 국가자격시험\*과는 달리, 이에 대한 처리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행정청이나 시험시행기관이 별도 공개 없이 이에 대한 합격자 결정 기준을 사후에 결정할 소지가 있음

\*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대부분의 국가자격시험에서는 합격기준 기본점수 득점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 시 기본점수 완화 적용기준을 법령에 명시하여 운영 중

- 주택관리사보의 경우 또한 필요 공동주택단지 수, 취업현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하는 ‘선발예정인원’이 적기에 시장에 배출될 수 있도록 유사 국가자격시험과 동일한 기준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합격자 결정기준에 동점자 처리기준 명시

- 다수의 동점자 발생으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동점 득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 ◆ 선발예정인원 사전 공개

- 시험장소·방법 등 시험시행 90일전 공개항목에 ‘선발예정인원’을 포함

## ◆ 합격기준 기본점수 득점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 시 이에 대한 처리기준 명시

- 연도별 필요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기본점수 기준 완화 적용

※ 단, 미달 시에 대한 별도의 처리기준이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사전 공고된 해당 연도 선발예정인원을 채우지 아니하고 기준점수 이상인 인원만을 합격자로 결정함을 명시

## 개선결과

##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17호, 2018.1.30., 일부개정]

**제75조(시험합격자의 결정)** ① 법 제67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제1차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
2. 제2차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법 제67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선발예정인원(이하 “발예정인원”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67조제5항 후단에 따라 제2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 2020.1.1.]

**제76조(시험의 시행·공고)** 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선발 예정인원, 합격자 결정기준 및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0.1.1.]

## 2. 부과·징수 업무

### 사례1 산지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평가대상 조문

#### 별표 8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세부기준 (제40조의2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6개월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생략)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채석중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채석중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다만,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생략)

2) 감경사유

가)~다) (생략)

라) 위반행위자가 석재산업이나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최근 3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행정처분의 기준 |    |    |    |
|----------------------------------------|------------|----------|----|----|----|
|                                        |            | 1차       | 2차 | 3차 | 4차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호 | 허가취소     |    |    |    |

(이하 생략)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현황

◆ **별표 8**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제1항은 제31조제2항에 따른 허가 취소 기준과 가중·감경사유 규정

◆ 「산지관리법」 제31조제1항 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취소’하거나 ‘중지’사유에 해당함을 규정

#### 산지관리법

**제3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등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8.(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제점

- ◆ 감경사유 ‘위반행위자가 석재산업이나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감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라는 것이 구체적인 조건없이 처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지역별로 상이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음. 또한 선의가 아니라 행정처분의 감경을 고려하여 강제 기부나 부패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 법 31조 1항 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
  - 허가취소 사유에도 불구하고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두고 있음.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행정처분 감경 사유 개선
  - 자의적이거나 상이한 차별적 해석, 사전에 감경을 고려한 부패행위에 대해 사전 차단 필요
- ◆ 당연취소 사유 법 개정시 반영
  - 법 제31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는 당연취소로 향후 법 개정시 반영

### 개선결과

-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88호, 2017.6.2., 일부개정]

#### 별표 8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세부기준 (제40조의2 관련)

##### 1. 일반기준

가. ~ 나. (생략)

다. .... 그 처분이 채석중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채석중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생략)

2) 감경사유

가)~다) (생략)

라) (삭제)

마) 최근 3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사례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평가대상 조문

#### 별표 8 <신설>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제25조의22 관련)

##### 1. 일반기준

가~다. (생략)

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업무정지를 최근 2년간 2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한다.

마. (생략)

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
|---------------------------------|------------------|------------|----|----|----|
|                                 |                  | 1회         | 2회 | 3회 | 4회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8조16의 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
|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18조16의 제1항제2호 | 지정 취소      |    |    |    |
| 다~사. (생략)                       |                  |            |    |    |    |

### 평가기준

-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 현황

- ◆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제도 도입에 따라 인증표시 및 인증취소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5조의22관련)을 [별표8]과 같이 신설
  - 일반기준에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업무정지를 최근 2년간 2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한다”고 규정
  - 위반행위의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지정취소인 경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6(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문제점

#### 강행규정으로 정한 지정취소를 경감하여 제재의 실효성 약화

- ◆ 법에서 정한 당연취소 사유를 시행규칙에서 경감 가능
  - 법(제18조의16)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한 당연취소 행위를 시행규칙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재의 실효성 약화 및 담당공무원 로비 등 부패발생 우려
- ◆ 시행규칙에서 강행규정으로 지정취소하고 동시에 경감 가능
  - 일반기준 라목에서 3회 업무정지 위반의 경우는 지정 취소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바목에서 6개월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 약화
- ◆ 자의적인 감경사유로 인한 특혜 발생 우려
  - “특별한 사유”에 대한 예시·열거규정이 없어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재량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인정하여 감경할 우려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① 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한 당연취소 행위 경감 제외
- ② 일반기준 라목과 바목의 합리적인 조정
- ③ 행정처분의 경감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8호, 2017.9.22., 일부개정]

## 별표 8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제25조의22 관련)

## 1. 일반기준

가. ~ 다. (개정안과 같음)

라. 업무정지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정지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 최근 2년간 복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총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한다.

바. 품질인증기관이 지역사무소 또는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위반한 지역사무소나 지사를 대상으로 처분을 하고, 해당 인증기관에 대해서도 지역사무소나 지사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되, 기준을 위반한 사무소 또는 지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처분을 받는 사무소 또는 지사의 처분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한다.

사.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다음 1)부터 3)까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법 제18조의16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품질인증기관으로서 모범적으로 기관 운영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사례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평가대상 조문

## 별표 11 행정처분의 기준 (제31조제1항 관련)

## 1. 일반기준

가. ~ 라. (생략)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 (1) 사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2) 사업폐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3)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
|-------------------------------------------------|-------------|--------|------|------|------|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4차위반 |
| 1 ~ 4 ( 생 략 )                                   |             |        |      |      |      |
| 5.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경우                                |             |        |      |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br>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br>경우 | 법 제39조의3제2항 | 지정취소   |      |      |      |
| 나., 다. ( 생 략 )                                  |             |        |      |      |      |
| 라.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br>니하는 경우                 | 법 제39조의3제2항 | 지정취소   |      |      |      |
| 6. ~ 8. ( 생 략 )                                 |             |        |      |      |      |

## 평가기준

-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현황

- ◆ 개정안은 노 인복지시설에서 시설 종사자 매년 건강진단 시행과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서비스 제공기관의 조리원 배치 기준 완화 등 관련 규정 개정(별표3~별표10)
  - 그 외 별표11의 행정처분기준에서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39조의3 제2항)에서 당연취소로 정한 사유도 경감하도록 규정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②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문제점

- ◆ 법에서 정한 당연취소 사유도 경감하는 것은 제재의 실효성 약화 우려
  - 법(제39조의3 제2항)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한 당연취소 행위를 시행규칙에서 경감하는 것은 제재의 실효성 약화와 감경을 위한 로비 등 우려
- ◆ 자의적인 경감사유로 인한 특혜 발생 우려
  - “특별한 사유”에 대한 예시·열거규정이 없어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재량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인정하여 감경할 우려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lt;향후 개정사항&gt;

- ① 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한 당연취소 대상 감면제외
- ② 행정처분의 경감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예시】행정처분 경감사유 구체화 등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 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수정, 변경 등 새로운 방향 제시 가능

| 현 행                                                                                                                                                                                                                                                                                                                                                | 개선의견(예시)                                                                                                                                                                                                                                                                                                                                                                                                                                                                                                                                                                                      |
|----------------------------------------------------------------------------------------------------------------------------------------------------------------------------------------------------------------------------------------------------------------------------------------------------------------------------------------------------|-----------------------------------------------------------------------------------------------------------------------------------------------------------------------------------------------------------------------------------------------------------------------------------------------------------------------------------------------------------------------------------------------------------------------------------------------------------------------------------------------------------------------------------------------------------------------------------------------|
| <b>별표 11</b><br><b>행정처분의 기준</b> (제31조제1항 관련)<br><br>1. 일반기준<br>가. ~ 라. ( 생략 )<br>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 기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br>(1) 사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br>(2) 사업폐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br>(3)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br><br>< 신 설 ><br><br>< 신 설 > | <b>별표 11</b><br><b>행정처분의 기준</b> (제31조제1항 관련)<br><br>1. 일반기준<br>가. ~ 라. ( 현행과 같음 )<br>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횟수, 내용 등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br>(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0년이상 해당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br>(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br>(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br>(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br><br>바. 행정처분권자는 마목에 따라 처분을 감경할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br>(1) 사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br>(2) 사업폐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br>(3)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 법 제39조의3 2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유사 입법례】

##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별표 8

## 행정처분기준 (제20조 및 제30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나. (생략)

다.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행정처분권자는 다목에 따라 처분을 감경할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 1) 사업정지 또는 제한의 경우: 그 처분일 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 2) 허가취소의 경우: 6개월의 사업정지 또는 제한

마. 행정처분권자는 행정처분 전에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권고 기간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2호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바. 행정처분권자는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

## 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 (제22조 관련)

1. 법 제4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의 기준  
가. 일반기준

(5)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감경 기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영화업자로서 모범적인 영업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 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8.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

## ③ 골재채취법 시행령

## 별표 1의4

**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제32조의2 관련)

## 1. 일반기준

가.~나. (생략)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골재채취중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골재채취중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가중사유

가) ~ 나) (생략)

##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단기간 내에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골재산업이나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바) 골재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1조(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골재채취를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

6. 제30조 및 이 조에 따라 채취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채취중지 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경우

## 사례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평가대상 조문 2

별표 14의6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42조제9항 관련)

##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법 제42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 2. 위반사항별 세부 처분기준(생략)

## 평가기준

-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현황

- ◆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17.3.)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절차 등을 동 개정안에 규정(별표14의6)

## ● 「가축전염병 예방법」 관련 조문

제42조(검역시행장) ⑦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시행장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았을 때

2.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⑨ 제7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문제점

- ◆ 법자의적인 경감사유로 인한 특혜 발생 우려
  - 별표 14의 6 일반기준 다목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예시 규정이 없어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재량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감경할 소지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행정처분의 경감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특별한사유’ 규정을 다른 예시조항으로 수정
    - 예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7호, 2017.9.25., 일부개정]

## 별표 14의6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42조제9항 관련)

## 1. 일반기준

가. 나. (생략)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본다.

## 3. 수리·통지 업무

## 사례 1 소방시설공사업법

## 평가대상 조문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소방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 ◆ 예측가능성

현황

- ◆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자의 요건 및 지위 승계시 관계 기관 신고절차 관련한 위임조항 등을 동 개정안에 규정
  - 수리를 요하는 소방시설업 지위승계 신고 관련하여 신고 수리기한 등의 조항은 미규정
    - ※ 동 개정안 중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및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에 대하여는 신고 수리기한 등의 규정을 신설

●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조문

**제13조(착공신고)**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공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문제점

- ◆ 평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처리기한 등의 부재시 업무 담당자의 민원처리 자의적 운영 및 신고인의 예측가능성 저해

검토결과: 개선권고

- ◆ 신고 수리 처리 기한 및 수리 간주규정 마련
  - 처리 기한을 명시하고, 일정한 기간내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 미통지시 자동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반영

【법령안 예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수정, 변경 등 새로운 방향 제시 가능

| 개정안                                                                                                                           | 개선 의견(예시)                                                                                                            |
|-------------------------------------------------------------------------------------------------------------------------------|----------------------------------------------------------------------------------------------------------------------|
|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br>① ~ ② 생략                                                                                                 |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br>① ~ ② 개정안과 같음                                                                                   |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_____<br>_____<br>_____ <후단 삭제>                                                                                    |
| <신설>                                                                                                                          | ④ 시도지사는 제①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①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신설>                                                                                                                          | ⑤ 시도지사가 제①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제①항에서 정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 【유사 입법례】

##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의2(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그 영업시설의 전부를 양수한 자는 종전의 건설기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 건설기계사업자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 양곡관리법

제19조의2(양곡가공업의 승계)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4. 지정 / 위탁·대행 업무

## 사례 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평가대상 조문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 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선수금”이라 한다)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의 가격·면적·위치·상태·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해당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 예측가능성

## 현황

## ● 개정이유

–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시행자의 사업초기 자원조달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선수금제도'가 법에 도입('16.12.27. 법률개정)됨에 따라, 하위 시행령에 그 요건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

※ 마리나 항만 : 마리나선박(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만구역

- ◆ 법 제13조의2에서는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등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개정령안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만 선수금을 받도록 하는 등 선수금 수령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

## 문제점

- ◆ 법률에서 위임한 선수금 승인 절차 등과 관련한 세부내용 미흡
- 법 제13조의2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기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개정안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승인 기준, 절차·방법(제출서류 등) 등 승인을 받기 위한 세부 규정이 부재하여, 선수금을 받고자하는 사업시행자의 예측가능성 저해

## 검토결과: 개선권고

- ◆ 선수금 승인 기준·절차·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 구체화

## 개선 결과

-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166호, 2017.6.27., 일부개정]

## 제19조의2(선수금) ①~② (생략)

③ 사업시행자(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수금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사례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평가대상 조문

####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①~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는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하며, 비용 산정 및 징수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평가기준

-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예측가능성

### 현황

#### ● 개정이유

정부가 직접생산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가수요가 발생하여 필요 이상의 행정비용을 유발하게 됨에 따라, 신청기업이 직접생산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생산 확인 신청 업체에 징수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

- ◆ 중소기업청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 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기업청공고 제2017-209호)

-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 제2016-71호)

### 참고(직접생산확인절차)

#### ● 기존

|                                   |               |                 |    |           |
|-----------------------------------|---------------|-----------------|----|-----------|
| 중소벤처기업부                           | 위탁            | 중소기업중앙회         | 신청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 →             | 직접생산확인 및 증명서 발급 | →  | 직접생산 확인요청 |
|                                   | 직접생산확인비용 예산지원 |                 | 발급 |           |

#### ● 금번개정

|                                  |    |                 |           |           |
|----------------------------------|----|-----------------|-----------|-----------|
| 중소벤처기업부                          | 위탁 | 중소기업중앙회         | 신청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 →  | 직접생산확인 및 증명서 발급 | →         | 직접생산 확인요청 |
|                                  |    |                 | 발급 및 비용청구 |           |

### 문 제 점

- ◆ 직접생산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해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해 되고,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으로 자의적 권한행사 및 특혜발생 가능성 존재

### 검토결과: 개선권고

#### 【금번 시행규칙 개정 시 반영 사항】

- ◆ 비용징수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중소기업청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개선 결과

-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호, 2017.11.16., 일부개정]

####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①~④ (생략)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는 직접 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 산정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사례 3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시행령

### 평가대상 조문

#### 제11조의2(장애인기업 확인 등) ①~④ (생략)

- ⑤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한 기업이 장애인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생략)

### 평가기준

- ◆ 접근의 용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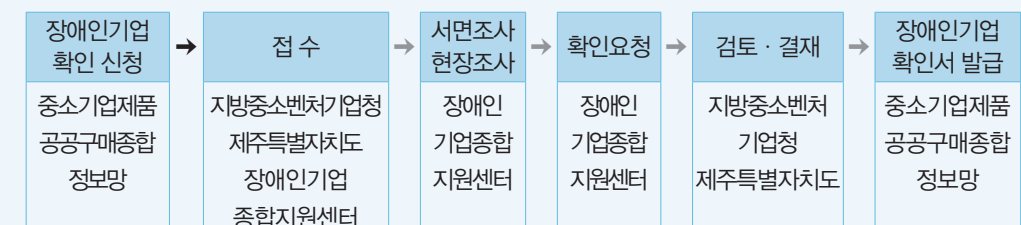
### 현황

#### ● 개정이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18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 등), 제18조의3(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제18조의4(보고와 검사) 등 법에서 위임한 장애인기업확인에 관련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서는 장애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 활동 기회가 우선되도록 보장  
※ 장애인의 창업지원, 자금지원우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경영능력 향상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 세제 지원 등

### 참고(장애인기업 확인절차)



문 제 점

◆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나,  
– 장애인기업 확인에 필요한 절차만 규정할 뿐, 장애인기업이 아닌 것으로 통지할 경우 이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가 부재하여 공정성확보 저해

검토결과: 개선권고

[추후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사항]

◆ 확인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조항 마련

[시행령안 예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수정, 변경 등 새로운 방향 제시 가능

| 개정안  | 개선의견(예시)                                                                                                                                                                                                                                                                                      |
|------|-----------------------------------------------------------------------------------------------------------------------------------------------------------------------------------------------------------------------------------------------------------------------------------------------|
| 〈신설〉 | <b>제00조(장애인기업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등)</b><br>①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장애인기업확인 여부의 확인 통보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 또는 전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br>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③ 이의신청의 절차,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참고 입법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제9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통보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 또는 전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의 절차,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인삼산업법

**제17조의6(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한 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재검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사례 4 방위사업법

### 평가대상 조문

#### 제26조(표준화) ① ~ ② (생략)

③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 규격의 제정 및 개정, 군수품 목록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국방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하며,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출연금을 지급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품목의 지정 또는 해제, 군수품 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에 따른 관리, 국방표준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의 지정 절차 및 운영과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가기준

-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누수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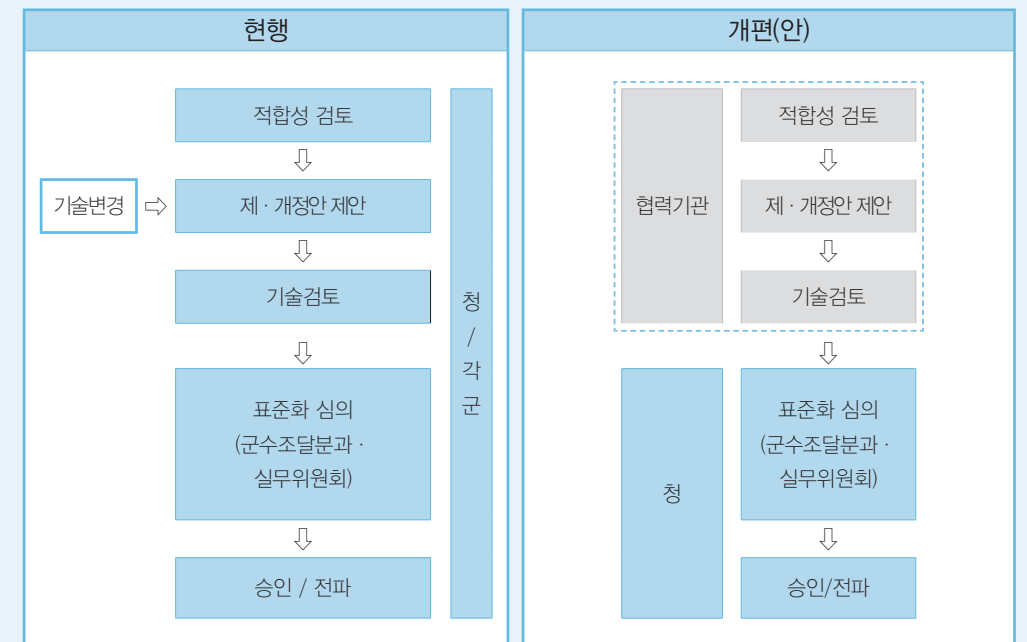
### 현황

- ◆ 개정안은 국방표준개발 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 전문적 기술관리가 필요한 군수품 규격관리업무(운영유지단계)와 단순 정형화된 군수품 목록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하고, 지정된 기관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 － 현재 군수품규격관리기관(각군 및 방위사업청)이 군수품 규격 관리 및 목록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군수품 규격의 방대함과 첨단장비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전문성 제한 등으로 규격관리 업무의 한계 증가

### <국방 표준화 주요 업무내역>

| 업무구분     | 내용                                                                                    |
|----------|---------------------------------------------------------------------------------------|
| 품목지정     | 군수품 중 장비로 분류되는 품목에 대해 표준품목, 제한표준품목, 시용품목, 비표준품목, 상용품목으로 분류 지정하는 것                     |
| 규격화      | 국방규격을 제·개정 하고, 관련정보 등을 관리(최신화)하는 일련의 과정                                               |
| 형상관리     | 품목의 기능적 또는 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문서화, 특성에 대한 변경통제, 형상식별서와 제품의 합치여부 점검, 승인된 형상변경 이행현황 등 관리하는 활동 |
| 목록화      | 표준화된 체계와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보급품에 대한 분류 및 식별, 품명 및 재고번호, 특성 및 관리자료 작성하는 과정                    |
| 민·군규격표준화 | 국방규격을 민수규격(KS 등)으로 전환·통합하는 사업                                                         |

### <방규격관리업무 운영체계>



\* 위임 대상업무 : 규격서(6,972종), 도면(38만 종) 등 전체 국방규격의 88%

문 제 점

- ◆ 협력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
  -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국방규격의 적합성 검토, 제·개정안 작성 등 국방표준 개발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군수품의 조달 및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협력기관의 업무는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되어야 하나,
  - 개정안에는 협력기관의 지정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고, 제재규정이 없어 협력기관의 책임성 확보에 미흡
- ◆ 지정 취소 시 협력기관의 권리구제 수단 부재
  - 지정 취소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어 규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협력기관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 개정안에는 협력기관 지정 취소 시 권리구제 수단이 없어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확보에 미흡
- ◆ 출연금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 규정 부재
  - 출연금의 환수는 부정행위, 목적 외 사용 등을 사유로 대상기관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 처분으로써 그 근거는 법률에서 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을 받아 하위법령에 규정해야 하나,
  - 개정안에는 출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부당한 특혜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발생 가능
    - ※ 협력기관 관련 사업은 법 제58조(부당이득 환수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정지원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 미비

검토결과: 개선권고

- ◆ 협력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 신설
- ◆ 지정 취소 시 청문절차 규정 마련하여 의견진술 기회 보장
- ◆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환수규정 마련

【예시】

| 개정안                                                                                                                                                                                                                                                                                                                                                                                          | 개선의견(예시)                                                                                                                                                                                                                                                                                                                                                                                                                                                                                                                                                                                                                                                                          |
|----------------------------------------------------------------------------------------------------------------------------------------------------------------------------------------------------------------------------------------------------------------------------------------------------------------------------------------------------------------------------------------------|-----------------------------------------------------------------------------------------------------------------------------------------------------------------------------------------------------------------------------------------------------------------------------------------------------------------------------------------------------------------------------------------------------------------------------------------------------------------------------------------------------------------------------------------------------------------------------------------------------------------------------------------------------------------------------------|
| <p><b>제26조(표준화) ① ~ ② (생략)</b><br/>③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 규격의 제정 및 개정, 군수품 목록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국방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하며,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출연금을 지급한다.<br/>〈신 설〉</p> <p>⑤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품목의 지정 또는 해제, 군수품 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에 따른 관리, 국방표준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의 지정 절차 및 운영과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신 설〉</p> | <p><b>제26조(표준화) ① ~ ② (현행과 같음)</b><br/>③ .....<br/>.....<br/>.....<br/>.....<br/>.....<br/>④ 방위사업청장은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br/>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br/>2. 협력기관의 대표 및 임원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br/>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br/>4.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br/>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br/>.....<br/>.....<br/>.....<br/>.....<br/>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지정취소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⑥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협력기관의 지정을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b>제00조(출연금의 환수)</b> 방위사업청장은 협력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br/>1. ....<br/>2. ....<br/>3. ....</p> |

※ 본 평가서 [예시]의 개선의견안은 해당 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수정, 변경 등 새로운 방향 제시 가능

## 【유사 입법례】

## ● 산업표준화법

##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① ~ ② &lt;생략&gt;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산업표준 개발인력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4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산업표준 개발을 하지 아니한 때

⑥ 그 밖에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청문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와 제5조제5항에 따라 협력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업등의 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가족친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때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때

④ ~ ⑤ <생략>

제21조(청문)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산·학·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지원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1. ~ 7.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학교·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동일한 참여 제한 사유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 제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 제한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6.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7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9. 그 밖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 ④ <생략>

**제32조(출연금의 환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학교·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환수 기준 및 절차,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농촌진흥법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농업인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 6. <생략>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촌진흥청장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평가에서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비를 정당한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사례 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평가대상 조문

**제17조(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도 및 기술의 조사·연구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한 통계의 조사·분석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가공·분석 등 활용 지원  
4. 제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과제의 관리에 관한 업무지원  
5. 제12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에 관한 업무지원  
6. 제20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지원활동 지원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③ 정부는 전문기관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기준

◆ 재규정의 적정성

현 황

- ◆ 제정안은 공공기관이 국가사회 현안에 대한 최적화된 대책 마련,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제정안 제17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도, 및 기술의 조사·연구 등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업무를 지원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문 제 점

- ◆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부재
  -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지정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으며,
  - 데이터 수집·가공·분석 등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지정기준에 부합되지 못했을 때 처분기준이 없어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 우려

검토결과: 개선권고

- ◆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지정취소 등 제재규정 신설

【개선예시】

| 제정법률(안)                                                                                                        | 개선의견(예시)                                                                                                                                                                                                                                                                                                                                                                            |
|----------------------------------------------------------------------------------------------------------------|-------------------------------------------------------------------------------------------------------------------------------------------------------------------------------------------------------------------------------------------------------------------------------------------------------------------------------------------------------------------------------------|
| <b>제17조(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b><br>① ~ ③ (생략)<br>〈신설〉<br><br><br><br><br>④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b>제17조(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b><br>① ~ ③ (생략)<br>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0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br>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br>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br>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br>4. _____<br>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br><br>⑥ (제정안 ④항과 같음) |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 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 【유사 입법례】

## ● 경제교육지원법

**제13조(지정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례 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평가대상 조문

- 제7조(주치의 교육)** ① 주치의로 등록하고자 하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하는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의사의 정보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치의 교육업무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 의료센터, 관련 전문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 평가기준

- ◆ 공개성

## 현 황

- ◆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 규정하기 위하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정
- ◆ 중증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도입(법 제16조 제1항)
  -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병원 또는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함
  - 주치의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법 제16조 제2항)

문 제 점

- ◆ 주치의 교육과정에 관한 공개성 미흡
  - 주치의 제도는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건강문제를 겪고 있으며,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더 절실한 장애인의 건강권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나
  -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주치의 교육과정’이라는 규정만으로는 주치의 등록을 위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행정의 공개성 저하

검토결과: 개선권고

- ◆ 교육에 관한 세부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선

【예 시】

※ 본 평가서 [예시]의 개선의견안은 해당 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수정, 변경 등 새로운 방향 제시 가능

| 제정법률(안)                | 개선의견(예시)                                                                                   |
|------------------------|--------------------------------------------------------------------------------------------|
| 제7조(주치의 교육) ① ~ ③ <생략> | 제7조(주치의 교육) ① ~ ③ <제정령안과 같음><br>④ 주치의 교육과정, 실시방법,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유사 입법례】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노후준비서비스 교육과정)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 과정을 2년마다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교육훈련 과정 (제6조제1항 관련)

1. 교육 과목 구성

| 과목      | 주요 내용                                                                  | 교육 시간(단위: 시간) |        |       |    |    |
|---------|------------------------------------------------------------------------|---------------|--------|-------|----|----|
|         |                                                                        | 합계            | 이러닝 교육 | 소집 교육 |    |    |
|         |                                                                        |               |        | 소계    | 이론 | 실습 |
| 계       |                                                                        | 65            | 33     | 32    | 16 | 16 |
| 노후준비 총론 | 노후준비의 필요성 및 노후준비 진단지표<br>생애전환기에 대한 이해<br>상담에 대한 이해<br>노인의 심리·사회적 특성 변화 | 13            | 11     | 2     | 2  | -  |
| 재무설계    | 노후소득보장 일반<br>3층보장체계<br>금융상품에 대한 이해<br>개인신용 관리 및 부채 관리                  | 20            | 10     | 10    | 4  | 6  |
| 건강설계    | 노후 건강생활의 이해<br>의료보장제도 및 노인장기요양제도<br>노인복지서비스 이해                         | 8             | 4      | 4     | 2  | 2  |
| 여가설계    | 여가의 개념과 특성<br>노후의 여가생활<br>사회활동서비스                                      | 6             | 2      | 4     | 2  | 2  |
| 대인관계 설계 | 부부관계 및 사회적 관계<br>노후 대인관계 상담사례                                          | 7             | 3      | 4     | 2  | 2  |
| 경력관리 설계 | 노년기 일의 의미와 실태<br>노인일자리 정책                                              | 5.5           | 1.5    | 4     | 2  | 2  |
| 주거설계    | 노후주거의 이해<br>노후주거 계획                                                    | 5.5           | 1.5    | 4     | 2  | 2  |

## 2. 이수 방법

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 과목 중 이러닝 교육 33시간 및 소집 교육 32시간을 각각 수강하여야 한다.

나. 수료 기준

| 이러닝 교육                                                                | 소집 교육                 |
|-----------------------------------------------------------------------|-----------------------|
| 교육 시간 중 90% 이상을 학습하고, 과제 및 시험 등 평가항목을 합산한 점수가 총점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인 경우 | 교육시간 중 90% 이상을 출석한 경우 |

다. 보유 자격에 따른 이러닝 교육 중 면제받을 수 있는 과목

| 보유 자격                             | 교육 과목     |
|-----------------------------------|-----------|
|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 - 노후준비 총론 |
| - 한국재무설계사(AFPK)<br>- 국제재무설계사(CFP) | - 재무설계    |
| - 보건교육사                           | - 건강설계    |
| - 생활체육지도사                         | - 여가설계    |
| - 건강가정사                           | - 대인관계설계  |
| - 직업상담사                           | - 경력관리설계  |

##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직무교육 교육과정 등)** ①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교육과정은 가축방역행정과정과 임상실습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교육과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방역행정과정 : 가축방역정책, 가축방역 관계법령, 가축방역 관련 전문수의학 그 밖의 가축방역행정 및 소양에 관한 과목

2. 임상실습과정 : 가축전염병의 예찰·예방 및 진료와 축산물 위생검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실습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교육과정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방역행정과정 : 2주 이내

2. 임상실습과정 : 6주 이내. 다만,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임상실습과정은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④ 직무교육의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그 밖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5. 심사·심의·위원회 업무

## 사례 1 의료법

## 평가대상 조문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 한다.

⑥. ⑦ (생략)

##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 현황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 「의료법」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대한 규정 보완 필요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

●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의 대상을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운영근거 및 자문위원 비밀누설금지, 서약의무부과 근거를 마련**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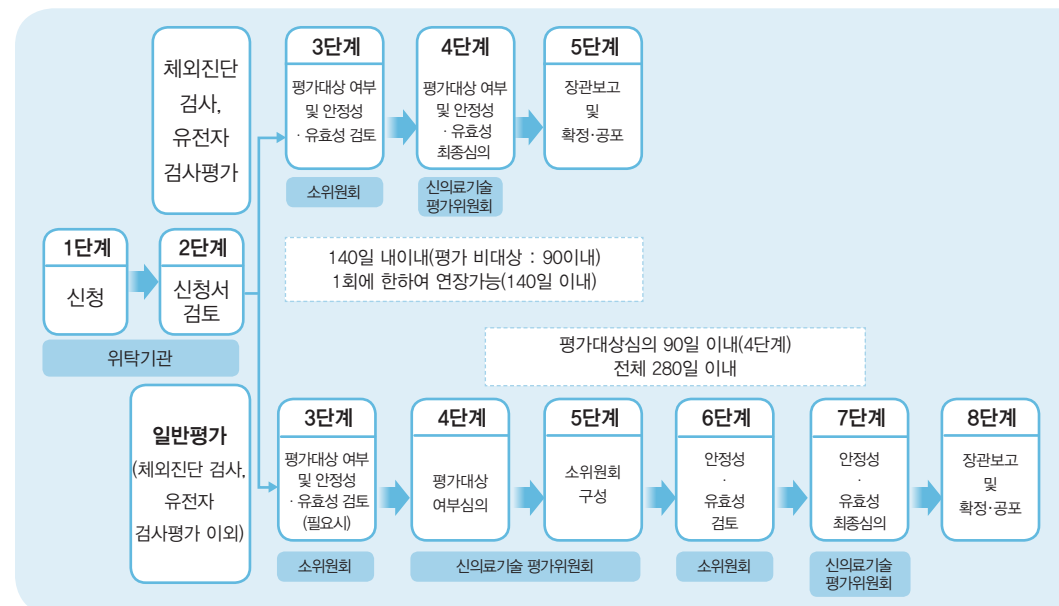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에 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기술평가

- ◆ 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이해충돌방지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
  - 위원의 제척·회피, 비밀누설금지 및 서약의무, 위원의 해촉 등 이해충돌가능성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음.

### 관련 보도 사례

- **신청기관과 동일법인 소속위원이 자문·평가한 ‘신의료기술적발’** <쿠키뉴스, '17. 7. 4.>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보건의료연구원의 2016년도 신의료기술평가위원의 제척·회피 관리현황 분석에서 ‘(통합심사)호흡기바이러스 종합효소연쇄반응’은 해당 의료기기의 품목허가관련 임상기관이 A임에도 동일 법인 소속의 위원 2명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제척 기피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평가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심사위원-업체간 유착? ‘신의료기술평가제도’알고보니** <국민일보, '14. 10. 17.>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한 정부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사실은 심사위원과 업체 간 유착이 심각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연구개발자에 의해 새롭게 개발된 치료재료가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가로막혀 사장될 위기에 처해.. 심사위원과 업체 간 유착때문이라는 녹취록 정황이 나오고 있다.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평가절차



### 문제점

- ◆ 평가위원의 연임횟수 제한이 없어 무제한 연임 및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상존
  - 신의료기술 평가위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나, 상위 법률에 연임제한이 없음
  - 특정인이 연임될 경우 위원직의 장기 독식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기회 제한, 장기 재직하는 특정위원에 대한 관련 업체의 로비 및 유착 등 부패발생 가능성 증가

### 검토결과: 개선권고

#### 【법률 개정 시 반영 사항】

- 위원의 연임가능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

#### 【법령 예시】

##### ● 연임횟수 제한 관련

※ 본 평가서의 개선권고 [예시]는 소관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므로, 개선취지의 반영을 전제로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음

| 개정안                                                                                                                                | 개선 의견(예시)                                                                                                                                |
|------------------------------------------------------------------------------------------------------------------------------------|------------------------------------------------------------------------------------------------------------------------------------------|
| <b>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b><br>① ~ ③ (생략)<br>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br>⑤ ~ ⑦ (생략) | <b>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b><br>① ~ ③ (생략)<br>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⑤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br>⑤ ~ ⑦ (생략) |

## 【참고 입법례】위원회 위원 연임횟수 제한 관련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3. 기록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8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각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사례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평가대상 조문

**제42조의2(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2조의2에 따른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이하 "부과제도개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국세청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1명씩 지명하는 사람
2. 관계 전문가로서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9명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1명
- ④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평가기준

- ◆ 이해충돌가능성

## 현 황

-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단계적 개편 추진을 위해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7.4.18)되면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 －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행령에 위원회의 위원구성, 위원해촉, 회의 소집 등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

###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기능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①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도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입자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 제 점

- ◆ 새롭게 시행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부과 개선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정부위원은 관련부처의 고위공무원으로서 위촉하면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위원 자격을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9명’으로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규정
  - 위원의 구성이나 운영방향이 전문성 있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가능성 확보 부족과 특정분야의 위원이 위촉되어 객관성 저해할 우려
- ◆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으나, 연임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위촉위원의 무제한 연임 가능
  - 특정인이 연임될 경우 위원직의 장기 독식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기회 제한 및 이해충돌 가능

### 검토결과: 개선권고

#### 【법률 개정 시 반영 사항】

- ◆ 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구체화
  - 보다 공정하고 대표성 있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요건의 구체화 필요
    - ※ 법령 입안·심사 기준(법제처) : 위원의 자격 요건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원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해당 분야 업무 특성을 반영한 요건 명시
- ◆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필요
  - 위원의 연임을 제한함으로써 위원이 장기간 재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

### 개선 결과

-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93호, 2018.3.6., 일부개정]

**제42조의2(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2조의2에 따른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④ (생략)

⑤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및 국세청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1명씩 지명하는 사람
2. 보험료 부과체계, 조세, 주택, 금융 또는 연금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9명 이내
3.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⑥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제5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제5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6. 지원·보상 업무

### 사례 1 해양경비법 시행령

#### 평가대상 조문

**제7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포상을 하는 경우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따로 정한다.

#### 평가기준

- ◆ 예측가능성

#### 현 황

- ◆ 불법 외국어선을 나포 및 압송하는데 공로가 있는 경비함정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해양경비법」에 신설되었고, 포상의 방법 등을 하위 시행령에 위임
  - 법 제20조의2항에 국민안전처장관은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
  - ※ 그동안은 국민안전처 내부 훈령에 근거하여 포상금 지급업무를 수행

#### 《최근 3년간 포상금 지급현황》

(백만원)

| 구 분   | 합 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횡수(건) | 1,097 | 351   | 366   | 380   |
| 집행액   | 268   | 88    | 90    | 90    |

#### 「해양경비법」 관련 조문

**제13조(추적·나포)**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추적·나포(拿捕)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권의 행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1조에 따른다.

1. 제12조에 따른 해상검문검색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선박등
2. 해당 경비수역에서 적용되는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 조약을 위반하거나 위반 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확실시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선박등

**제20조의2(포상)**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문제점

- ◆ 포상의 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이 행정관청의 내부결재 등으로 운영되도록 규정\*하여 포상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
  - 별도 고시로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을 경우 자칫 업무 담당자의 자의적 재량권 행사와 포상대상자의 청탁이 발생할 가능성 농후

\* (제7조 제2항)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따로 정한다.

#### 검토결과: 개선권고

- ◆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을 별도 고시로 정하도록 개선

## 개선 결과

-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 해양경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344호, 2017.9.26., 일부개정]

**제5조의2(포상의 방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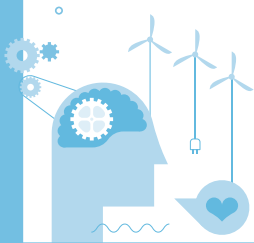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표창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3장

## 현행 자치법규 평가 사례

- 송·변전 설비·공항·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제1절 추진배경

제2절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제3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4절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제5절 권고대상 기관 및 조치사항

## 제1절 추진배경

### 관련 보도사례

#### ● 00지역 마을발전위원장, 역대 주민지원금으로 고급차 구입 등..[15.9월 언론보도]

– 마을발전위가 발주한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공사대금 8천만원을 부풀려 가로채는 등 2차례에 걸쳐 지원금 1억4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

- ◆ 정부는 전력사업, 폐기물 매립지 사업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제고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장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 실시
  - 대부분의 사업은 상위법령 등에 따라 추진하고 있고, 전력 기금, 보조금, 법정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공직유관단체 또는 지자체가 시행
    - ※ 공직유관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의 연간 재정 규모 : 약 3,500억원(최근 3년 평균)<sup>1)</sup>
- ◆ 그러나, 주민지원사업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장치가 미비하여 각종 부패, 예산 낭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특히, 상위법 등에 회계 투명성, 사업 관리·감독, 사업선정의 객관성 등을 담보하는 규정이 매우 부실
  - 사업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의 부재로 재정누수 발생
    - ※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소음 주변 지원사업의 재원인 착륙료를 별도계정으로 관리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이자수익금 약 8억 9백만원을 주민지원사업비에서 누락(17.3. 권익위 실태 조사)

– 주민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승인되어 현장에서 지출되는 등 사업관리 사각지대 발생

※ △△시 등 15개 지역에서 '16년 사업비로 적십자회비를 납부하는 건에 대하여 00공사에서 사업 승인을 하였고, 약 26백만원이 적십자회비로 납부(17.3. 권익위 실태 조사)

- ◆ 따라서, 각종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운영과정의 부패유발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재정 누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령 개선방안 마련

1) 공직유관단체 209개 서면조사 시 기관별 제출자료를 근거로 산정

## 제2절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 새정부 국정기조인 “국가예산 낭비 예방”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 방안 도출

#### 추진경과

- ◆ '16년도 청렴도측정 공직유관단체(209개) 대상 전수 서면조사 : '17. 1~2월
  - 한국수력원자력 등 15개 기관에서 주민지원 사업을 수행

#### 주민지원사업 실시 현황 (1차 서면조사 결과)

- 기관별 현황(15개 기관, 연평균 약 3,500억원 집행)

| 구 분           | 기관 명                      | 주요 법령     |
|---------------|---------------------------|-----------|
| 산업 분야(3개)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송전설비주변법령  |
| 국토·수자원 분야(3개)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공항소음방지법령  |
| 환경 분야(2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 폐기물시설축진법령 |
| 발전소 분야(7개)    | 남동발전 등 6개 발전사, 원자력환경공단    | 발전소주변지역법령 |

- ◆ 평가 대상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 '17. 3~6월

#### 평가대상 기관(18개) 선정

- 지원사업을 시행중인 1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된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매립지관리공사 등 3개 공직유관단체를 부패영향평가 대상기관으로 선정
- 사업계획 승인 등을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3개 주무부처와 한국공항공사로 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12개 지자체도 병행 평가
  - ※ 공항소음 주변지역 지자체(12) : 서울 양천구, 서울 구로구, 서울 강서구, 부천시, 김포시, 인천 계양구, 부산 강서구, 김해시, 여주시, 울산 북구, 울산 중구, 제주특별자치도

- ◆ 개선권고(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실시 : '17. 7~8월

## 2 주민지원사업 현황

### 개념

- ◆ 송·변전설비, 공항, 폐기물 매립시설 등의 설치로 예상될 수 있는 주변지역 거주 주민들의 각종 불이익에 대해 행해지는 재정지원

예 주민소득증대 지원, 주민복지증대, 각종 장학금, 마을 시설보수 등

### 주변지역 선정 예시

#### ● 공항소음 주변 영향 지역

- 국토교통부에서 항공기 소음영향도를 감안, 소음대책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  
※ 김포시 풍무동, 제주시 도두동, 울산시 송정동, 서울시 신월동 등

#### ● 수도권 폐기물처리 설치지역 주변 영향 지역

- 수도권매립지 공사가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와 주민지원협의체 협의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  
※ 인천광역시(오류동·왕길동·경서동 일부), 김포시(양촌읍 일부)

### 사업 현황 및 지원규모

- 개별법령에 따라 공직유관단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비를 지자체 등에 지원하여 주민지원사업 실시

### < 법령·기관별 사업 운영 현황 >

| 연번 | 근거 법령 <sup>2)</sup>            | 공직유관단체 <sup>3)</sup><br>(주무부처) | 해당시설                  | 주요 사업                   | 시행자                  |
|----|--------------------------------|--------------------------------|-----------------------|-------------------------|----------------------|
| 1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한국전력공사<br>(산업통상자원부)            | 송전선로<br>변전소           | - 장학금 지급<br>- 문화행사체험    | 공사                   |
| 2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 한국공항공사<br>(국토교통부)              | 공항<br>(김포, 김해 등)      | - 냉방시설 설치<br>- 복지 시설 지원 | 공사<br>지자체<br>(일부 매칭) |
| 3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수도권매립지<br>관리공사<br>(환경부)        | 폐기물 처리 시설<br>(수도권매립지) | - 환경개선 사업<br>- 장학금 지급   | 공사                   |

-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연간 약 1,500억원이 집행되며, 공항소음 주변지역 주민에 연간 약 420억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지원에 연간 약 160억원 집행

(단위 : 억원)

| 연번 | 기관 명           | 재원     | 연평균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1  | 한국전력공사         | 자체예산   | 1,510 | -     | 1,448 | 1,573 |
| 2  | 한국공항공사         | 국고보조   | 106   | 151   | 85    | 81    |
|    |                | 착륙료    | 318   | 405   | 363   | 186   |
| 3  | 수도권매립지<br>관리공사 | 반입 수수료 | 161   | 149   | 196   | 139   |

2) 이하에서는 관련 법령을 다음과 같이 지칭함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송전설비주변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항소음방지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3) 이하에서는 기관명칭을 다음과 같이 지칭함 : 한국전력공사는 '한전'으로, 한국공항공사는 '공항공사'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관리공사'로 함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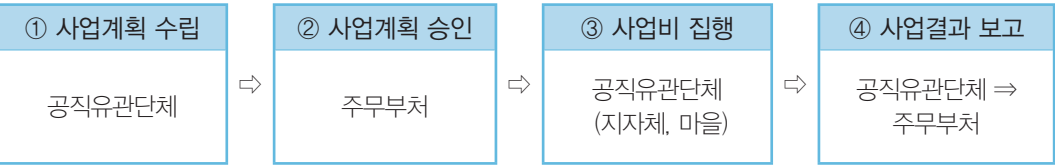
- ◆ 주무부처(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이 각각 법령에 따라 조성된 재원을 근거로 사업 시행·관리

< 업무 현황 >

| 기관별    | 주요 업무 내용                                                    |
|--------|-------------------------------------------------------------|
| 주무부처   | • 법령 제정·운영, 사업 계획 승인, 결산확인, 관리·감독 등                         |
| 공직유관단체 | • 사업계획 수립, 예산 집행 및 결산보고, 자체 정산 등                            |
| 지방자치단체 | • 지원금 수령 후 사업 집행<br>※ 공항소음 주변지역 지자체에 해당(김포시, 부천시 등 12개 지자체) |
| 주 민    | •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금 수령 후 집행                                     |

- ◆ 상위 법령에 따라 계획 수립·승인, 결산, 사업결과 보고 순으로 진행
  - 공직유관단체가 사업계획 수립 후 주무부처에 승인을 요청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 등을 거쳐 사업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

< 주민지원사업 추진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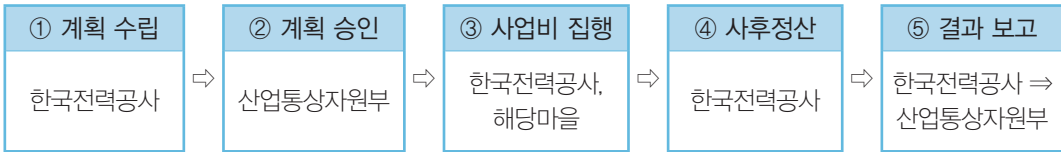
<참고> 주민지원사업 추진절차

분야별 현황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사업】

- ◆ 한전이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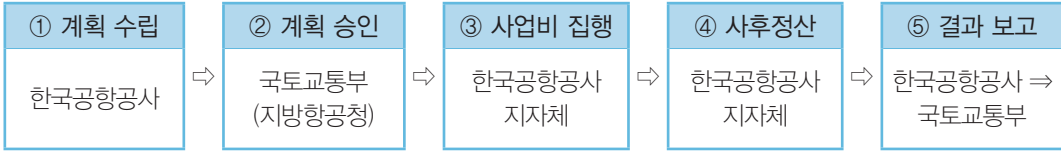
< 사업 추진 절차 >



【공항소음 주변지역 지원 사업】

- ◆ 공항공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일부 사업은 지자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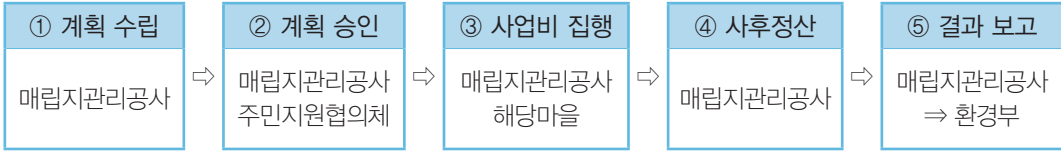
< 사업 추진 절차 >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

- ◆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결과를 환경부에 보고

< 사업 추진 절차 >



## 제3절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총평

송전설비, 공항,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현장실태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지원금 정산 등 집행관리, 관리·감독과 사후관리, 내부 부패 통제장치 등 3개 분야에 집중된 유사 부실사례가 확인되었기에 상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 도출

|                  | 문제점                                     | 개선방안                                                        | 대상법령                                      |
|------------------|-----------------------------------------|-------------------------------------------------------------|-------------------------------------------|
| 재<br>정<br>관<br>리 | 1. 사업비(착륙료)에 대한 이자 수익 누락으로 재정운용의 불투명 초래 | 1. 착륙료 이자수익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공항소음방지법                                   |
|                  | 2. 재정집행에 대한 통제수단 미비로 집행관리 부실 초래         | 2-1 구체적 정산절차와 장기 미집행건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br>2-2 목적외 사용에 대한 환수규정 마련 | 공항소음방지법<br>송전설비주변법<br>공항소음방지법<br>폐기물시설촉진법 |
| 관<br>리<br>감<br>독 | 3. 부실하고 형식적인 사업 관리·감독에 따른 재정 낭비 초래      | 3-1 주기적인 사업수행 실적 보고와 실태점검 등 강화<br>3-2 사후 평가 체계 마련           | 공항소음방지법<br>폐기물시설촉진법<br>공항소음방지법            |
| 사<br>업<br>집<br>행 | 4. 심의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 부재로 부패발생 소지     | 4. 연임제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송전설비주변법<br>폐기물시설촉진법                       |
|                  | 5. 중요 정보 실적 공개 규정 부재로 사업 투명성 저해         | 5. 주민지원사업 관련한 중요정보 공개 의무화                                   | 송전설비주변법<br>공항소음방지법                        |
|                  | 6. 주민의견 수렴 절차 규정 부재로 행정 편의적으로 사업운영      | 6. 다각적인 주민의견 수렴 절차 규정 마련                                    | 공항소음방지법<br>폐기물시설촉진법                       |

## 1 사업비(착륙료) 별도계정 관리 규정을 통한 이자수익 누락 방지

### 평가대상 조문 : 공항소음방지법령

#### 공항소음방지법

**제23조(자금)** ①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야 한다.

1. 정부의 국고지원금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음부담금
3.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다만, 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등 공항수익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공항소음대책사업
2. 주민지원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

**제12조(사용료 등의 공항수익)** 법 제23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이란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자의 수익 중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공항에서 징수한 착륙료 수익의 100분의 75를 말한다.

### 평가기준

- ◆ 재정누수 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제4절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 현황

- ◆ 「공항소음방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국고지원금과 소음부담금, 항공사가 납부하는 착륙료의 75%를 공항공사가 사업재원으로 조성
  - 공항공사는 최근 3년간 약 1,271억원(국고지원 약 74억원, 소음부담금 약 243억원, 착륙료 약 954억원)을 공항소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투입

## &lt; 공항소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최근 3년) &gt;

단위 : 백만원

| 구분     | 합 계     |        |        | 2014년도 |        |     | 2015년도 |        |       | 2016년도 |        |        |
|--------|---------|--------|--------|--------|--------|-----|--------|--------|-------|--------|--------|--------|
|        | 예산액     | 집행액    | 잔액     | 예산액    | 집행액    | 잔액  | 예산액    | 집행액    | 잔액    | 예산액    | 집행액    | 잔액     |
| 국고 지원  | 7,390   | 7,390  | –      | 7,390  | 7,390  | –   | –      | –      | –     | –      | –      | –      |
| 소음 부담금 | 24,346  | 24,346 | –      | 7,700  | 7,700  | –   | 8,500  | 8,500  | –     | 8,146  | 8,146  | –      |
| 착륙료    | 121,301 | 95,451 | 25,850 | 40,685 | 40,548 | 137 | 37,731 | 36,303 | 1,428 | 42,885 | 18,600 | 24,285 |

('17.3, 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타 유사사업의 경우에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별도계정 조항에 따라 사업비를 관리

## 기관별 별도계정 관리 실태 ('17.3, 권익위 실태 조사)

## ● 주민지원사업비 계정 관리 현황

| 매립지관리공사* | 수자원공사** | 공항공사       |
|----------|---------|------------|
| 별도 관리    | 별도 관리   | 별도관리 규정 부재 |

\* 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는 사업재원인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일부를 별도계정으로 관리

– 직전년도 징수된 수수료의 10%가 차년도 사업비로 집행되며 사업 재원은 시중은행 예금 으로 별도 관리 ※ 이자수익 약 4천만원 발생('16.)

\*\* 수자원공사의 경우는 사업재원인 발전판매 수입금 등의 일부를 별도계정으로 관리

– 전전년도 발전판매 수입금 등의 일부가 차차년도 사업비로 집행되며 사업 재원은시중은행 예금으로 별도 관리 ※ 이자수익 약 4억2천만원 발생('16.)

- ◆ 공항공사는 착륙료에 대해서는 별도계정 전입 없이 관리, 수시로 공사가 공항소음 주변 지역 지원사업<sup>4)</sup>에 자체 사용하거나 지자체에 자금 지원

※ 다만,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부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계정으로 관리 중, 이에 대한 이자도 매년 사업종료 후 국고에 반납

4) 공항소음방지법령에 따라 방음창 등 시설설치를 주로하는 소음대책사업, 관내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한 주민 지원사업, 장학금 지급 등 그밖의 사업으로 구분되며, 이하에서는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칭

- ◆ 기존 기관 일반계정에서 사업비(착륙료)가 수시로 지출되어 재원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매년 누락되고 있음

## (예시) 착륙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비에 대한 이자 누락

## ● 월별 징수액에 대한 이자누락액 산정 (최근 3년/약 8억9백만원 추정)

단위 : 백만원

| 연도   | 항목   | 합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14 | 착륙료  | 53,429 | 3,821 | 4,082 | 3,537 | 4,369 | 4,733 | 4,974 | 4,633 | 4,803 | 5,006 | 4,538 | 4,624 | 4,309 |
|      | (이자) | (248)  | (37)  | (36)  | (28)  | (31)  | (29)  | (26)  | (20)  | (17)  | (13)  | (8)   | (4)   | –     |
| 2015 | 착륙료  | 55,913 | 4,227 | 4,631 | 4,338 | 4,676 | 4,908 | 5,177 | 4,532 | 4,122 | 4,814 | 4,561 | 5,253 | 4,674 |
|      | (이자) | (265)  | (41)  | (41)  | (34)  | (33)  | (30)  | (27)  | (20)  | (14)  | (13)  | (8)   | (5)   | –     |
| 2016 | 착륙료  | 63,791 | 4,722 | 4,710 | 4,667 | 4,913 | 5,365 | 5,719 | 5,551 | 5,846 | 5,965 | 5,556 | 5,740 | 5,037 |
|      | (이자) | (296)  | (45)  | (41)  | (37)  | (34)  | (33)  | (30)  | (24)  | (20)  | (16)  | (10)  | (5)   | –     |

('17.3, 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공항소음방지법령에 따라 착륙료의 75%가 사업재원으로 조성(매달 19일경 착륙료 징수)

– 직전년도 징수된 금액의 75%가 차년도 사업의 재원으로 집행됨

☐ 전년도 징수한 착륙료에 대한 월별 이자액 계산

– 1월분 징수액 × 75% × 수시예금통장 이율(1.4%) × 11/12

– 2월분 징수액 × 75% × 수시예금통장 이율(1.4%) × 10/12

\* 공사에서 착륙료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를 관리하는 예금 통장 평균 이율

## 문 제 점

## 《 공항소음 주변지역 》

- ◆ 사업비(착륙료) 이자 관리 사각지대 발생으로 재정운용의 불투명 초래
  - 사업재원인 착륙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매년 일정액의 이자수익을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목적외로 사용<sup>5)</sup>
  - ※ 법령에 별도계정 조항이 없더라도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사업재원의 이자수익은 동일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5) 이자수익이 기관 일반계정으로 관리되어 지출처를 특정하기는 불가능

개선방안

- ◆ 착륙료 이자수익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착륙료를 별도 계정으로 운영·관리하고 이자수입을 주기적으로 계상 후 당초 목적 사업에 사용토록 하여 회계 투명성을 제고

【개선 예시(공항소음방지법령)】

| 현 행                                                                                                                                                                                                                                                                                                           | 개선안(예시)                                                                                                                                                                                                                                                                                                                     |
|---------------------------------------------------------------------------------------------------------------------------------------------------------------------------------------------------------------------------------------------------------------------------------------------------------------|-----------------------------------------------------------------------------------------------------------------------------------------------------------------------------------------------------------------------------------------------------------------------------------------------------------------------------|
| <p>〈공항소음방지법〉</p> <p><b>제23조(자금)</b> ①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야 한다.</p> <p>1. 정부의 국고지원금</p> <p>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음부담금</p> <p>3.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다만, 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등 공항수익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을 말한다.</p> <p>〈신 설〉</p> <p>〈신 설〉</p> | <p><b>제23조(자금)</b> ① 현행과 같음</p> <p>1. 정부의 국고지원금</p> <p>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음부담금</p> <p>3.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다만, 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등 공항수익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을 말한다.</p> <p>4. 제3호에 따라 시설관리자가 조성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p> <p>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설관리자가 조성한 자금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p>〈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p> <p>〈신 설〉</p>                                                                                                                                                                                                                                                                             | <p><b>제00조(사업비 관리 등)</b> ① 법 제0조에 따라 조성된 착륙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計定)으로 관리하고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p>                                                                                                                                                                                                                  |

※ 본 평가서의 ‘개선안(예시)’은 소관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문에 불과하므로, 개선취지의 반영을 전제로 하여 소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수정·삭제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함. [이하 ‘개선안(예시)’도 같음]

유사 입법례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자원)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자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은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댐으로 한정한다.

1. 댐관리청이나 댐사용권자의 출연금

2. ~ 3. 생략

4. 조성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자원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운영한다. 이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2 지원금 집행 관리 강화로 재정운영의 객관성 확보

2-1 구체적 정산절차와 장기 미집행건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평가대상 조문

해당 법령 조문 없음

평가기준

◆ 재정누수 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현황

- ◆ 지원금에 대한 정산을 미이행하거나 장기간 미집행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항은 공항 소음방지법령에 미규정
- ◆ 통상 공사가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거나 지자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업종료 후 자체정산하거나 지자체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정산
  - ※ 회계 관련 서류 등을 자체 검증 후 집행잔액과 이자 등을 최종 확정
- ◆ 세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업종료 후 정산절차가 지연·누락되거나 지원금 장기 미집행 등 일부 부실 사례 발견
  - 지자체 등의 정산서류 미제출로 인한 정산이 지연되거나, 주민들간 사업갈등으로 사업이 미착수되어 장기간 지원금이 미집행중인 경우도 발생
    - ※ 지자체 등의 정산서류 제출 지연 등에 대하여 주무부처와 공사에서 시행한 제재는 거의 없는 실정

< 정산 서류 미제출 및 장기 미집행 현황 (최근 3년간 진행된 사업대상) >

(백만원)

| 정산 기관 | 구 분             | 지자체   | 관련 내역                           |       |       |       |             |
|-------|-----------------|-------|---------------------------------|-------|-------|-------|-------------|
|       |                 |       | 사업 명                            | 사업 결과 | 지원액   | 집행액   | 제재 조치       |
| 공항 공사 | 정산 서류 미제출 (20건) | 〇〇시   | 〇〇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4건('15.)          | 종료    | 170   | 정산 지연 | —           |
|       |                 | ■■■■시 | 〇〇천 산책로 조성 등 8건('15.)           | 종료    | 203   | 정산 지연 | —           |
|       |                 | △△시   | 〇〇마을회관 개보수 등 8건('15.)           | 종료    | 149   | 정산 지연 | —           |
|       | 장기 미집행 (7건)     | ▣▣시   | 〇〇마을 체력단련기 교체<br>* '14.3월에 지원   | 미시행   | 23    | —     | 회수 ('15.8.) |
|       |                 |       | 〇〇문화센터 건립<br>* '15.12월에 지원      | 진행중   | 1,198 | —     | —           |
|       |                 |       | 〇〇동 농산물저장고 신축<br>* '16.6월에 지원   | 미시행   | 53    | —     | 회수 예정       |
|       |                 | ▤▤시   | 〇〇아파트 마을도서관<br>* '14.12월에 지원    | 미시행   | 52    | —     | 회수 예정       |
|       |                 | ◎◎시   | 〇〇마을회관 건립 등 3건<br>* '15.12월에 지원 | 미시행   | 303   | —     | 회수 예정       |
|       |                 |       |                                 |       |       |       |             |

( '17.2. 권익위 실태 조사)

※ 공항공사와 공항소음주변지역 지자체 제출 자료 재구성  
⇒ 지자체 등의 정산서류 미제출건은 사업종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업중에서 선별하였고, 장기미집행건은 지원금 지급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사업중에서 선별

문제점

《 공항소음 주변지역 》

- ◆ 사업비 정산업무 소홀 등으로 예산집행의 불투명 초래
  - 정산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자체정산을 누락할 경우, 지원금의 유용가능성이 있고, 정확한 결산 내역파악이 불가능

### 정산업무 부실 사례

- 공항소음 주변지역 지자체중 00시의 경우 공사로부터 '15년에 9개 사업 약 4억3천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진행중인 1건을 제외하고 사업종료 후 1년 이상 경과된 8개 사업의 정산서류 미제출

\* 권익위 실태 조사 후 00시는 미제출한 정산서류를 공항공사에 제출('17.3.)

⇒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 계획 승인권자인 지방항공청과 사업비 지원기관인 공항공사에서 연 1~2회정도 지자체 집행점검을 실시하나, 실효성이 부족하여 관리 사각지대 발생('17.2. 권익위 실태 조사)

- ◆ 장기 미집행사업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예산낭비 소지
  - 지원금 수령후 타당한 사유없이 장기간(6개월 이상)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시 연도말에 사업이 줄속으로 추진되거나,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발생
  - ※ 장기 미집행건은 결국 당해 연도 해당 지역 사업의 장기간 공백 초래로 해당 주민들의 정책 수용도를 저하 시킬 우려

### 개선방안

- ◆ 정산업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정산절차 마련
  - 지원금을 지급받은 기관이 사업종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한 집행결과 보고서를 정해진 기한내 제출토록 의무화

### 유사사업 정산 수범 사례

- **담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중 '소양강댐' 지역**
  - 매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춘천시 등 5개 지자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총 173건의 사업에 대하여 이월사업을 제외한 종료사업 총 146건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1달 이내에 정산 절차가 완료됨
  - 공사에서 지자체에 징구하는 서류 : 실적명세서, 세금계산서, 현장실사 사진 등

- ◆ 장기 미집행 사업에 대한 사후 통제 수단 마련
  - 지급된 지원금을 즉각 회수하거나 미집행된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차년도에 미지급 하는 방안 등을 시행
  - ※ 궁극적으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는 절차가 정착되는 것이 매우 중요

### 현장 관계자 의견

- 일부 지역에서 주민갈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착수가 되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하였고, 적절한 사후 통제장치가 법령 등에 없어 그간 방치된 측면이 있는건 사실임. 권익위의 집행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에 전반적으로 공감(■시 주민지원사업 담당)

### 【개선 예시(공항소음방지법령)】

| 현 행     | 개선안(예시)                                                                                                                                                          |
|---------|------------------------------------------------------------------------------------------------------------------------------------------------------------------|
| 〈 신 설 〉 | 제00조(집행결과 보고 및 정산)<br>① 지원금을 지급받은 기관(지자체 등)은 회계연도 종료 0개월 이내에 종료사업에 대하여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한 집행실적보고서를 00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신 설 〉 | 제00조(지원금의 회수 등)<br>① 사업시행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업 계획에 따른 지원금 사용시기가 지난 날부터 0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없이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집행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다음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유사 입법례

##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지원사업의 중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9조의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

**제16조의4(지원금의 회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지원사업의 중단)** ① 생략

② 법 제16조의3제2호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사업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사업계획에 따른 지원금 사용시기가 지난 날부터 1년 이상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2-2 목적외 사용에 대한 환수 규정 마련 등

## 평가대상 조문

해당 법령 조문 없음

## 평가기준

- ◆ 재정누수 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현황

- ◆ 지원금을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 환수조치 등 제재조항은 송전설비주변법령 등 3개 법령 모두 부재
- ◆ 당초 주민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지원금이 집행되는 경우 발생
  - 일부 사례의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가 시행되었으나, 반납절차가 지지부진한 경우도 있고, 환수절차를 미시행한 건도 있음

## 지원금 부적정 집행 사례

- OO시 ◎◎아파트 주민대표들이 OO공사로부터 받은 사업비 중 일부로 6,300만원 상당의 식사권 등을 구매한 사실이 사후 적발 ('16.7월 언론보도)
  - ⇒ OO공사에서 '16.10월에 환수 요구하였으나, 미회수 상태('17.6, 권익위 실태 조사)
- ∇∇공사가 ■■■시 ◎◎마을 공용창고 신축건으로 3억6천5백만원을 ■■■시에 지원 ('12.~'13.)하였으나, 준공후 일부 마을 주민들이 시설을 개조, 음식점으로 영업한 사실이 공사와 지자체가 '14년도에 실시한 합동 점검시 적발 ('17.3, 권익위 실태 조사)
  - ⇒ '15년초에 환수조치를 시행하였으나 당해연도에 환수가 되지 못하고 '16년 말에 마을에서 지자체로 지원금을 반납하였고, 지자체에서 공사로 지원금 반납을 위한 절차 진행중
- OO지역 주민지원기금 횡령, 마을발전위원장 구속 ('15.6월 언론보도)
  - A씨는 마을발전위가 발주한 다가구주택 공사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가로채는 등 주민지원기금 1억4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음
  - ⇒ OO공사에서는 상기건의 목적외 사용분에 대한 환수절차 검토중 ('17.6, 권익위 실태 조사)

## 문 제 점

## 《송변전설비·공항소음·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 ◆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로 도덕적 해이 지속적으로 발생
  - 통제장치가 미비할 경우 사업 집행관리의 투명성이 저하되며 실제 지원금 사용자의 책임성 결여 문제 발생
  - 환수조치 후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부재로 환수절차 진행시 강제력을 부여하기가 다소 어려운 실정

## 개선방안

- ◆ 목적외 사용에 대한 환수조치 등 제재 방안 마련
  - 부당하게 사용한 지원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의무화하고, 환수조치 불응시 차년도에 지급 예정인 사업비를 차감하는 방안 등 강구

## 현장 관계자 의견

- 공항소음주변지역 사업관련 일부 목적외 사용건에 대하여 마을대상으로 환수조치 등을 실시하였으나 관련 절차가 상위법령에 없자보니 이행력 확보가 다소 어려워 후속절차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었음(■시 주민지원사업 담당)

## 【개선 예시(송전설비주변법, 공항소음방지법, 폐기물시설촉진법)】

| 현 행     | 개선안(예시)                                                                                                                                                                                                                           |
|---------|-----------------------------------------------------------------------------------------------------------------------------------------------------------------------------------------------------------------------------------|
| 〈 신 설 〉 | 제00조(지원금 환수 등)<br>① 00은 지원금을 받은자가 당초 사업계획에 정해진 목적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고,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치 기한내 환수하여야 한다.<br>② 환수가 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00은 관련 사항을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협의체 등)에서 논의하여 목적외로 사용된 부분과 같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유사 입법례

##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지원사업의 중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1. 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9조의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

제16조의4(지원금의 회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지원사업의 중단) ① 생략

② 법 제16조의3제2호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사업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사업계획에 따른 지원금 사용시기가 지난 날부터 1년 이상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지원금의 관리) ① ~ ② 생략

③ 사업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사업자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하며, 제23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을 의뢰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사업자 부담 지원금을 집행한 결과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경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연도에 그 잔액에 해당하는 사업자 부담 지원금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2조(보조금의 환수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 3 관리·감독 강화와 사후평가 도입으로 사업 운영 내실화

#### 3-1. 주기적인 사업실적 보고와 실태점검 실시 규정 마련

##### 평가대상 조문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 송전설비주변법령에는 관련 조항이 규정되어 있고, 공항소음방지법령에는 관련 조항이 부재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은 해당 수수료와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항에 따른 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자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 데에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용 실적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 ◆ 재정누수 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현황

- ◆ 주무부처의 정기적인 사업운영 실적확인 등에 대한 조항은 송전설비주변법령과 폐기물 시설촉진법령에 규정, 공항소음방지법령에는 미규정
  - 다만,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는 매립지 관리공사의 사업 실적 보고 근거 규정이 있으나, 보고의 주기, 형식, 절차 등의 세부 규정이 부재

- ◆ 주무부처가 주관하는 사업 전반에 대한 공식적인 관리·점검 등의 실적은 국토교통부 소관 공항소음 주변지역 일부 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무

※ 환경부의 경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연간 운영실적 등을 부실하게 확인·점검

##### 주무부처 주민지원사업 관리 실태 (17.3. 권익위 실태 조사)

- (국토교통부) 공항공사가 직접 수행하는 방음창, 에어컨 설치 등의 주민지원사업은 집행 점검 후, 감사 결과를 공사에 공식적으로 통보('13, '16.)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현지점검을 연 1~2회 정도 실시하지만 대부분 현지 구두조치, 최근 3년간 지자체로 통보한 시정조치 실적 전무
- (환경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6조제6항('12.3.30. 신설)에 따라 공사는 주민지원 기금의 운용 실적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고, 주무부처는 이를 확인하여야 하나, 보고의 주기 등을 정하는 환경부 소관 세부 조항의 입법 미비로 확인·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
  - ※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매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환경부는 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16년도에 5년치('11.~'15.) 주민지원사업 운영 실적을 단순 보고 받았고, 최근 3년간 공사에 대한 시정조치 실적 전무

##### 문제점

##### 《공항소음·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 ◆ 주무부처의 형식적인 사업 관리 등으로 방만한 사업 운영 초래
  - 연간 사업 운영 실적 등에 대한 정례적인 보고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시 전반적인 사업운영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고 관리 사각지대 초래
  - 공사, 지자체 등 사업 수행 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실태점검 미실시로 전반적인 사업 운영 검증체계 미작동

부실 사업 집행 사례 (‘17.3. 권익위 실태 조사)

- **무분별한 사업관리로 사업취소 빈번**
  - OO공사에서 ‘16년도 ◎◎시에 52백만원을 지원한 ■■■동 농산물저장고 신축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후 토지소유주와 주민간 부지 사용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여 사업이 취소됨
  - △△공사에서 ‘15년도 OO시에 지원한 ▽▽마을회관 건립 등 3건 약 3억원에 대한 사업이 주민간 이견 발생 등의 사유로 사업이 취소됨
- **주민지원사업 취지와 무관한 사업 승인 후 지출**
  - ■■■시 OO마을이 신청한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상가매입건에 대하여 ‘13년도에 △△공사에서 사업승인 후 약 2억9천만원이 지출
- **부실한 사업준비로 인한 시설물의 장기간 방치**
  - ㉠㉠공사는 총 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하여 민간 보육시설(수용인원 100명)을 ‘16.2월에 준공하였으나, 준공후 약 1년간 방치상태로 있다가 최근에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17.3.)
    - ⇒ 민간보육시설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달리 관할 지자체가 주관하는 추천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이 되어야 시설 개시를 할 수 있으나 상기 보육시설은 추천에 계속 떨어져 개장을 끝바로 하지 못함

개선방안

- ◆ 주무부처의 구체적 사업관리 규정 마련
  - 연간 사업 운영실적 등을 주무부처에 주기적으로 보고토록하여 사업 관리의 책임성 및 실효성 확보
    - ※ 보고의 주기, 형식은 기관별 여건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반영하고, 환경부의 경우 보고의 세부 주기·형식 등을 행정규칙(고시)으로 제정하여 입법부작위 해소 필요
  - 정기적인 사업 운영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여 사업의 책임성 확보
    - ※ 실태점검 방법 등 지도·감독에 대한 세부내용은 주무부처 고시 등에 반영

참고(유사사업 관리·감독 실시 사례)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기반센터에서 해당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지도·감독 실시
    - ※ 지자체·발전소가 분기별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고, 지자체·발전소 대상 현지 실태점검 등을 정례적(연간 약 1회)으로 실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요구 통보  
예시) OO발전소 대상으로 육영사업비 최종 수령자인 관내 학교에 대한 별도통장 개설 요구(‘15.)

【개선 예시(공항소음방지법령)】

| 현 행     | 개선안(예시)                                                                                                                                                                |
|---------|------------------------------------------------------------------------------------------------------------------------------------------------------------------------|
| 〈 신 설 〉 | <b>제OO조(지원사업의 사업관리 등)</b><br>①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 OO가 끝난후 OO일 이내에 OO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실적서 등을 OO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② OO장관은 주민지원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OO으로 정한다. |

【개선 예시(환경부 소관 행정규칙(고시) 제정)】

| 현 행     | 개선안(예시)                                                                                                                                                                            |
|---------|------------------------------------------------------------------------------------------------------------------------------------------------------------------------------------|
| 〈 신 설 〉 | <b>제OO조(주민지원기금의 운영실적 보고)</b><br>① OO공사는 매 OO가 끝난후 OO일 이내에 OO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OO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1. 연간 기금 조성 세부 내역<br>2. 주민지원 세부사업별 기금 지출 내역 및 집행율<br>3. 기타 기금 운영 관련 특이사항 등 |

## 유사 입법례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 결과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 시행 결과를 매년 작성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함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9조(사업시행결과의 제출)** ①사업시행자는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실적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2.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마련

## 평가대상 조문

해당 법령 조문 없음

## 평가기준

◆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현황

- ◆ 주민지원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주무부처의 사후평가 조항은 공항소음방지법령에 미규정
  - －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와 실제 사업의 미흡한 사항을 정책에 지속적으로 환류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
  - ※ 공항소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하여 주무부처가 실시한 사후평가 실적 전무

## 관련 보도 사례

## ● 00지역 배정 00공사 주민지원금 놓고 시끌 [16.1월 언론보도]

경남 00 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놓고 지원금 상당액이 행사 등 소비성 지출로 사용되어 불참자들이 이익을 제기하는 등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는 실정

## 문 제 점

## 《공항소음 주변지역》

- ◆ 사업전반에 대한 사후 평가 제도 미비로 사업관리 부실 초래
    - 당초 근거법령 취지에 맞게 제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주무부처 등이 관리할 수 있는 수단 부재로 주먹구구식 지원이 발생
    - 부적정한 사업에 대한 시정·보완 절차 부재시 일회성·낭비성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 ※ 일부 지역에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준비 부족으로 사업이 장기간 착수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 부실 사업 운영 사례 ('17.2, 권익위 실태 조사)

- OO공사의 사업중 △△시의 경우 지역주민간 지속적인 갈등과 부실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16년도 사업 총 22건(약 1억5천3백만원) 중 전기요금보조 11건(약 7천7백만원)을 제외한 기타사업 11건(약 7천7백만원) 전부 미착수
- ㉠㉠공사에서 OO시 ▽▽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총 1,198백만원을 2차례에 걸쳐 지원('15.4/'15.12.)하였으나, 지자체 타당성 용역 등 부속절차 등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선정이 되다보니 사업을 오랫동안 착공하지 못하였고, 현재 설계작업 진행중(당초 사업 종료기한은 '16.12월)

## 개선방안

- ◆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마련
    -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을 통한 사업운영의 책임성 확보
    - (평가 항목 예시) 사업비 집행률, 주민 만족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 ※ 세부 방법은 기관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 자체 실정에 맞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송변전 시설 주변지역의 경우 사후평가 관련 내용이 현재 의원입법으로 소관 상임위(산업통상위) 심사중

## 참고(사업 평가·환류 체계 운영 사례)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 법령에 따라 사업 평가를 매년 실시
  - 평가 대상 : 사업 시행자인 지자체, 발전사업자
  - 평가항목(100점, '16년도 기준)
    - : 사업계획의 적정성(10점), 사업관리의 적정성(5점), 목적달성 및 평가결과의 환류(10점), 사업비 집행률(30점), 자료제출 일정 준수(5점), 주민 만족도(40점)
  - 매년 평가지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기반센터에서 사업을 평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주변 지역지원사업심의위)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 최종 확정
  - ⇒ 우수, 보통, 미흡으로 산정후 사업시행 기관 통보

## 【개선 예시(공항소음방지법)】

| 현 행  | 개선안(예시)                                                                                                                                                                                                                                                                                                                                                                                                                                                          |
|------|------------------------------------------------------------------------------------------------------------------------------------------------------------------------------------------------------------------------------------------------------------------------------------------------------------------------------------------------------------------------------------------------------------------------------------------------------------------|
| 〈신설〉 | <p><b>제00조(지원사업의 평가)</b></p> <p>① OO장관은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p> <p>② OO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OO장관이 정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지원사업의 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원사업비 집행 실적</li> <li>2.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의 활용 실적</li> <li>3. 주민만족도 등 OO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④ 사업시행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OO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유사 입법례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지원사업의 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기사업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3(지원사업의 평가)** ① 생략

②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비 집행 실적
2.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의 활용 실적, 복지지원 실적
3. 그 밖에 주민 만족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을 통한 공정한 심의체 운영

### 평가대상 조문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제12조(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원사업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4명 이내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가. 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직원 5명 이내
  - 나. 지역발전 및 갈등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명 이내

③ 생략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금 회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 ~ ⑦ 생략

## 평가기준

### ◆ 이해충돌가능성

## 현황

- ◆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과 「폐기물시설축진법 시행령」에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체가 사업계획 승인 등 중요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
  - 다만, 송전설비주변법령과 폐기물시설축진법령 모두 위촉직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부재
  - ※ 위촉직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제척·기피·회피, 해촉 등의 규정은 심의운영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대표적 규정

## 심의위원회 운영 실태

| 구 분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지원                |
|---------------|-----------------------------------------|-------------------------------|
| ① 기구 명칭       |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br>(산업통상자원부)              | 주민지원협의체<br>(매립지관리공사)          |
| ② 주요 업무 및 기능  | 사업계획 및 결산 심의, 지원금 회수 등                  | 사업계획 및 결산 심의 등                |
| ③ 주요 위원 구성    | 중앙행정기관 국장급(3)<br>사업자 임직원(4)<br>외부전문가(6) | 지방의원(3), 주민대표(14)<br>외부전문가(2) |
| ④ 연간 회의 개최    | 약 3회                                    | 약 21회                         |
| ⑤ 제척·기피·회피 규정 | 없음                                      | 없음                            |
| ⑥ 해촉 규정       | 없음                                      | 없음                            |
| ⑦ 임기, 연임제한 규정 | 임기(○), 연임(X)                            | 임기(○), 연임(X)                  |

(‘17.3. 권익위 실태 조사)

- 산업통상자원부와 매립지관리공사는 연간 주민지원 사업계획 승인·변경, 결산보고 등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된 심의기구를 통해 관련 절차 수행
  - 한전에서 연간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산업통상자원부 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주민지원협의체 심의를 거쳐 공사가 사업계획 확정

⇒ 공항소음 분야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역내 의견수렴을 하도록 “공항소음대책위”가 공항별로 구성·운영중 이나 주요 기능은 단순 자문으로 분석 제외

※ 공항공사는 지자체 협의 후 연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항별 공항소음대책위의 의견수렴 후 지방항공청에 최종 승인 요청을 하고 있음

## 문제점

### 《송변전설비·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 ◆ 심의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 미비로 특정위원의 장기간 활동으로 이해관계자와 유착 가능성 내재
  - ※ 00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회 위촉직 위원은 임기가 2년으로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실제 A위원은 3회 연임에 총 8년간 위촉, B, C위원은 2회 연임에 총 6년간 위촉(‘17.3. 권익위 실태 조사)
- ◆ 이해충돌방지 규정 미비로 위원들이 사적 이해관계에 개입될 소지
  - 주민지원사업 분야는 연간 지원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며 각종 이해관계 등이 첨예하게 관련될 수 있어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 필요
  - 해촉 규정 부재시 비위 발생 위원이 장기간 심의 활동에 참여할 소지 다분
    - ※ 산업통상자원부의 송·변전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는 한전에서 수행하는 연간 약 1,5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 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지원금 회수 결정 등 공정성이 매우 필요한 기능 수행
    - ⇒ 타 유사 지원사업과 달리 심의·의결체가 주무부처에 단독으로 설치되어 사실상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 역할을 하고 있음

## 개선방안

- ◆ 위촉직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 마련
  - 연임 횟수를 제한하여 장기간 연임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유착 방지
- ◆ 위촉직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제척·기피·회피, 해촉) 규정 마련
  - 특정위원이 해당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등 공정성에 차질 발생시 관련 절차 배제를 통한 부패 소지 사전 제거
    - ※ 비위에 연루된 위원의 경우 관련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는 조치 등도 필요
    - ⇒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각 동별로 선출된 주민대표들이 심의위원의 과반이상을 차지, 대부분 사업이 자신들의 거주지 등에 대한 시설개선비 등으로 제척·기피·회피 조항은 실익이 없어 개선안에서 제외

【개선 예시(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 현행                                                                                             | 개선안(예시)                                                                                                                                                                                                                                                                                                                                                                                                                                                                                                                                                                                                                                                                                                                                                                                                                                                                     |
|------------------------------------------------------------------------------------------------|-----------------------------------------------------------------------------------------------------------------------------------------------------------------------------------------------------------------------------------------------------------------------------------------------------------------------------------------------------------------------------------------------------------------------------------------------------------------------------------------------------------------------------------------------------------------------------------------------------------------------------------------------------------------------------------------------------------------------------------------------------------------------------------------------------------------------------------------------------------------------------|
| <p><b>제12조(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략</b></p> <p>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신설〉</p> | <p><b>제12조(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b></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0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b>제0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b></p> <p>① 00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p> <p>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p> <p>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p> <p>3. 위원이 최근 0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있었던 경우</p> <p>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p> <p>5.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을 경우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p> <p>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p> |

| 현행          | 개선안(예시)                                                                                                                                                                                                                                                              |
|-------------|----------------------------------------------------------------------------------------------------------------------------------------------------------------------------------------------------------------------------------------------------------------------|
| <p>〈신설〉</p> | <p><b>제00조(위원의 해촉) ①</b> 00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p> <p>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p> <p>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p> |

【개선 예시(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 현행                                                                                                                 | 개선안(예시)                                                                                                                                                                                                                                                                                                                                                                                      |
|--------------------------------------------------------------------------------------------------------------------|----------------------------------------------------------------------------------------------------------------------------------------------------------------------------------------------------------------------------------------------------------------------------------------------------------------------------------------------------------------------------------------------|
| <p><b>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b></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신설〉</p> | <p><b>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0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b>제00조(위원의 해촉) ①</b>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p> <p>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p> <p>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p> |

## 유사 입법례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원사업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5명 이내
2. 발전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3.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위원회 위원장(이하 "지역위원장"이라 한다)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 3. 생략
  4.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발전소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는 2명을 포함한다) 이내
  5.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발전소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는 2명을 포함한다) 이내
- ② 생략
-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5 중요 정보 외부 공개를 통한 대국민 접근성 제고

## 평가대상 조문

해당 법령 조문 없음

## 평가기준

- ◆ 공개성, 예측가능성

## 현황

- ◆ 주민지원사업 실적 등에 대한 정보공개 조항은 「폐기물시설축진법 시행령」에만 규정, 송전설비주변법령과 공항소음방지법령은 미규정
- ◆ 기관별 정보공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업계획, 결산내역 등 사업 관련 중요 정보 대부분을 외부에 미공개

## 기관별 정보공개 실태 (17.2. 권익위 실태 조사)

## ● 공개 현황

| 구분     | 한 전 | 공항공사 |
|--------|-----|------|
| ① 사업계획 | 미공개 | 미공개  |
| ② 선정기준 | 미공개 | 미공개  |
| ③ 선정결과 | 미공개 | 미공개  |
| ④ 결산내역 | 미공개 | 미공개  |

– 한전의 경우는 주민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기관 홈페이지에 미공개하고 있고, 공항공사 및 공항소음 주변 지역 12개 지자체 전부 주민지원사업 관련 중요 정보 미공개

## 문 제 점

## 《송변전설비·공항소음 주변지역》

- ◆ 사업 관련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규정 부재로 사업 투명성 저해
  - 사업추진 계획, 선정결과, 결산 등은 투명한 사업을 위한 중요 전제조건으로 외부에 미공개할 경우 대국민 정보접근성 확보 곤란
  - ※ 관련 정보를 장기간 미공개 시 사업선정 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발생으로 주민간 갈등 발생 소지도 있음

## 관련 보도 사례

## ● 댐·발전소 예산지원 사업의 '허와실' [14.8월 언론보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공공기관들이 00시에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수년째 지원하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여 일부 주민들은 지원금이 어떤 사업에 사용되는지를 행정청에서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

## 개선방안

- ◆ 주민지원사업 관련 중요 정보 공개 규정 마련
  -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선정결과, 결산 내역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상세 공개하여 대국민 정보접근성 제고

## 타 기관 운영 사례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기관 홈페이지에 사업 결산 내역, 선정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예) 기관 홈페이지에서 일부 발췌

## &lt; 결산내역 부문('15년도 사업) &gt;

(백만원)

## &lt; 사업선정 결과('16년도 사업) &gt;

(백만원)

| 연번 | 사업명             | 지원액 | 집행액 | 집행률  | 비고    | 연번 | 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비 | 시행자     |
|----|-----------------|-----|-----|------|-------|----|-----------------|---------------|-----|---------|
| 1  | 학력신장 프로그램등 지원사업 | 986 | 986 | 100% | 사업 완료 | 1  | 영 농 기 자 재 자재 지원 | 공동이용 지게차 구입지원 | 46  | 농업 기술센터 |
| 2  | 주니어 공학기술교실 운영   | 17  | 15  | 89%  | 사업 완료 | 2  |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  | 글로벌 문화체험 프로그램 | 260 | 한빛본부    |

## 【개선 예시(송전설비주변법령, 공항소음방지법령)】

| 현 행     | 개선안(예시)                                                                                                                                     |
|---------|---------------------------------------------------------------------------------------------------------------------------------------------|
| 〈 신 설 〉 | <b>제00조(운영실적 공개 등)</b> ① 사업시행자는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수립 후 00일 이내에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결산내역을 포함한 사업집행 실적은 회계연도 종료후 00일 이내에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 유사 입법례

##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①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지원사업(이하 “사업자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지원사업의 계획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지원사업의 계획, 선정기준 및 선정결과: 계획, 선정기준 또는 선정결과 확정 후 10일 이내
2. 사업자지원사업의 사후정산 결과: 사업자지원사업을 시행한 해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④ 생략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원 대상지역을 지원계획 수립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지원사업의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원 목적
2. 지원 기간
3. 지원사업의 내용
4. 지원 금액
5. 지원 대상지역

## 6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통한 사업운영의 신뢰도 제고

### 평가대상 조문

해당 법령 조문 없음

### 평가기준

- ◆ 특혜발생 가능성, 예측 가능성

### 현황

- ◆ 주민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는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에만 규정, 공항소음방지법령과 폐기물시설축진법령에는 미규정
- ◆ 공항소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김포시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공항공사와 해당 지자체들의 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실적 전무(최근 3년)
  - ※ 국토교통부가 공항소음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의 경우 주민 대상 공청회 실시가 법적 의무사항이나,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의견수렴 규정은 부재
- ◆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매립지관리공사가 마을별 간담회를 실시(분기별)하고 있으나 법령에 근거가 없어 향후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의견수렴 이행 실태

- 공항공사와 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공항별로 설치·운영중인 공항소음대책위원회와 매립지주변지역 주민 지원협의체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참석하는 구역별 주민대표들의 의견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전체 의견이라 볼 수는 없음
  - ※ 00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특정 심의위원들의 장기 연임(6~8년)으로 주민대표 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 시행 전반에 골고루 반영되기가 어려운 실정
  - ※ 운영 예시
    - ① 김포공항 공항소음대책위 주민위원회는 양천구 대표(4명), 구로구 대표(2명), 부천시 대표(2명), 김포시 대표(1명), 인천 계양구 대표(1명)로 구성
    - ②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위원회는 인천광역시(오류동 대표(5명), 경서동 대표(3명), 왕길동 대표(3명)), 김포시 양촌읍 대표(3명)로 구성('17.3. 권익위 실태 조사)

### 문제점

#### 《공항소음·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 ◆ 다수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 부재시 행정 편의적으로 사업운영
  - 의견수렴 부재시 사업의 방향 및 내용, 사업재원의 규모 등을 다수의 주민들이 알기 어렵고, 특정계층 주도로 사업이 운영될 가능성 농후
  - 지원금 사용처나 마을별 사업비 배분에 대한 주민간 갈등 초래로 사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 유발

### 지원사업 관련 주민간 갈등 사례

- 00공사에서 '14. 12월 00시에 52백만원을 지원한 ■■■아파트 마을도서관 및 문화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사업 항목 관련한 주민 갈등이 지속되어 사업 미착수('17.2. 권익위 실태 조사)
- 00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논란, 지원금 분배율, 주민지원협의체 불신·내분 등으로 약 200억원 미집행['16.9월 언론보도]
  - 00 자원회수시설의 주민지원기금은 ■■■ 아파트 주민과 00 아파트 주민들간의 대립으로 '03년 이후 13년간 약 200억원의 기금이 미집행 상태로 방치돼 있는 실정



## 제5절 권고대상 기관 및 조치사항

- ◆ 권고기관(중앙행정 3)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 ◆ 통보기관(공직유관단체 3, 지방자치단체 12) :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양천구, 구로구, 서울 강서구, 부천시, 김포시, 인천 계양구, 부산 강서구, 김해시, 여주시, 울산 북구, 울산 중구, 제주특별자치도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개선과제명                           | 개선권고 조치사항                       | 권 고 기 관                 | 조치기한     |
|---------------------------------|---------------------------------|-------------------------|----------|
| 1. 사업비 별도계 정 관리를 통한 이자수익 누락방지   | • 착륙료 이자수익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토교통부                   | '18. 12. |
| 2. 지원금 집행관리 강화로 재정운영의 객관성 확보    | • 구체적 정산절차와 장기 미집행건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 국토교통부                   | '18. 12. |
|                                 | • 목적외 사용에 대한 환수규정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br>국토교통부<br>환경부 |          |
| 3. 관리감독 강화와 사후평가 도입으로 사업운영 내실화  | • 주기적인 사업수행 실적 보고, 실태점검 규정 마련   | 국토교통부                   | '18. 12. |
|                                 | • 사후평가 체계 마련                    | 환경부                     |          |
| 4. 이해충돌방지 규정 등을 통한 공정한 심의제 운영   | • 연임제한, 제척·기피·회피, 해촉 규정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                 | '18. 12. |
|                                 | • 연임제한, 해촉규정 마련                 | 환경부                     |          |
| 5. 중요 정보 공개를 통한 대국민 접근성 제고      | • 사업관련 중요 정보 외부 공개 의무화          | 산업통상자원부<br>국토교통부        | '18. 12. |
| 6.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통한 사업 운영의 신뢰도 제고 | • 주민의견 수렴 절차 규정 마련              | 국토교통부<br>환경부            | '18. 12. |

## 붙임 주민지원 사업 현황 (공직유관단체)

### 1 운영 현황

- ◆ 개별법령에 따라 공직유관단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비를 지자체 등에 지원하여 주민지원사업 실시

| 연번 | 근거 법령                          | 공직유관단체                                                      | 해당시설                  | 주요 사업                                                | 시행자      |
|----|--------------------------------|-------------------------------------------------------------|-----------------------|------------------------------------------------------|----------|
| 1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한국전력공사                                                      | 송전선로 변전소              | • 교육기자재, 장학금 지급<br>• 문화행사체험, 관광실시<br>• 농기구 공동활용 지원 등 | 공사       |
| 2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한국가스공사                                                      | 천연가스 생산기지             | • 교육기자재, 장학금 지급<br>• 생활안정 및 주민환경 개선                  | 지자체 (위탁) |
| 3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한국수력원자력<br>남동발전<br>동서발전<br>서부발전<br>중부발전<br>남부발전<br>한국지역난방공사 | 원자력·수력발전소 화력 및 양수 발전소 | • 교육기자재, 장학금 지급<br>• 각종 문화행사지원<br>• 지역특산물 판로지원 등     | 발전소      |
| 4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 원자력 안전환경 공단                                                 | 방사설 폐기물 처리시설          | • 전기요금 보조<br>• 홍보사업<br>• 장학금 지급 등 육영사업               | 공단       |
| 5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 폐기물 처리 시설             | • 주거환경개선 사업<br>• 교육기자재, 장학금 지급<br>• 각종 지역 행사 지원 등    | 공사       |
| 6  | 자연공원법                          | 국립공원관리공단                                                    | 국립공원, 도립공원            | • 생활환경 개선<br>• 주민장터, 지역문화제 지원<br>• 명품마을 조성 등         | 공단       |

| 연번 | 근거 법령                      | 공직유관단체   | 해당시설                 | 주요 사업                                            | 시행자                 |
|----|----------------------------|----------|----------------------|--------------------------------------------------|---------------------|
| 7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한국공항공사   | 공항<br>(김포, 김해, 인천 등) | •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br>• 사회복지 시설 지원<br>• 교육·문화시설 지원 등 | 공사<br>지자체<br>(매칭사업) |
|    |                            | 인천국제공항공사 |                      |                                                  |                     |
| 8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한국수자원공사  | 댐                    | • 교육기자재, 장학금 지급<br>• 주민 생활여건 개선<br>• 지역문화행사 지원 등 | 공사<br>지자체<br>(매칭사업) |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을 직접수행하거나, 일부 지자체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지자체에 사업을 위탁하여 처리, 단 사업계획 승인 및 정산은 공사가 담당

2 연도별 재정 지원 규모

◆ 최근 3년간 연간 약 3,400억원이 지원 되었고,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지원(약 1,500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약 600억원)이 전체 60%정도 차지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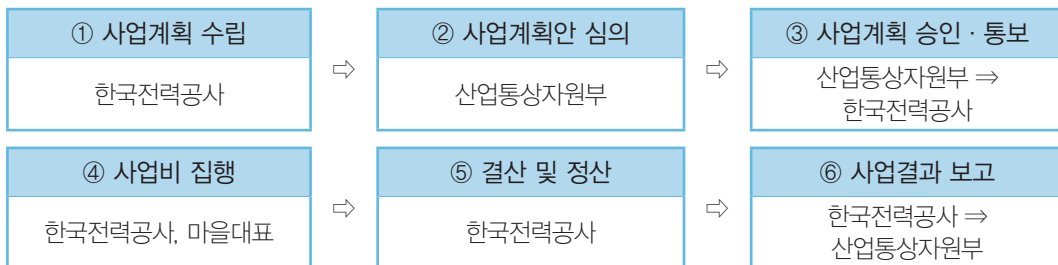
| 연번 | 기관 명       | 재원     | 연평균     | 2014   | 2015년   | 2016년   |
|----|------------|--------|---------|--------|---------|---------|
| 1  | 한국전력공사     | 자체예산   | 151,065 | —      | 144,831 | 157,300 |
| 2  | 한국가스공사     | 자체예산   | 5,548   | 11,610 | 1,490   | 3,545   |
| 3  | 한국수력원자력    | 전력기금   | 10,556  | 10,746 | 10,346  | 12,913  |
|    |            | 자체예산   | 30,818  | 27,146 | 27,870  |         |
| 4  | 남동발전       | 전력기금   | 3,595   | 3,814  | 4,142   | 3,846   |
| 5  | 동서발전       | 전력기금   | 3,133   | 3,588  | 3,459   | 2,919   |
| 6  | 서부발전       | 전력기금   | 3,096   | 3,255  | 3,619   | 3,189   |
| 7  | 중부발전       | 전력기금   | 4,280   | 4,261  | 4,766   | 4,128   |
|    |            | 자체예산   | 141     | —      | 144     | 137     |
| 8  | 남부발전       | 전력기금   | 3,951   | 3,574  | 3,575   | 3,789   |
| 9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전력기금   | 381     | 294    | 380     | 469     |
| 10 | 원자력안전환경공단  | 법정 수수료 | 178     | 79     | 273     | 183     |
| 11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법정 수수료 | 10,450  | 14,896 | 19,575  | 13,908  |
| 12 | 국립공원관리공단   | 국고보조   | 5,636   | 5,636  | 5,636   | 5,636   |
| 13 | 한국공항공사     | 국고보조   | 10,579  | 15,090 | 8,500   | 8,147   |
|    |            | 착륙료    | 32,512  | 40,548 | 38,784  | 18,204  |
| 14 | 인천국제공항공사   | 자체예산   | 626     | 446    | 173     | 1,261   |
| 15 | 한국수자원공사    | 법정 출연금 | 70,507  | 66,244 | 82,911  | 72,263  |

### 3 분야별 추진 절차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사업】

◆ (시행기관) 사업자인 한전이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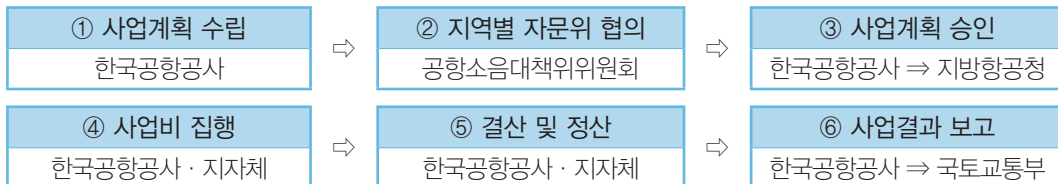
##### <사업 추진 절차>



#### 【공항소음 주변지역 지원 사업】

◆ (시행기관) 공항공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일부 사업은 지자체에 자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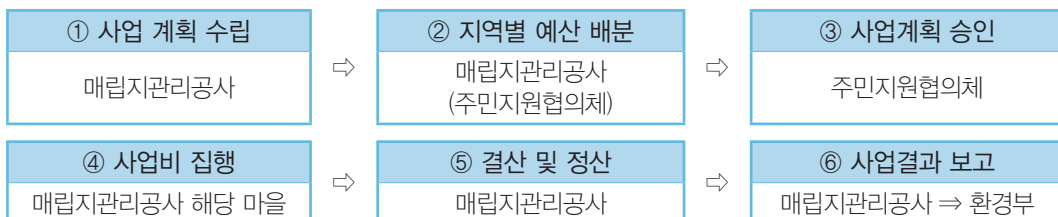
##### <사업 추진 절차>



####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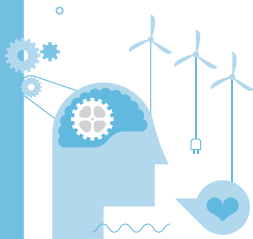
◆ (시행기관) 수도권매립지 시설 관리자인 매립지 관리공사가 수행

##### <사업 추진 절차>



# 제4장

## 자발적 개선사례



제1절 공직유관단체 사규 개선사례

## 감사위원회규정

### 평가대상 조문

#### ● 개정전 규정

- 제13조(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위원회 소집이 곤란할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가 상반되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 ● 개정후 규정

- 제13조(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위원회 소집이 곤란할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에 의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의결에 필요한 서면을 각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서면의결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가부 등의 표시로 당해 위원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되도록 의결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원회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서면의결을 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한다.  
 ⑥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가 상반되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 평가기준

-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현 황

- ◆ 서면의결 방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서면의결에 따른 절차 및 관련 정족수 규정이 미비

### 문제점

- ◆ 회의체 의결기관으로써 위원장의 재량으로 서면의결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의결에 따른 절차 및 관련 정족수 규정이 미비하여 위원장의 재량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불분명할 수 있음

### 개선방안

- ◆ 서면의결 절차에 따른 의안 자료 등의 송부, 서면의결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규정 명확화하여 위원장의 과도한 재량권을 통제하는 장치 마련차원에서 관련 규정 명확화(내부통제절차인 규정 개정안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하여 개정안에 관련 사항이 추가되어 시행됨)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제정안)

### 평가대상 조문

####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1. 본사

가. 위원장 : 구매계약담당 부서장

나. 위원 : 3급 이상 직원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되 심의안건 관련 부/팀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수는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한다. 다만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심의에 참여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간사 : 구매계약담당 부장

### 평가기준

- 평가분야 : 부패통제
- 평가항목 : 이해충돌가능성

### 현 황

- ◆ 본 지침은 구매·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관리규정 제101조에 의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위원회는 구매·계약 등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구매계약담당 부서장(위원장) 및 위원·간사로 하여 구성·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 위원회 구성시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심의에 참여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음
  - ※ 제도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 배제 의무화하거나 기피신청 제도 등 시스템 미비

### 문제점

- ◆ 위원회 심의과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미흡
  - 위원으로서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사안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회피 제도 등 시스템 미비
- ◆ 위원회 심의위원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개입될 소지로 공정한 직무수행 차질
  - 이해충돌방지 장치가 없어 특정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과의 사적 이해관계에 개입될 소지 있음
  - ※ 계약규정 운용에 따른 구매계약 업체선정 심의는 공정성·투명성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음

### 대표적 사례

- “인사위원장이 친척인데 제척·기피 않은 건 문제” [제주도민일보, 2016.10.22.]
- “연구수당·성과급 멋대로 지급... ○○테크노파크 왜 이러나” [노컷뉴스, 2016.6.27.]

### 개선방안

- ◆ “이해충돌금지”규정을 명확히 하여 구매·계약 등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
- ◆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결 등에서 이해충돌소지가 있는 경우, 제척, 회피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개선결과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신설】

##### 제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배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③ 구매, 계약 등의 경우 심의 대상자와 특별부여 의혹이 제기될 수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④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계약사무규정

평가대상 조문

〈신설〉

평가기준

- ◆ 특혜발생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현 황

- ◆ 계약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패방지 목적의 약정제도가 없음

문제점

-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개연이 있을 경우, 금품·향응 등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방법 등 부재

개선방안

- ◆ 계약담당자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 포함)에서 청렴계약 조항을 신설하여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 ◆ 개정 전·후 조문 비교 추가

| 개정 전 조문 | 개정 후 조문                                                                                                                                                                                                                                                                                                                                                                                                                                                                                                                                                                                                                                                                                                                                                                                                                                                                      |
|---------|------------------------------------------------------------------------------------------------------------------------------------------------------------------------------------------------------------------------------------------------------------------------------------------------------------------------------------------------------------------------------------------------------------------------------------------------------------------------------------------------------------------------------------------------------------------------------------------------------------------------------------------------------------------------------------------------------------------------------------------------------------------------------------------------------------------------------------------------------------------------------|
| 〈신설 조항〉 | <p><b>제5조(청렴계약)</b> ①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② 청렴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체결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p> <p>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p> <p>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p> <p>③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청렴계약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p> <p><b>제6조(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b></p> <p>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공단의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p> |

## 광고물관리규정

### 평가대상 조문

**제8조(게첨승인의 취소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광고 게첨기간의 단축 또는 게첨 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 평가기준

- ◆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현 황

- ◆ 광고대행인의 귀책사유일 때도 ‘게첨 승인’의 취소 · 철회 규정만 있고 ‘계약’ 자체의 해지 규정 부재
- ◆ 게첨 승인의 취소 등에 따른 귀책사유자의 철거의무 부재

### 【참고】

#### ● 서울교통공사 광고관리규정

**제8조(광고물의 제거의무)** ① 광고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광고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
2. 게첨 승인이 취소된 때
3. 광고대행자가 계약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하여 공사가 폐첨 요청을 한 때

**제13조(대행계약의 해지)** ① 광고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사가 공공 상 또는 지하철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는 이행을 최고한 후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케 하였을 때
2. 광고료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3. 제반규정 및 계약내용 중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확실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의 유포, 중상모략, 비방 등으로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5. 제6조 제4항의 광고물을 계약기간 중 3회 이상 게첨하였을 때

### 문제점

- ◆ 광고대행인의 명백한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대행 계약 해지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부정 청탁 및 친밀관계 등에 의한 특혜 발생 우려  
→ 특혜발생 가능성 차단 및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확보 필요
- ◆ 게첨 승인 취소 · 철회 등에 따른 철거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불법 광고물 철거를 위한 불필요한 시간 소요 우려

### 개선방안

| 개정 전 조문                                                                                                                       | 개정 후 조문                                                                                                                                                                                                                                                                                                                                                                                          |
|-------------------------------------------------------------------------------------------------------------------------------|--------------------------------------------------------------------------------------------------------------------------------------------------------------------------------------------------------------------------------------------------------------------------------------------------------------------------------------------------------------------------------------------------|
| <p><b>제8조(게첨승인의 취소등)</b></p> <p>① (생략)</p> <p>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의한 취소 또는 철회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공단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신설〉</p> | <p><b>제8조(게첨승인의 취소등)</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광고대행인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의한 취소 또는 철회 시 해당 광고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공단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b>제12조(대행계약의 해지)</b> ① 광고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단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이행을 최고한 후 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케 하였을 때</p> <p>2. 법령 및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p> |
| <b>제12조 내지 제 19조</b>                                                                                                          | <b>제13조 내지 제 20조</b>                                                                                                                                                                                                                                                                                                                                                                             |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평가대상 조문

**제46조(계약 정보공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월별 해당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 [공개성]

현 황

- ◆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문제점

- ◆ 계약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수의계약의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이 충분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함

개선방안

- ◆ 5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도 정보공개가 될 수 있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준용하여 “입찰 및 계약 집행 지침” 개정
- ◆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가능

| 개정 전 조문                                                                                                                       | 개정 후 조문                                                                                                                                                                                                                                                  |
|-------------------------------------------------------------------------------------------------------------------------------|----------------------------------------------------------------------------------------------------------------------------------------------------------------------------------------------------------------------------------------------------------|
| <b>제46조(계약 정보공개)</b>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월별 해당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b>제46조(계약 정보공개)</b>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2호와 제7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해당 수의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수의계약 관련 정보”라 한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 여비규정

### 평가대상 조문

#### 제36조(여비 추정)

- ① 직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추정한다.  
② <생략>

### 평가기준

- ◆ 제재규정의 적정성

### 현황

- ◆ 임직원이 직무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여행을 하거나 부임하는 경우 「여비규정」에서 직급별, 출장 목적별 등으로 그 지급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 동 「여비규정」은 허위 출장 등 부당하게 여비를 지급받을 경우 부당수령 여비 금액과 해당 금액의 2배를 가산하여 추정하여 부당수령에 대한 임직원 경각심 고취 및 제재를 함

### 문제점

- ◆ 지하철 등 철도·버스의 무임승차 등 타 제재사례에 비교하여 제재수준이 미약하여, 출장을 하지 않고 허위로 여비를 수령 하는 등 부패요인 예방 효과가 미흡함
- ◆ 따라서, 여비의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부패요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실제 부당수령 사례 발생 시 구체적 제재기준 마련 필요

### 개선방안

- ◆ 검토결과 : 기존 추정금액(부당수령액+부당수령액의 2배)을 대폭 강화(부당수령액+부당수령액의 10배)하여, 여비 부당수령행위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사료됨

- ◆ 개정 전·후 조문 비교

| 개정 전                                                                                                     | 개정 후                                                                                                          |
|----------------------------------------------------------------------------------------------------------|---------------------------------------------------------------------------------------------------------------|
| <b>제36조(여비 추정)</b> ① 직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추정한다.<br><br>② <생략> | <b>제36조(여비 추정)</b> ① 직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추정한다.<br><br>② <현행과 같음> |

- ◆ 기대효과 : 여비의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기존 미약한 제재수준에 따른 부패요인을 차단하고, 임직원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부당 여비 수령을 원천적으로 제거함

「연구윤리기준」

평가대상 조문

**제9조(연구부정행위의 심의 및 판정)** ①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이 사실을 논문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접수일부터 15일 동안의 소명기간을 부여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제보 접수일부터 4주 이내에 연구부정행위 등의 판정과 제재 조치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③ 편집위원 중 해당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의 및 의결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제외된 인원수 만큼은 편집위원장이 외부 인사를 선임하여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도록 한다.  
④ <생략>

평가기준

- ◆ 이해충돌가능성

현 황

- ◆ 학술지의 연구윤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윤리위원회’ 신설
  - 연구부정행위의 심의 및 판정 등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문제점

- ◆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제척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척가능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미흡
  - ⇒ 이해관계자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특정인에 대한 특혜 발생 가능 및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실효성 문제 발생 가능

개선방안

- ◆ 편집위원 제척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해관계’에 대한 기준 명확화
-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및 특혜발생 가능성 감소

| 현행                                                                                                                                                       | 개정(안)                                                                                                                                                                                                                                                                                                                                                                                                     |
|----------------------------------------------------------------------------------------------------------------------------------------------------------|-----------------------------------------------------------------------------------------------------------------------------------------------------------------------------------------------------------------------------------------------------------------------------------------------------------------------------------------------------------------------------------------------------------|
| <p><b>제9조(연구부정행위 등의 심의 및 판정)</b></p> <p>③ 편집위원 중 해당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의 및 의결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제외된 인원 수 만큼은 편집위원장이 외부 인사를 선임 하여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도록 한다.</p> | <p><b>제9조(연구부정행위 등의 심의 및 판정)</b></p> <p>③ 편집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에서 제척되며, 이로 인해 제외된 인원수 대로 연구윤리 위원장이 편집위원이 아닌 외부 인사를 선임 하여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도록 한다.</p> <p>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p> <p>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p> <p>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 연구, 진술, 감정, 조사, 감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p> <p>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p> <p>5. 그 밖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 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

## 인사관리규정

### 평가대상 조문

제205조(구성)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르되 위원수는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인 이상으로 하며,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평가기준

- ◆ 위탁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 현 황

- ◆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개최건수 10건 중, 금품향응 수수, 업무상 배임 등 비위 행위와 관련된 징계위원회 3회개최하였으나, 이 중 외부위원이 참여한 사례는 없음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외 부 환 경 | 공공기관 비위행위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처벌 요구 증대 |
| 내 부 환 경 | 인사위원회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불공정 인식 잔존       |

### 문제점

- ◆ 비위행위 공직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제식구 감싸기'등 불신 증대

『2013년 이후 000 비리 62건, 처벌은 솜방망이로 끝나』,

매일경제 보도자료 중 ('17.10.09)

00000의 공무원들이 2013년 이후 금품 및 향응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사례가 62건으로 나타났다. 비리가 적발된 직원들의 상당수가 정식 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례도 2건이나 적발되었으며, 금품 및 향응수수로 적발된 '비리직원'의 약 30%는 경고, 주의를 받는데 그쳤다.

### 개선방안

- ◆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시 구성인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의 의무참여로 사규를 변경함으로써, '파주기식 징계', '감싸주기식 행정' 등 불공정 사회적 인식에서 탈피
- ◆ 조항신설로 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여 부패처벌을 위한 자정능력 강화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및 반부패 ·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
- ◆ 징계심사시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의무 참여 조항 신설(인사관리규정)

| 현행                                                                                           | 개정(안)                                                                                                                                                                   |
|----------------------------------------------------------------------------------------------|-------------------------------------------------------------------------------------------------------------------------------------------------------------------------|
| 제205조 (구성)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르되 위원수는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인 이상으로 하며,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205조 (구성)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르되 위원수는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인 이상으로 하며,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금품 · 향응수수 및 업무상 횡령 · 배임 등 비위행위와 관련된 징계를 심의하는 경우 위원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

## 인사관리규정

### 평가대상 조문

**제192조(포상자에 대한 징계감경)**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징계할 때에는 해임은 정직으로, 정직은 감봉으로, 감봉은 견책으로, 견책은 경고로 각각 1등급씩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업무상 횡령·배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및 음주운전을 행한 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 평가기준

- ◆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제재 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가능성

### 현 황

- ◆ 부패행위자의 포상에 의한 징계감경 제외조항 필요
- ◆ 부패행위자(금품·향응수수, 업무상 횡령·배임)에 불이익 강화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증대

### 문제점

- ◆ 극히 일부 조직원의 부패행위 발생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대다수 직원들의 사기저하 우려
- ◆ 금품·향응 수수 및 업무상 횡령·배임은 중징계 처벌대상이나 포상실적으로 감경대상에 포함되어 처벌 관대화 우려

### 개선방안

- ◆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부패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부패행위 사전 차단 및 반부패·청렴문화 조기정착을 위하여 엄격한 불이익 제도 도입
- ◆ 무관용의 원칙 확립, 처벌수준 정상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

| 현행                                                                                                                                                                                                    | 개정(안)                                                                                                                                                                                                                                                                                           |
|-------------------------------------------------------------------------------------------------------------------------------------------------------------------------------------------------------|-------------------------------------------------------------------------------------------------------------------------------------------------------------------------------------------------------------------------------------------------------------------------------------------------|
| <p><b>제192조 (포상자에 대한 징계감경)</b>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징계할 때에는 해임은 정직으로, 정직은 감봉으로, 감봉은 견책으로, 견책은 경고로 각각 1등급씩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업무상 횡령·배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및 음주운전을 행한 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p> | <p><b>제192조 (포상자에 대한 징계감경)</b>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징계할 때에는 해임은 정직으로, 정직은 감봉으로, 감봉은 견책으로, 견책은 경고로 각각 1등급씩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업무상 횡령·배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및 음주운전과 관련된 징계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u>또한 금품·향응수수,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는 해당 징계 처분 후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모든 징계에 대해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u></p> |

## 법무관리규정

### 평가대상 조문

**제9조(소송대리인)** ① 공사가 소송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중요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또는 경쟁계약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다. 다만, 국제소송인 경우와 사건의 특수성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자문(사)가 아닌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평가기준

- ◆ 특혜발생 가능성
-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현 황

- ◆ 공공기관(공기업)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업체선정의 대원칙은 공개경쟁입찰방식임
- ◆ 공사는 법무관리규정을 통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있음

### 문제점

- ◆ 법무관리규정 중 당초 소송대리인 선임 규정은 선임방식을 ‘수의계약 또는 경쟁계약 방식’으로만 규정하여, 수의계약 남발로 소송대리인을 선정함으로써 특정 법무법인에 특혜발생 가능성 존재
- ◆ 소송대리인 선정 시 수의계약 사유를 ‘중요성, 긴급성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의계약을 적용할 수 있는 재량 범위 확대

### 개선방안

- ◆ 소송대리인 선임 시 경쟁계약 원칙 규정 및 수의계약 사유 열거를 통해 소송대리인 선임 투명성 확보

- ◆ 개정 전 · 후 조문

| 개정 전                                                                                                                                                                        | 개정 후                                                                                                                                                                                                                                    |
|-----------------------------------------------------------------------------------------------------------------------------------------------------------------------------|-----------------------------------------------------------------------------------------------------------------------------------------------------------------------------------------------------------------------------------------|
| <b>제9조(소송대리인)</b><br>① 공사가 소송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중요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또는 경쟁계약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다. 다만, 국제소송인 경우와 사건의 특수성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자문(사)가 아닌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b>제9조(소송대리인)</b><br>②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경쟁계약의 방식으로 선임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선임할 수 있다.<br>1. 위임보수 1천만원 이하인 경우<br>2. 집행정지, 가압류 · 가압류사건, 기간 경과가 임박한 사건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br>3. 경쟁 방식의 입찰에서 유찰된 경우<br>4. 유사소송 수행경험으로 인한 전문성을 갖춘 소송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

## 대외파견직원 선발 및 관리지침

### 평가대상 조문

**제5조(지원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1. 대외파견직원 공모 시행일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징계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인사관리규정 제27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3. 금품·향응수수, 업무상 횡령·배임 및 공공유용, 성폭력·성매매·성희롱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징계말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4. 대외파견 공모 시행일 현재 1년 이상의 해외파견, 6개월 이상의 국내파견 근무 후 복귀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평가기준

- ◆ 준수부담의 합리성

### 현 황

- ◆ 개정지침 제5조는 대외파견 직원 공모시 지원제한이 되는 자의 범위를 규정

### 문제점

- ◆ 4호 신설 조항은 과거 파견직에 대한 본인의 지원 유무 및 장단기를 불문하고 국내파견근무 유경험자에 대하여 타 규정에 비추어 과도하게 대외 파견 근무 지원을 상당기간(3년) 제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에 반함

### 개선방안

- ◆ 지원제한 기간을 축소하도록 명시

| 개정안                                                                                                                                                                                                                            | 개선권고안                                                                                                                                                                                                                            |
|--------------------------------------------------------------------------------------------------------------------------------------------------------------------------------------------------------------------------------|----------------------------------------------------------------------------------------------------------------------------------------------------------------------------------------------------------------------------------|
| <p><b>제5조(지원제한)</b>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생략)</li> <li>3. (생략)</li> <li>4. 대외파견 공모 시행일 현재 1년 이상의 해외파견, 6개월 이상의 국내파견 근무 후 복귀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li> </ol> | <p><b>제5조(지원제한)</b>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생략)</li> <li>3. (생략)</li> <li>4. 대외파견 공모 시행일 현재 6개월 이상의 해외파견, 1년 이상의 국내파견 근무 후 복귀한지 18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li> </ol> |

### 유사 규정 사례

#### ● 교육훈련 규정

**제27조(자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외 대학원교육 및 해외일반교육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개월 이상의 해외위탁교육 또는 6개월 이상의 국내위탁교육을 받고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2·3직급 직원으로서 최근 2년간 근무성적 평정등급이 근무성적평정규정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미'등급 미만인 자
3. 4직급 직원으로서 최근 2년간 근무평정성적 평균이 '미'미만인 자

##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 평가대상 조문

**제16조(소위원회 개최)** ③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에 신기술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해 지정고시된 건설신기술 및 국토교통부 훈령 「신기술 현장 적용기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유사 신기술 등을 반드시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제21조의3(특정공법 적용 심의의 공정성 확보)** ① 제16조 제①항의 제3호와 관련된 특정공법 적용 심의와 관련된 비리 등의 제재는 별표 13을 참고하여 해당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 적발일로부터 1년간 해당공법 및 해당업체 공법 추천 금지

### 평가기준

- ◆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현황

- ◆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 시 신기술을 적용할 경우 소위원회에서 유사 신기술 등을 비교·검토토록 규정(제16조)
- ◆ 특정공법 적용 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 과정에서 사전접촉·사전설명 시 제재 규정 신설(제21조의3)
  -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및 사전 설명 시 1년간 해당공법 및 해당업체 공법 추천 금지

### 문제점

- ◆ 신기술(특정공법, 자재) 적용 시에만 유사 신기술만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특허 공법에 대해서는 비교·검토가 없어 특혜발생 가능성 존재
- ◆ 비리 등의 제재 기준일을 적발일로부터 1년으로 하면 조사기간, 행정처리, 소송 등으로 실제 확정일은 적발일로부터 수개월 이상 소요되어 제재의 실효성이 없음
  - 동 규정 제21조의2(계약관련 기술평가의 공정성 확보)에서도 비리 감점 부과는 “결정일로부터 ~년”으로 되어 있어 통일 필요

### 개선방안

- ◆ 신기술(특정공법, 자재) 외 특허공법도 선정·변경에 관해 심의할 것을 명시
  - 설계 또는 시공에 특허공법 적용 시에도 특혜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하도록 유사 특허 공법 등을 비교·검토하도록 명시할 것을 권고

| 개정전(안)                                                                                                                                                            | 개정후                                                                                                                                                                   |
|-------------------------------------------------------------------------------------------------------------------------------------------------------------------|-----------------------------------------------------------------------------------------------------------------------------------------------------------------------|
| <b>제16조(소위원회 개최)</b> ③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에 신기술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해 지정고시된 건설신기술 및 국토교통부 훈령 「신기술 현장 적용기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유사 신기술 등을 반드시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 <b>제16조(소위원회 개최)</b> ③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에 신기술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해 지정고시된 건설신기술 및 국토교통부 훈령 「신기술 현장 적용기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유사 신기술과 특허 등을 반드시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

- ◆ 특정공법 적용심의와 관련된 비리 등의 제재 기준일 명확화
  - 제21조의3(특정공법 적용 심의의 공정성 확보)과 관련된 비리 등의 제재기간을 “결정일 기준”로 통일할 것을 권고

| 개정전(안)                                                                                                          | 개정후                                                                                                                |
|-----------------------------------------------------------------------------------------------------------------|--------------------------------------------------------------------------------------------------------------------|
| <b>제21조의3(특정공법 적용 심의의 공정성 확보)</b><br><b>별표 13</b><br>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 적발일로부터 1년간 해당공법 및 해당업체 공법 추천 금지 | <b>제21조의3(특정공법 적용 심의의 공정성 확보)</b><br><b>별표 13</b><br>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 제재 결정일 기준 1년간 해당공법 및 해당업체 공법 추천 금지 |

물품관리규정

평가대상 조문

제61조(매각)

⑤ 매각하려는 물품이 2회 이상의 일반경쟁 입찰이나 공(경)매에 의하여 매각되지 않거나 매각비용이 예상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취득단가 10만원 이하로서 총액이 500만원이하인 불용품은 처음부터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평가기준

-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특혜발생 가능성

현 황

- ◆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 결정을 한 물품에 대해 입찰을 통해 매각하고 있으나 물품관리법 등을 적용하여,
  - 일반경쟁 입찰이나 공(경)매 결과 매각되지 않을 경우 또는 매각비용이 예상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수의계약 조항 신설

문제점

- ◆ 매각비용이 예상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나,
  - 매각비용, 특히 예상매각대금 산정 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수의계약 대상이 될 소지가 높아 재량범위 · 기준 측면에서 구체성이 미흡
  -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위해 매각비용보다 예상매각대금을 높게 산정할 개연성 우려

개선방안

- ◆ 구체적인 매각비용 및 예상매각대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한 “매각비용이 예상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수의계약 기준을 삭제 권고

| 개정전(안)                                                                                                                                                                            | 개정후                                                                                                                                                        |
|-----------------------------------------------------------------------------------------------------------------------------------------------------------------------------------|------------------------------------------------------------------------------------------------------------------------------------------------------------|
| <p><b>제61조(매각)</b> ⑤ 매각하려는 물품이 2회 이상의 일반경쟁 입찰이나 공(경)매에 의하여 매각되지 않거나 매각비용이 예상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취득단가 10만원이하로서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은 처음부터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p> | <p><b>제61조(매각)</b> ⑤ 매각하려는 물품이 2회 이상의 일반경쟁 입찰이나 공(경)매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하면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취득단가 10만원이하로서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은 처음부터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p> |

재산관리에규

평가대상 조문

**제28조(부지의 처분방법)** 부지의 처분은 회계규정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 1. 불용지의 경우 불용지를 임대받아 선량하게 관리한 사실이 있는 자로부터 매각요청을 받았을 때
- 2. 불용지의 인접지에 토지를 소유한 자로부터 매각요청을 받았을 때
- 3. 교환예정지와 교환하려는 자의 교환요청을 받았을 때
- 4. 기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수 없는 경우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현 황

◆ 부지의 처분 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4가지를 규정

문제점

-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근거(법률, 내규 및 지침 등)가 없고, 타당성 및 객관성 확보가 곤란하여 특혜에 대한 오해 소지가 있음
- ◆ 제2호의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률에 위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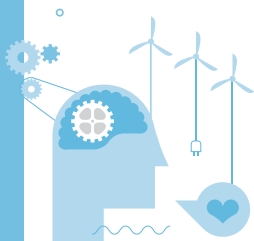
개선방안

◆ 부지의 처분 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국유재산법제40조에서 정하는 경우로 변경하여 특혜발생 가능성 배제

| 구 조문                                                                                                                                                                                                                                                                                                                                | 신 조문                                                                                                                     |
|-------------------------------------------------------------------------------------------------------------------------------------------------------------------------------------------------------------------------------------------------------------------------------------------------------------------------------------|--------------------------------------------------------------------------------------------------------------------------|
| <p><b>제28조(부지의 처분방법)</b> 부지의 처분은 회계 규정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불용지의 경우 불용지를 임대받아 선량하게 관리한 사실이 있는 자로부터 매각요청을 받았을 때</li><li>2. 불용지의 인접지에 토지를 소유한 자로부터 매각요청을 받았을 때</li><li>3. 교환예정지와 교환하려는 자의 교환요청을 받았을 때</li><li>4. 기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수 없는 경우</li></ul> | <p><b>제28조(부지의 처분방법)</b> 부지의 처분은 회계 규정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한다. <u>다만, 국유재산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u></p> |



# 부록



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3. 관련 법령
4. 색인

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1 준 수 <수요 측면>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 검토항목                                                                                          | 검토결과 |
|-----------------------------------------------------------------------------------------------|------|
| <input type="checkbox"/> 각종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
| <input type="checkbox"/>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가?                              |      |
| <input type="checkbox"/>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      |
| <input type="checkbox"/>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                           |      |
| <input type="checkbox"/>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      |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 검토항목                                                                                                              | 검토결과 |
|-------------------------------------------------------------------------------------------------------------------|------|
| <input type="checkbox"/> 유사 법령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
| <input type="checkbox"/>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      |
| <input type="checkbox"/>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      |
| <input type="checkbox"/>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      |
| <input type="checkbox"/>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
| <input type="checkbox"/>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      |

③ 특혜발생 가능성

| 검토항목                                                                                               | 검토결과 |
|----------------------------------------------------------------------------------------------------|------|
| <input type="checkbox"/> 법령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혜택이나 이익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가?                     |      |
| <input type="checkbox"/>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      |

2 집행 <공급 측면>

①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검토항목                                                                                                         | 검토결과 |
|--------------------------------------------------------------------------------------------------------------|------|
| <input type="checkbox"/>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 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들이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
| <input type="checkbox"/>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      |
| <input type="checkbox"/>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는 않은가?                                         |      |
| <input type="checkbox"/>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않은가?                                       |      |
| <input type="checkbox"/>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      |
| <input type="checkbox"/>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      |
| <input type="checkbox"/>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

## ②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검토항목                                                                                                                                        | 검토결과 |
|---------------------------------------------------------------------------------------------------------------------------------------------|------|
|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의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대행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      |
|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      |
|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공정한가?                                                                         |      |
|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있는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타당하고 내용이 적절한가?                                                        |      |
|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법정 위탁·대행의 경우가 아닌 지정 등을 통해 수탁·대행자가 선정되거나 취소된 경우 이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 기간 및 연장 가능 횟수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      |
|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br>- 자료제출·보고 의무 및 감독기관의 정기점검 등                            |      |
|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탁·대행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대행 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      |
| <input type="checkbox"/> 업무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제재부가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검토)                                  |      |

## ③ 재정누수 가능성

| 검토항목                                                                                               | 검토결과 |
|----------------------------------------------------------------------------------------------------|------|
| <input type="checkbox"/>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      |
| <input type="checkbox"/>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      |
| <input type="checkbox"/>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재정지원이 필요한가?                                       |      |
| <input type="checkbox"/>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      |
| <input type="checkbox"/>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되어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      |
| <input type="checkbox"/> 위법한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환수나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      |
| <input type="checkbox"/> 징벌적인 추가 환수조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금의 0배 추가 환수 등)?                                  |      |

3 행정절차 <절차 측면>

① 접근의 용이성

| 검토항목                                                                                                        | 검토결과 |
|-------------------------------------------------------------------------------------------------------------|------|
| <input type="checkbox"/>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별도의 참여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가?                                      |      |
| <input type="checkbox"/>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행정의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br>-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별도의 참여장치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      |

② 공개성

| 검토항목                                                                                                            | 검토결과 |
|-----------------------------------------------------------------------------------------------------------------|------|
| <input type="checkbox"/>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br>-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정보공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      |

③ 예측가능성

| 검토항목                                                                                                              | 검토결과 |
|-------------------------------------------------------------------------------------------------------------------|------|
| <input type="checkbox"/>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      |
|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      |

4 부패통제

① 이해충돌가능성

| 검토항목                                                                                                              | 검토결과 |
|-------------------------------------------------------------------------------------------------------------------|------|
| <input type="checkbox"/>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나 영리행위금지 규정이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

②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검토항목                                                                          | 검토결과 |
|-------------------------------------------------------------------------------|------|
| <input type="checkbox"/>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사례가 없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부패방지장치가 있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br>(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      |
| <input type="checkbox"/> 부패방지장치가 있음에도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      |
| <input type="checkbox"/>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
| <input type="checkbox"/> 부패방지를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장치 도입이 필요한가?                        |      |

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1 인·허가, 승인·지정 등 업무<sup>1)</sup>

| 검토항목(적용기준)    |                                                                                                                       | 평가결과 |
|---------------|-----------------------------------------------------------------------------------------------------------------------|------|
| 기준<br>·<br>절차 |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처리절차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
|               |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등에 대한 처리권자의 재량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
|               |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등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
| 처리<br>기간      |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은 합리적인가? (준수부담의 합리성)<br>– 장기의 처리기간으로 인한 급행료지급, 음성적 청탁 등 부패발생 가능성 검토              |      |
|               |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예측가능성)                                                         |      |
| 신청서류 등        |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신청서류, 준비사항, 대기시간 등 민원인의 준수부담은 사회통념이나 유사업무와 비교할 때 합리적 수준인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      |
|               | <input type="checkbox"/>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청서류, 준비사항, 처리기준 및 처리절차 등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수준인가? (예측가능성)                        |      |
| 이의<br>제기      | <input type="checkbox"/> 위법·부당한 인·허가 및 그 거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      |

1)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업무로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의 업무를 포함

| 검토항목(적용기준)    |                                                                                                                                          | 평가결과 |
|---------------|------------------------------------------------------------------------------------------------------------------------------------------|------|
| 정보<br>공개      |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공개성)<br>– 인·허가 처리기준,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      |
| 관리<br>·<br>감독 |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이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후 관리·감독 규정을 두고 있는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
|               |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이후 각종 지시, 시정명령, 보고 등 사후 관리·감독의 요건·기준 및 종류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
| 제재            | <input type="checkbox"/>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정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br>– 취소, 정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      |
|               | <input type="checkbox"/>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은 유사업무에 규정된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
|               | <input type="checkbox"/> 위반행위별 또는 행정제재 유형별로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
| 인·허가<br>의제    |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을 규정함에 있어 관계기관 협의·이해관계인 의견청취·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충분히 규정하지 않는 등 인·허가 의제 효과의 인정과정에서 특혜 우려가 있는가? (특혜발생 가능성) |      |

2 부과·징수 업무<sup>2)</sup>

| 검토항목(적용기준)               |                                                                                                                                                 | 평가결과 |
|--------------------------|-------------------------------------------------------------------------------------------------------------------------------------------------|------|
| 근거<br>·<br>기준<br>·<br>절차 | <input type="checkbox"/> 부과·징수의 법적근거,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
|                          | <input type="checkbox"/> 부과·징수 금액의 산출기준, 산출방식 및 산출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
|                          | <input type="checkbox"/>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행정처분 부과(예,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의 경우 제재 수준이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적정한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
|                          | <input type="checkbox"/> 부과·징수 절차상에 인정되는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
|                          | <input type="checkbox"/>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사유, 기간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있는가? (예측가능성)                                                      |      |
| 가중<br>·<br>감면            | <input type="checkbox"/> 행정처분 등의 가중·감면 시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이고 처분기준일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
|                          | <input type="checkbox"/> 공무원이 가중·감면 기준, 비율, 기간 등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특혜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 (특혜발생가능성)<br>– 가중·감면의 적용방식(비율산정, 적용순서 등), 시행시기, 소급적용 여부가 적정한지 검토 |      |
| 이의<br>제기                 | <input type="checkbox"/> 부과·징수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      |
|                          | <input type="checkbox"/>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준수사항 등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은 까다롭지 않고 용이한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      |
| 환급                       | <input type="checkbox"/> 과오납 및 환급금 지급·신청과 그에 대한 지급대상(과오납금의 양도)·처리기간·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가능성)                                          |      |
|                          | <input type="checkbox"/> 과다징수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 및 산정 기산일 등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가능성)                                                                  |      |
| 체납<br>처분                 | <input type="checkbox"/> 압류, 공매, 환가처분 등 체납처분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br>– 대상선정, 조사방식, 절차 등의 규정이 구체적인지 검토                     |      |

2) 인·허가 등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등 각종 행정처분 관련 업무

\* 과태료의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부과·징수 절차 및 불복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에서는 부과요건과 부과권자 등에 관한 규정만 두면 됨

3 보조·지원 업무<sup>3)</sup>

| 검토항목(적용기준)    |                                                                                                                                           | 평가결과 |
|---------------|-------------------------------------------------------------------------------------------------------------------------------------------|------|
| 근거<br>·<br>기준 |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정누수 가능성)                                                          |      |
|               |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의 목적, 대상, 사용한계(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정누수 가능성)                                                 |      |
|               |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 명목으로 보조·지원 대상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부관을 부과할 여지는 없는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      |
| 대상<br>선정      | <input type="checkbox"/>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재정누수 가능성)                                                 |      |
|               |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재정누수 가능성)                                          |      |
| 지원<br>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재정누수 가능성)                                                                              |      |
|               | <input type="checkbox"/>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이 필요한가? (재정누수 가능성)                                                                     |      |
| 이의<br>제기      | <input type="checkbox"/> 위법·부당한 보조·지원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      |
| 정보<br>공개      |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및 성과평가 등을 공개하는 규정이 있는가? (공개성)                                         |      |
| 관리<br>·<br>감독 |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 경비가 행정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도록 적절한 관리·감독·정산·성과평가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재정누수 가능성)                                     |      |
| 제재            |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 경비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재정누수 가능성)<br>- 처벌규정(벌칙규정),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지원금 환수, 손해자격 배제 |      |

※ 재정지원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근거법률 또한 상이하므로 재정지원 양태에 따라 일반법 등 관계법령<sup>4)</sup>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중복규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3)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업무로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의 업무를 포함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 4 위탁·대행 업무

| 검토항목(적용기준)               |                                                                                                                                       | 평가결과 |
|--------------------------|---------------------------------------------------------------------------------------------------------------------------------------|------|
| 근거<br>·<br>기준<br>·<br>절차 |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
|                          |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 기준·요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
|                          |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 대상사무의 범위와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
|                          | <input type="checkbox"/>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해 위탁·대행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
| 재위탁                      |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
|                          | <input type="checkbox"/>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가 규정되어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
| 재정<br>지원                 |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업자에 제공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가? (재정누수 가능성)                            |      |
| 이의<br>제기                 | <input type="checkbox"/> 위법·부당한 위탁·대행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      |
| 정보<br>공개                 |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공개성)<br>- 위탁·대행 대상업무, 대상기관, 시행절차 및 운영성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 여부 확인                     |      |

| 검토항목(적용기준)    |                                                                                                                                                                                      | 평가결과 |
|---------------|--------------------------------------------------------------------------------------------------------------------------------------------------------------------------------------|------|
| 관리<br>·<br>감독 |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의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대상기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br>(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br>- 자료제출·보고 의무, 조사·감독 권한, 시정명령권                                            |      |
|               |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 업무와 관련한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 시 감독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br>(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
| 제재            |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 기관 또는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제재수단이 구비되어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br>- 공무원 의제 등 처벌규정(벌칙규정), 지정취소·업무정지·지원금 회수 등 행정처분, 계약해지 |      |
| 기타            |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
|               |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업자에게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이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      |
|               | <input type="checkbox"/>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

## 5 행정조사 업무<sup>5)</sup>

| 검토항목(적용기준)               |                                                                                                                                | 평가결과 |
|--------------------------|--------------------------------------------------------------------------------------------------------------------------------|------|
| 근거<br>·<br>기준<br>·<br>절차 | <input type="checkbox"/> 조사권 행사의 법적 근거, 조사요건, 조사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sup>6)</sup>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
|                          | <input type="checkbox"/>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br>(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br>-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      |
|                          | <input type="checkbox"/> 조사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br>(예측가능성)<br>- 조사대상범위, 조사기간, 기간연장시 사유설명 의무 등의 규정 확인                |      |
| 이의<br>제기                 | <input type="checkbox"/>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합리적 수준인가?<br>(준수부담의 합리성)                                                   |      |
|                          | <input type="checkbox"/> 위법·부당한 조사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      |

5)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으나, 단순 실태조사 등 명령이나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행정조사 외에도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명령·강제를 수단으로 하는 권력적 행정조사도 있음

6) 「행정조사기본법」에서 행정조사의 대상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세무조사나 금융감독기관의 검사·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은 이 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제3조제2항)

| 검토항목(적용기준) |                                                                                                                                                                                                   | 평가결과 |
|------------|---------------------------------------------------------------------------------------------------------------------------------------------------------------------------------------------------|------|
| 정보 공개      | <input type="checkbox"/>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공개성)<br>– 조사대상 · 내용 · 기간 및 결과,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      |
|            | <input type="checkbox"/> 무단 · 임의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실시 전 사전통보 규정을 두고 있는가? <sup>7)</sup> (공개성)<br>– 사전통보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예외사유가 타당한가                                                                        |      |
| 제재         | <input type="checkbox"/>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
|            | <input type="checkbox"/>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의 상한 · 하한, 가중 · 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
|            | <input type="checkbox"/>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절한 수준인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
| 기타         | <input type="checkbox"/> 조사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 · 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br>–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 대한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      |
|            | <input type="checkbox"/> 연고 · 온정주의에 의한 조사정보 사전유출, 대상자 선정 제외, 조사결과 은폐 · 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br>– 외부참여 합동조사,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 · 감찰기능 등 |      |

7)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음

6 단속·점검 업무<sup>8)</sup>

| 검토항목(적용기준)   |                                                                                                                                                        | 평가결과 |
|--------------|--------------------------------------------------------------------------------------------------------------------------------------------------------|------|
| 근거 · 기준 · 절차 | <input type="checkbox"/> 단속 · 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시행요건, 시행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
|              | <input type="checkbox"/> 단속 · 점검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 · 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가?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
|              | <input type="checkbox"/> 단속 · 점검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br>–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 ·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검토               |      |
|              | <input type="checkbox"/> 단속 · 점검의 기간 · 방법 · 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가능성)<br>– 무단 · 임의방문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실시전 사전통보<br>– 대상범위, 기간, 연장사유 등에 대한 명시 및 설명의무 확인 |      |
|              | <input type="checkbox"/> 단속 · 점검의 실시대상 업체에게 부과된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합리적 수준인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      |
| 이의 제기        | <input type="checkbox"/> 위법 · 부당한 단속 · 점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성의 용이성)                                                       |      |
| 정보 공개        | <input type="checkbox"/> 단속 · 점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 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공개성)<br>– 대상자, 시행기간, 시행결과(위반내용),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      |

8)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은 이유로 부담적 행정행위를 발하는 경우나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지도의 경우는 본 체크리스트 활용

| 검토항목(적용기준) |                                                                                                                                                                             | 평가결과 |
|------------|-----------------------------------------------------------------------------------------------------------------------------------------------------------------------------|------|
| 제재         |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
|            | <input type="checkbox"/>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
|            |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절한 수준인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
| 기타         |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누락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br>-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게 통보 및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      |
|            | <input type="checkbox"/>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단속정보 사전유출, 위법행위 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br>- 외부참여 합동단속,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      |

## &lt;참고 : 단속·점검분야 예시&gt;

| 풍속영업분야                                                | 식품·위생분야                                                     | 환경분야                                                             |
|-------------------------------------------------------|-------------------------------------------------------------|------------------------------------------------------------------|
|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무도장 및 무도학원 등 | 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식품가공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등 | 대기·악취배출업소, 폐수배출·처리업소, 오수·분뇨처리업소, 폐기물배출·처리업소, 소음·진동배출업소, 유독물영업소 등 |

## 7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 검토항목(적용기준) |                                                                                                                                                                                                              | 평가결과 |
|------------|--------------------------------------------------------------------------------------------------------------------------------------------------------------------------------------------------------------|------|
| 구성         | <input type="checkbox"/> 위원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br>※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
|            | <input type="checkbox"/>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
|            | <input type="checkbox"/> 위원위촉 및 활동 과정에 관련협회, 특정 이해관계자 등의 개입으로 특혜를 유발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가? (특혜발생 가능성)                                                                                                        |      |
|            | <input type="checkbox"/> 위원 구성시 내부·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은 적정한가? (이해충돌가능성)                                                                                                                                              |      |
|            | <input type="checkbox"/> 외부위원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있는가? (이해충돌가능성)                                                                                                                                |      |
|            | <input type="checkbox"/> 기관장의 위원장 겸임 또는 위원 단독위촉 권한은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인가? (이해충돌가능성)                                                                                                                                 |      |
| 임기 및 신분    | <input type="checkbox"/> 위원의 임기 및 연임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가? (이해충돌가능성)<br>-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임기, 기간의 적정성, 연임규정 유무 확인                                                                               |      |
|            | <input type="checkbox"/>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이해충돌가능성)<br>- 윤리규범, 청렴서약서제출, 겸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                                                                                                       |      |
| 제척·기피·회피   | <input type="checkbox"/>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이해충돌가능성)                                                                                                                             |      |
| 제재         | <input type="checkbox"/>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규정을 두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가능성)<br><input type="checkbox"/>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가능성) |      |
| 이의 제기      |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      |
| 정보 공개      | <input type="checkbox"/>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공개성)                                                                                                                                   |      |
|            | <input type="checkbox"/> 위원 위촉과정 및 위원회 활동정보를 구체적·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 (공개성)                                                                                                                                       |      |

## 8 인사 업무

| 검토항목(적용기준) |                                                                                                                                                                                                                                                                                                                                         | 평가결과 |
|------------|-----------------------------------------------------------------------------------------------------------------------------------------------------------------------------------------------------------------------------------------------------------------------------------------------------------------------------------------|------|
| 인사<br>기준   | <input type="checkbox"/>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
|            | <input type="checkbox"/>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과정에서 기관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
| 인사<br>위원회  | <input type="checkbox"/>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 구성시 (이해충돌가능성)<br>- 외부위원 구성비율, 임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br>-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br>-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녹취, 기록,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      |
| 특별<br>임용   | <input type="checkbox"/> 특별임용 조항이 있는 경우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br>- 특별임용의 실시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br>- 특별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br>※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 조항 확인<br>- 특별임용 대상자 선정 및 평가 방법 등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br>- 특별임용계획 및 일정, 임용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가? (공개성)<br>- 특별임용결과를 사후공개하고 성과를 분석·관리하고 있는가? (공개성) |      |
| 기관장<br>재량  | <input type="checkbox"/> 임용·승진·평가 등에 있어 기관장에게 별도의 가점부여(인정)재량을 허용하는 등 부당한 규정은 없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
|            | <input type="checkbox"/> 기관장에 의한 임의적 감경·보복, 징계위원회 회부결정 재량은 없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br>-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또는 불회부”, “사안이 경미한 경우 불회부” 등                                                                                                                                                                                                           |      |

| 검토항목(적용기준) |                                                                                                                                                                                                                                                               | 평가결과 |
|------------|---------------------------------------------------------------------------------------------------------------------------------------------------------------------------------------------------------------------------------------------------------------|------|
| 이의<br>제기   | <input type="checkbox"/> 인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접근의 용이성)                                                                                                                                                                              |      |
| 정보<br>공개   | <input type="checkbox"/> 인사정보 공개와 관련 (공개성)<br>-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공개규정이 있는가?<br>- 사전 공개하는 시점은 관련자의 접근성과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br>- 인사방침 결정 및 변경시 적절한 기간동안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가?<br>- 모집대상직위, 예상결원, 대상인원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      |
| 제재         | <input type="checkbox"/> 임용·승진·전보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당사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br>- 줄서기, 청탁, 밀어주기, 금품·향응제공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재규정 확인                                                                                                      |      |
| 기타         | <input type="checkbox"/>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정실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의 통제장치는 있는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

3. 관련 법령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 법 률                                                                                                                                                                                                            | 시 행 령                                                                                                                                                                                                                                                                                                                                                                                                                                                                                                                                                                                        |
|----------------------------------------------------------------------------------------------------------------------------------------------------------------------------------------------------------------|----------------------------------------------------------------------------------------------------------------------------------------------------------------------------------------------------------------------------------------------------------------------------------------------------------------------------------------------------------------------------------------------------------------------------------------------------------------------------------------------------------------------------------------------------------------------------------------------|
| <b>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b><br>①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b>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b> ① 위원회는 법 제 28조에 따라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분석·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br>1. 부패유발의 가능성<br>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br>나.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br>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 제 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br>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br>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br>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br>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손해의 적정성·타당성 여부<br>3. 행정절차의 투명성<br>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 기회가 보장 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br>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br>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

| 법 률 | 시 행 령                                                                                                                                                                                                                                                                                                                                                                                                                                                                                                                                                                                                                                                                                                                                                 |
|-----|-------------------------------------------------------------------------------------------------------------------------------------------------------------------------------------------------------------------------------------------------------------------------------------------------------------------------------------------------------------------------------------------------------------------------------------------------------------------------------------------------------------------------------------------------------------------------------------------------------------------------------------------------------------------------------------------------------------------------------------------------------|
|     |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 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br>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br>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br>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 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br>⑥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법령등이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실 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 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 법 률 | 시 행 령                                                                                                                                                                                                                                                                                                                                                                                                                                                                                                                                                                                                                                                                                                                                            |
|-----|--------------------------------------------------------------------------------------------------------------------------------------------------------------------------------------------------------------------------------------------------------------------------------------------------------------------------------------------------------------------------------------------------------------------------------------------------------------------------------------------------------------------------------------------------------------------------------------------------------------------------------------------------------------------------------------------------------------------------------------------------|
|     | <p>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31조(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b>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 기구를 둘 수 있다.</p> <p>②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b>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b></p> <p>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p> |

## 2) 제·개정 시 참고할 만한 일반법

### ① 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 과태료 부과 시 고려사항,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부과·징수 방법, 감경기준, 이의제기 절차 등 규정

### ② 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 위원회 설치 요건 및 절차, 구성 및 운영 방법, 위원회 설치 시 법령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및 공무원 의제 등 규정

### ③ 행정업무의 위임·위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 행정기관 간 위임·위탁 기준, 민간위탁 기준 및 대상선정 기준, 지휘·감독 등 규정
- ※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위임·위탁은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를 규정

### ④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 ◆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기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제한,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 등 규정

### ⑤ 행정정보의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행정정보의 공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규정

### ⑥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 등: 「행정절차법」

- ◆ 불이익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청문·공청회, 행정예고·행정지도 등 규정

## 4. 색인

|                                |              |                                    |               |
|--------------------------------|--------------|------------------------------------|---------------|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193          | 산지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230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243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 209           |
| 감사위원회규정                        | 334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42            |
| 계약사무규정                         | 338          | 소방시설공사업법                           | 245           |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336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27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94, 166, 225 |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 315           |
|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 326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18           |
| 광고물관리규정                        | 340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97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2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 175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277          | 여비규정                               | 344           |
| 국세징수법 시행령                      | 186          | 연구윤리기준                             | 346           |
| 군인사법 시행령 및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 85           | 의료법                                | 273           |
|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 356          | 인사관리규정                             | 348, 350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237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34           |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 342           |
| 대외파견직원 선발 및 관리지침               | 354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 35, 118       |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66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1, 269      |
| 도선법 시행령                        | 113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시행                       | 136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29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시행령                      | 255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9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48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2, 156      | 재산관리예규                             | 360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77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107, 125      |
| 물품관리규정                         | 35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2           |
|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 54           |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 306, 315, 327 |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20, 323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23           |
| 방위사업법                          | 258          | 항만법 시행령                            | 203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04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 139           |
| 법무관리규정                         | 352          | 해양경비법 시행령                          | 280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132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1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8           | 해양수산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규칙        | 120           |
| 산림보호법 시행령                      | 17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32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147          |                                    |               |



# 2017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

|     |                                                                                 |
|-----|---------------------------------------------------------------------------------|
| 발행일 | 2018년 9월                                                                        |
| 발행처 | 국민권익위원회                                                                         |
| 편집  | 부패방지국 부패영향분석과 (T.044-200-7663)<br>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제7-2동<br>(우편번호 30102) |

---



※ 부패영향평가 관련 문의 및 개선 건의는 위 전화번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